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김승권 김연우 이하나

보건 복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어리말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9월로 예정된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0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사실 1차 및 2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의하여 제시된 50여개의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은 만큼 3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국가의 아동관련 정책 및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 분석, 제안과 아동권리 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확인, 그리고 활용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물론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전문인력, 상설기구를 통한 효율성 있는 추진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져,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촉에 의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활동하였던 제1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31명) 제도를 2010년에 다시 구성하여 제2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20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점도 모니터링의 지속성 측면과 아동권리증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추진이었다. 특히, 아동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 스스로 권리모니터링을 하였다. 점은 아동권리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본 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권리의 홍보를 활성화하며, 한국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목적을 가진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동권리가 증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2010년 사업에서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홍보를 강화하였고, 최근 한국사회에 문제로 대두된 ‘나홀로 아동’에 대한 고민을 ombudsman 및 민간기구들과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사업은 한국아동권리옹호센터장인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연구진과 아동권리ombudsman, 아동권리관련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적극 참여하여 주신 아동 및 성인 아동권리ombudsman 20명과 아동권리 관련 학자, 민간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에게 지면을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원내 검토자인 당원의 김유경 부연구위원과 김성희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한국아동의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제3·4차 통합 국가 보고서의 심의준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김 용 하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5
1	15
2	16
제2장 아동관련 법·정책 등 제도 모니터링	21
1	21
2	80
3	113
4	120
제3장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	137
1	137
2	139
3	147
4 「 T/F 」	168
제4장 아동권리 홍보	185
1	185
2	188
3	191

제5장 한국아동의 권리증진 정책개발 : 나홀로 아동 대책	193
1	193
2	194
3 「 」	198
4 「 」	209
제6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동향	217
1 2010	217
2 「 」	218
3	225
4 UN CRC 3 2	240
제7장 결 론	257
참고문헌	261
부록	266

표 목차

< 2-1>	21
< 2-2> 2009~2010	()	22
< 2-3> 2009~2010	()	25
< 2-4> 2009~2010	() ..	34
< 2-5> 2009~2010	() ..	38
< 2-6> 2009~2010	()	39
< 2-7> 2009~2010	() ..	54
< 2-8> 2009~2010	()	70
< 2-9>	81
< 2-10>	84
< 2-11>	84
< 2-12>	85
< 2-13>	86
< 2-14>	87
< 2-15>	88
< 2-16>	89
< 2-17>	90
< 2-18>	90
< 2-19>	91
< 2-20>	92
< 2-21>	92
< 2-22>	93
< 2-23>	94
< 2-24>	94
< 2-25>	95

< 2-26>	96
< 2-27> 15~44	97
< 2-28> 15~44	97
< 2-29>	98
< 2-30>	98
< 2-31> (5-24) 10	99
< 2-32>	100
< 2-33>	101
< 2-34>	102
< 2-35>	103
< 2-36> ()	104
< 2-37>	105
< 2-38>	106
< 2-39>	107
< 2-40>	107
< 2-41>	108
< 2-42>	109
< 2-43>	109
< 2-44>	110
< 2-45> 1	110
< 2-46>	111
< 2-47>	111
< 2-48>	112
< 2-49>	112
< 2-50>	113
< 3-1> ()	137

< 3-2>	()	138
< 3-3>	1	146
< 3-4>		147
< 3-5>	(2010 9)	148
< 3-6>	(2010 9)	162
< 5-1>		198
< 5-2>		199
< 5-3>		200
< 5-4>		200
< 5-5>		201
< 5-6>		201
< 5-7>		202
< 5-8>		202
< 5-9>		203
< 5-10>		205
< 5-11>		207
< 5-12>		207
< 6-1>	2010	217
< 6-2>		219
< 6-3>		221
< 6-4>	, , ‘ ’	227
< 6-5>	, , ‘ ’	229
< 6-6>	, , ‘ ’	230
< 6-7>	, , ‘ ’	231
< 6-8>	, , ‘ ’	233
< 6-9>	, , ‘ ’	235
< 6-10>	, , ‘ ’	237

< 6-11> , , ' '239

그림 목차

[2-1]	88
[2-2]	116
[2-3]	10	116
[2-4]	121
[2-5]	122
[2-6]	123
[2-7]	124
[2-8]	125
[2-9]	126
[2-10]	1	127
[2-11]	127
[2-12]	128
[2-13]	129
[2-14]	130
[2-15]	130
[2-16]	131
[2-17]	131
[2-18]	132
[2-19]	133
[2-20]	134
[5-1]	193
[5-2]	194

요약

제1장 서론

□ 사업의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한국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을 위해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협약 이행에 관한 일반적 지침에 따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관련 법·제도 등의 개선을 유도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아동권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아동권리의 모니터링 및 홍보를 위해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위촉하였으며, 아동권리 소식지 등을 발간하여 배포함.
- 아동권리위원회의 2003년, 2008년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가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함.
- 아동권리관련 법·제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아동권리증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

□ 사업방법

- 국내 법·정책 자료 및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국제문서를 지속적으로 분석함.
- 아동권리 전문가들과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제2장 아동관련 법·정책 등 제도 모니터링

□ 아동관련 법률 모니터링

- UN아동권리협약의 8개의 클러스터, 즉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중 ‘아동의 정의’를 제외한 7개의 영역에 대한 법률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 함.

□ 아동관련 정책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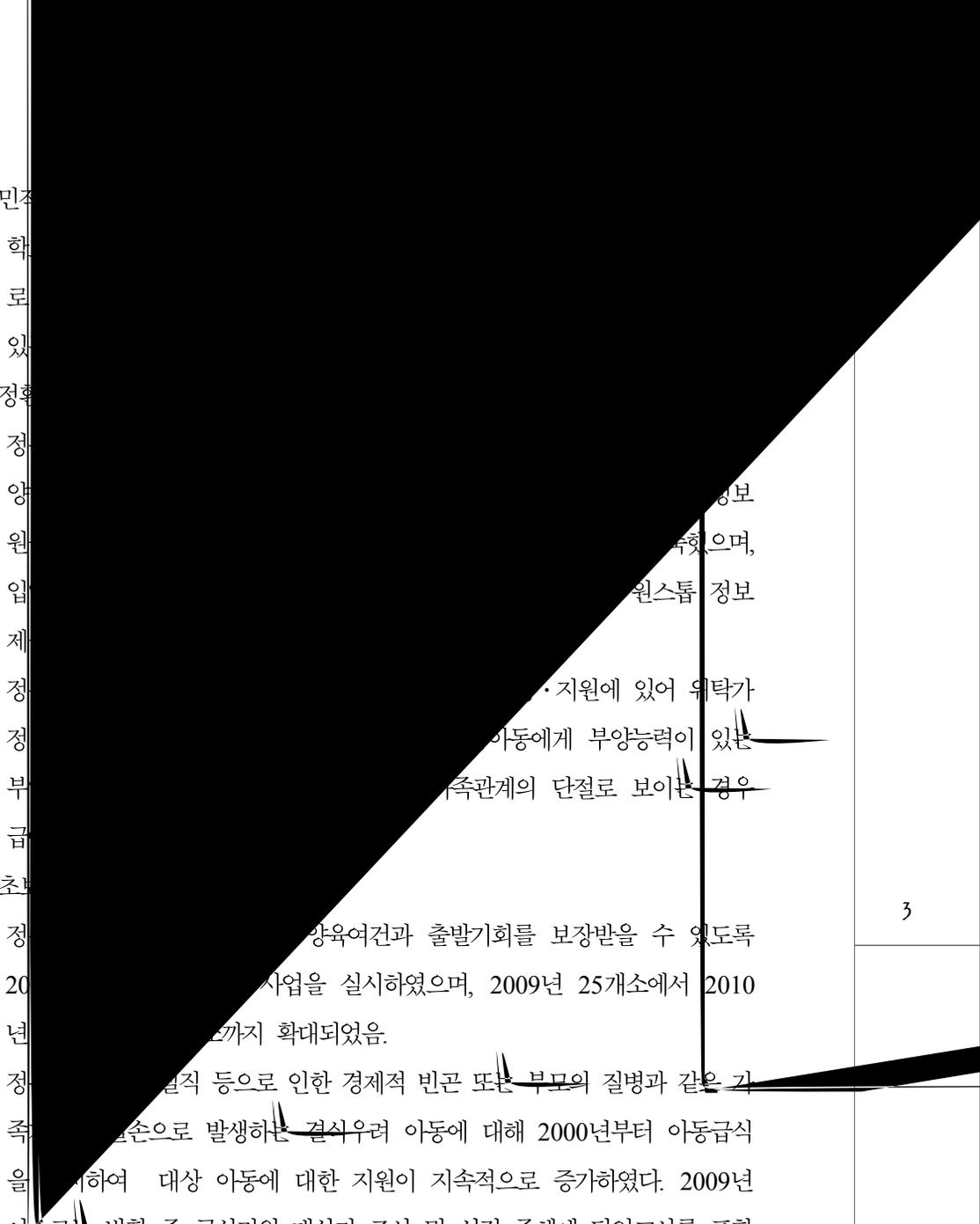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및 아동의 정의
 - 공적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 2006년 4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설립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지속적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막는 장애요인 등을 발굴하여 개선·권리증진 방안 모색 등
 - 아동관련 통계수집 및 아동인구
 - 2010년 발간된 ‘아동·청소년백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참여 정책, 활동, 복지, 교육, 노동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18세 미만의 자료 정의
- 일반원칙
 -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방안 2009~2012”를 통해 다문화가정학생의 한국어·학력향상 일반학생 등의 다문화 이해 제고에 힘씀.
 - 정부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개설해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미흡한 아동들에 대한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

○ 시민주

- 학
로
있

○ 가정학

- 장
양
원
입
제
- 장
장
부
급



정보
...
원스톱 정보

· 지원에 있어 위탁가
아동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이는 경우

○ 기초학

- 장
20
년
- 장
죽
을
이
- 유아
- 지역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25개소에서 2010
년...까지 확대되었음.
... 부모의 질병과 같은 가
족... 발생하여 아동에 대해 2000년부터 아동급식
을... 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이... 중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주체에 담임교사를 포함
하도록 함.
유아 공교육의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유아
학비 지원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 70%까지 지원을 확대함.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9월 「아
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0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에 아동복지교사 2700명을 파견

- 교육, 여가 및
 - 장애아동에 대한 여가·문화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오
 - 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여가·문화의 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 2010년은
 - 2009년에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를 운영하여 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노력을 강
 - 화하고 있음
- 특별보호조치
 - 2006년 이 지속적으로 남자청소년의 범죄율은 다소
 - 여자 청소년의 범죄율은 증가

□ 주요 이슈별 법·정책 모니터링

○ 장애아동의 고등교육권

- 장애아동 고등교육 관련 법령 및 대학입학제도
 - 고등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 장애아동 고등교육을 위해 마련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실태
 - 일부대학에서만 실시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 적은 모집 정원 때문에 원하는 학과 선택의 폭
 - 중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실제적 모집대상의 제한

○ 아동의 건강권

- 저체중아 출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0대 미만 성인병
- 환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책
 -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저체중아 등 일반 가정의 경
 - 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 영아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고보조 서비스임.
 - 신생아집중치료실 수요 증가에도 의료기관에서 적자의 이유로 설치될 기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부
집중치료실 지원사업'을 시작함.

- 아동 성인병 지원책

- 비만이나 질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식품의 영양성분
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금지를 명시한 「
화장품안전관리 특별법」
- 지역사회 보건소 등에서 실시되는 식생활, 가공식품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보건소 등에서 영양개선사업을 실시

□ 주요 지표로 본 한국아동의 권리수준

○ 아동권리의 지속적 향상 지표

- 아동의 안전·건강

- 영아사망률은 1989년 5.3%, 2002년 5.3%, 2006년 4.1%로
소 추세를 보임.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지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7
년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강화 및 학교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함.
- 아동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임.
- 2007년도를 기준으로 국내입양의 비율이 국외입양의 비율을
초월함.
-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온 결과, 소년소녀가장 가구수는 1997년 이
로 급격하
게 감소함.

○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표

- 아동의 학업중단 및 비행·일탈

- 아동의 학업중단, 흡연, 가출, 범죄, 자살률의 증가는 아동의 비행 및 일
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을
 -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을 모두 중단한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중학생
- 청소년 흡연을
 - 중학생 흡연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으며, 흡연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흡연금연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
- 가출청소년 수
 - 가출청소년의 수는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소년범죄자 수
 - 소년범죄자 수는 2000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함.
- 아동·청소년 자살률
 -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08년 이래 4.6명으로 증가를 반복하는 추세이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HIV/AIDS 아동·청소년 감염자 수
 - HIV/AIDS에 감염되어 신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에는 27명으로 나타남
 - HIV/AIDS 감염은 아동·청소년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HIV/AIDS 감염 예방 및 감염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요구됨.

제3장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

□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위촉 및 역할

- 2010년 6월 제2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 20인을 위촉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및 아동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 아동권

○ 성

—

—

○ 아

—

—

□ 아동권

○ 아

—

○ 「아

—

제4장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운

—

○ 향 홈페이지 운영 과제

— 아동권리침해 신고센터 설치

-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홈페이지 개편

- 홈페이지 주 이용 대상자인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 재구성
- 회원관리 기능의 차별화

□ 아동권리 소식지

- 아동권리 소식지 발간
 - 효과적인 아동권리 홍보를 위해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2010년 9월 ‘아동권리 소식지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12월 ‘아동권리 소식지 2호’를 발간하였음.
- 아동권리 소식지 배포
 - 보건복지부 외 13개 부처와 아동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우편 송부

□ 아동권리 거리 홍보

- 어린이주간
 - 5월 어린이주간을 맞이하여 대국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홍보
-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립 배경 및 활동,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역할 등을 홍보
 - 아동권리 홍보물 배포 및 아동과 부모 대상 질의응

제5장 한국아동의 권리증진 정책개발 : 나홀로 아동 대책

□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 발족

- 아동권리관련 법·정책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 아동권리침해 사전예방 및 권리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서비스 및 권리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자문 실시
 - 아동권리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토론 진행

-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 주요 활동
 - 제1·2차 회의를 통해 실무협의회 운영방향 및 계획을 논의하며, 정책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 중 협의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업을 결정
 - 제3·4차 회의에서 아동보호지원에서 바라 본 ‘나홀로 아동의 실태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 결과에서 도출된 대책(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나홀로 아동’의 실태 및 「나홀로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 본 센터와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는 4차에 걸쳐 나홀로 아동의 실태 및 대책 방안을 논의함.
 - 한국의 ‘나홀로 아동’의 현황과 국내·외 ‘나홀로 아동’ 제도 등의 검토를 통해 ‘나홀로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도출
 - 아동의 방임위험도에 따라 1~3차 보호체계로 구분하여 나홀로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제6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동향

- 2010년 국가별 심의일정
 - 2010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국은 모두 25개국임.
 - 모든 심의국가는 심의 1~2개월 전 추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 CRC는 심의 2~3개월 전에 각국에게 추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리스트(추가보고서 요청공문)를 보냄.
- ‘추가보고서 요청공문’ 분석
 - 주요 이슈 및 정책관련 자료 요청
 - 21개 심의국가 추가보고서를 Cluster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특별보호원칙에 대한 추가 정보를 많이 요청함.
 - 특히, 아동관련 중장기계획의 세부내용 분석 결과, 중장기계획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에 대한 내용을 14개국에게 요청하였음.
 - 13개국에게 아동대상 폭력의 실태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요청함.

- 2개국에게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이동정책에 대한 정보 요청함.
- 10개국에게 소년원의 실태 및 교육권 보장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요청함.

○ 통계자료 요청

- 통계자료 요청을 Cluster별로 분류한 결과, 특별보호조치,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전 및 복지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이 가장 많았음.
- 세부 트피별로, 유엔 CRC는 '이동정책 영역별 국가의 예산현황과 지난 3년간의 동향분석'을 17개국에게, '가정위탁, 입양, 아동생활시설 등 대안적 돌봄시스템 내에 있는 이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14개국에게, '성학대 및 성적 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통계자료'를 10개국에게 요청함.

□ 주요 국가의 영역별 권고사항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일반이행조치

-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게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
 - 권고사항 중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상황을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모든 국가에게 각국의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함.
 - 국내법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치하도록 법을 제·개정하도록 함.
 -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아동의 청원을 조사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청원제도 운영을 위한 자원을 제공 받도록 권고함.
 - 아동양육시설·보건영역 종사자 사회복지사, 법조인, 정책 결정자, 공무원 등에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동의 정의

- 아동권리위원회는 남자의 혼인가능연령이 18세인 것에 비해, 여자의 혼인가능연령이 16세인 것은 비차별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여아의 혼인가능연령도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함.

○ 일반원칙

- 해당국은 빈곤, 기후변화, 홍수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함을 권고함.

- '최선의 아동이익'은 모든 법·규칙·행정부·행정적 결정 절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가족, 학교, 아동기관, 지역사회 및 행정적·사법적 절차에서 모든 아동의 견해를 존중해야 함.

○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의 영역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권고한 사항은 없으며, 다른 법률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권고함

•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은 금지되어야 함.

• 비폭력·비체벌에 대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인식 고양에 힘써야 함.

○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위기가족이 스스로 아동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모든 지역의 학대·방임아동에게 충분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기초보건 및 복지

- 아동권리위원회는 정신질환 예방, 경증·중증 정신질환 치료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ADHD 아동에 대해 조사하며, ADHD 아동, 부모, 교사에 대한 심리적·교육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 아동권리위원회는 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고, 아동 자신도 따돌림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함.

○ 특별보호조치

- 아동매매·거래 실태를 조사하며 이를 없애기 위한 법·정책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사법기관은 아동의 인권, 투명 등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것으로 권고

□ UN CRC 제3선택의정서 실무그룹 2차 회의 주요 내용

○ 회의 내용

－ 전문

- 전문 제2항은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비차별 원칙을
- 전문 제5항은 아동권유구 등 증진을 위해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해 규정함.

－ 개인진정제도

－ 집단진정제도와 국가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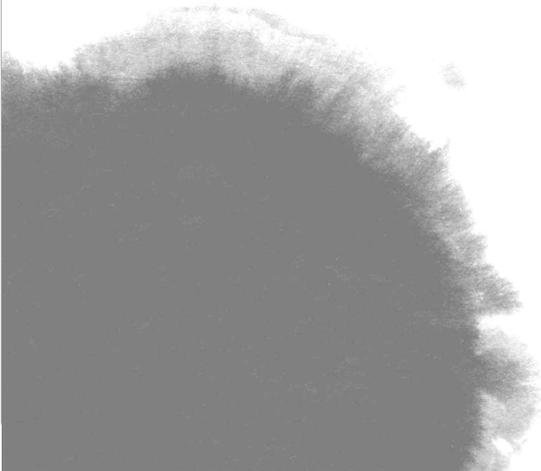
－ 절차규정, 잠정조치, 보호조치 등

－ 조사제도 및 국제협력

－ 표준규정

01

서론



제기장 서론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본 협약의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에 한국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둘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권고안에 따라 2006년 한국정부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상설기구로 시범 설치하여 아동권리옴부즈퍼슨(성인 21명, 아동 10인)을 위촉하였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2008년부터 독립적인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200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2011년 하반기 국가 추가보고서 제출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고서 준비를 위해 관련 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타 국가들의 추가보고서 분석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가보고서 작성 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 심의 준비에 착수할지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사업은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에 큰 도움이 되는 기료가 될 것이다.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높이는 센터 및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실효성 있는 준비, 아동권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홍보,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주요 사업내용 및 방법

1. 주요 사업내용

가. 한국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홍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 6월 인 10명, 아동 10명)과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리 문화활동 등 8개 영역(cluster)별 아동권리침

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분기별 아동권리 소식지를 발간하여 아동권리지는 아동권리의 국제동향, 아동권리관련 정책 증진을 위한 특별기고문, 아동권리에 대한 일로 구성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평을 원문과 비교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나. 추가 국가보고서 작성

추가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2009년 이 아동권리관련 정책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2003년 및 200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며, 향 보완해야 할 점을 도

출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2011년 국가보고서 심의 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을 미리 예측한다.

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아동권리관련 법·정책 등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의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사업에서는 14차 회의를 거쳐 「나홀로 아동」의 실태 및 대책 방안에 대해 확정된 최종안을 국가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업방법

본 사업을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국내 법·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법제처, 통계청,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흩어져 있는 아동권리 관련 데이터, 활동과 예산, 프로그램 평가, 욕구사정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생성된 자료들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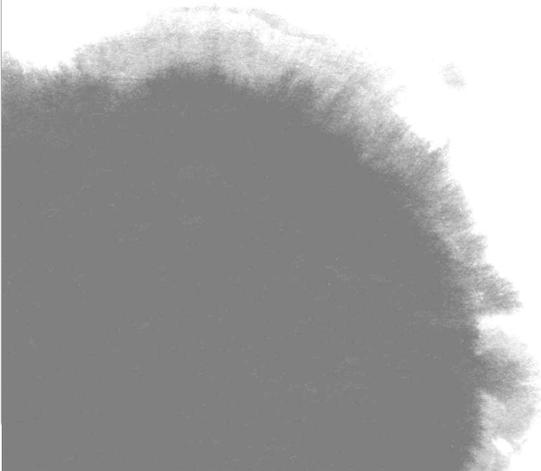
나. 국제문서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국제문서를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주요 국가들의 국가보고서 심의과정 및 결과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기타 보도 자료, 주요 선진국의 아동권리관련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를 위한 자료로 될 수 있다.

다. 효과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한국의 아동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권리옴부즈퍼슨’과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를 활용한다. 아동권리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과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는 전문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관련 법·정책 등 제도 모니터링



제2장 아동관련 법·정책 등 제도 모니터링

제1절 아동관련 법률 모니터링)

UN아동권리협약은 8개의 권리와, 두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조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로 이루어져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1)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2010년 11월 인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2009~2010년의 2년 동안 정부가 UN아동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법률의 제·개정 현황을 클러스터별로 모니터링 하였는데, '아동의 정의'에 해당하는 법률 제·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동의 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클러스터 각각의 법률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이행조치

일반이행조치에 해당하는 법률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등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 >

	2009	•
	2009	•
	2010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12.31.

○ 개정이유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도입되어 다양한 서식이 통합 사용됨에 따라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른 신청서와 구분하기 위하여 그 서식의 제명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공통서식 활용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등의 간소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2010.1월)할 예정임에 따라 각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

~~되는~~ ~~거~~ ~~시~~ ~~식~~ ~~을~~ ~~공~~ ~~동~~ ~~활~~ ~~용~~ ~~하~~ ~~기~~ ~~위~~ ~~한~~ ~~근~~ ~~거~~ ~~를~~ ~~마~~ ~~련~~ ~~하~~ ~~는~~ ~~것~~ ~~임~~.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12.31.
- 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신청 등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고시로 제정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 폐지(안 제9조)
 - 학업중단 청소년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을 위한 지원신청을 현행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였던 것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 ~~관련~~ ~~공~~ ~~통~~ ~~서~~ ~~식~~ ~~에~~ ~~따~~ ~~라~~ ~~신~~ ~~청~~ ~~하~~ ~~도~~ ~~록~~ ~~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신고서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 ~~통~~ ~~서~~ ~~식~~ ~~에~~ ~~따~~ ~~르~~ ~~도~~ ~~록~~ ~~함~~.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 소관부처 : 국무총리
- 법종 : 국무총리훈령
- 처리일자 : 2010.06.17.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개정('10.1.18)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권자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러 ~~는~~ ~~것~~ ~~임~~.
- 주요 내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위원회 위원의 직명을 변경함(안 제3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권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5조).
-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0조).

2. 일반원칙

일반원칙에 포함되는 ~~법종은 어린이식품안전관리법, 학교급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법종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재료 원산지 등의 심의기능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및 표지판 등 설치·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대상 및 운영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01.21.
-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9156호, 2008. 12. 19. 공포, 2009.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령 제21269호, 2009. 1. 19. 공포, 2009. 1.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부처의 명칭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도 교육감을 추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삭제(안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4,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11호 서식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보수 등 안전 및 유지관리(행안부에서 제조인증 업무는 기경부에서 담당함.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도 교육감을 추가(안 제16조제2항)
-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제2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3조제2항, 제18조제2항·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4항)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처리기간 조정(별지 제12호 서식)
-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12호 서식부터 제15호 서식까지, 제18호 서식, 제19호 서식)

< >

	2009	• •
	2009	• •
	2009	• • •
	2009	• • • •
	2009	• • • 3
	2009	•
	2009	•
	2009	•

□ 학교급식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2.25.
- 주요 내용

－ 식재료 원산지 등 심의기능 강화(안 제2조제2항 제3호)

-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품질기준의 내용과 우유급식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식재료 원산지 심의를 의무화 하고, 2008년 9월 중국 산 유제품에서 멜라민 검출사고와 관련하여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급식불안 해소와 급식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교 영양사의 직무규정 준용근거 마련(안 제8조)

-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도 전국적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가 미비한 실정임.
- 학교 영양사의 직무를 현행 영양교사의 직무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급식운영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과태료 징수절차 정비(안 제18조)

- 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시행(2008. 6.22)으로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는 동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이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3.20.

○ 개정이유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 및 금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공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943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및 표지판 등의 설치·관리(안 제3조 및 제4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및 통학하는 학생수 등을 조사하고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범위(안 제8조)

-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및 운영(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를 추가하고, 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5개 집단급식소 당 1

명 이상을, 위생업무 담당자는 ~~10개~~ 집단급식소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며 그 밖에 이들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7조부터 제 21조까지)

-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3.25.

○ 개정이유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처분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허가·신고·수리·권한의 지방이양(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3조의2)
-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확대(안 제17조의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04.03.

○ 개정이유

- 최근 빈발하는 식품 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능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관리를 강화하며, 법령에 따
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명확
히 하는 등 그간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던 사항들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하
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변경보고 의무 폐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 게시(안 제17조의2 개정)
 -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영업허가업무 지방이양(안 제22조·제27조 및 제
32조 개정)
 -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금속검출기 등 설치 의무화(안 별표 9 개정)
 - 소비자불만사례 신속보고 의무화(안 별표 12·별표 13 개정)
 -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관리강화(안 별표 12, 13 개정)
 -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3진아웃제 도입(안 별표 15 개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통일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08.05.

○ 개정이유

-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
을 하는 경우 세대 당 하나의 주택을 알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 구성
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
탈주민의 주거환경의 편의를 도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수료하
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또 ~~.....~~ 단 일
- 부
- 주요
- 학
- 직 ~~.....~~ 서식을 구분(안 제3조)
- 비 ~~.....~~ 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로
- 명
- 하 ~~.....~~ 보호대 ~~.....~~ 상이 거주할 경우 주택을 추가로 알선
- 할 ~~.....~~ 함(안 제
- 지 ~~.....~~ 주장려금을 지역 ~~.....~~ 따라 각각 2배 증액하고 지급시기 ~~.....~~ 거주지 전입
- 이 ~~.....~~ 2년이 경과한 이 ~~.....~~ 로 함(제4조).
- 대학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저조할 경우 교
- 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생활보호의 신청절차를 삭제함(안 제9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통일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10.09.27
- 개정이유
 -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에 예비학교
 - 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 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88호, 2010. 3. 26. 공포, 9. 27.
 - 시행)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 설립·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통
 - 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입국 조사 기간을 180일 조사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보호가 거부된 북한이탈주민의 무의미하고 반복되는 보호 재신청을 위하여 보호의 재신청 기간을 최초 보호 결정의 통지 이후 5년 이내로 확히 함(안 제18조).
-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교육과정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설치하여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5항 신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회를 확대 개편하여 설립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 임명 및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신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8.06.

○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42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 하되 3년 이상 학교폭력 예방, 상담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국무총리훈령

○ 처리일자 : 2009.11.27.

○ 개정이유

-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기출, 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발굴 및 통합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의 가정,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하여 각급학교, 시도(단위)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청소년쉼터 등을 필수연계기관으로 규정하여 협력토록 함(안 제3조).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운영협의회를 두며, 운영협의회는 시·도(또는 시·군·구) 청소년 담당 국장 및 필수연계기관 담당관 등 14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도(또는 시·군·구) 청소년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 및 5조).
- 운영협의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통합 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간 연계망 강화를 위한 사항을 협의함(안 제6조).
- 지역 내 각급학교와 통합지원체계 간의 연계 강화 및 민간 자원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운영협의회 내에 학교분과 및 1388청소년지원단 분과를 둠(안 제9조 및 10조).
-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지원센터에 실행위원회를 둠(안 제12조).

□ 학교급식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10.06.29.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이하의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는 본청인 교육청이, 중학교 이하의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는 지역교육청이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앞으로는 각 사도의 지역 실정에 맞게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관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10.01.26.

○ 개정이유

-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을 내세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941호, 2008. 3. 27.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광고 제한 시간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송광고의 제한·금지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안 제7조의2)
 -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므로 식품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과잉 소비할 수 있으므로 광고 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조항

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초·저영양 식품까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함.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비만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비만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에 해당하는 개정 법률은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이다. 본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신설인데, 이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제한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피해의 재발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아동의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 >

	2009	•
	2010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03.10.
- 개정이유

-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2009.10. 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

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정비(안 제6조제3항)
 -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의 열람권자 범위가 넓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은 “~~결합권자~~”,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권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본인이나 세대원과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권자”로 하여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신설(안 제13조의 2, 별지 제14호의 3 서식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
 -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재발방지가 기대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안 제14조제1항)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지불 불편으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이 발생되고,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이 필요함.
 - 등·초본 교부수수료의 조정으로 행정능률 도모 및 민원불편 해소, 본인 통보제 시행 비용보전이 기대됨.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신청방법 개선(안 별표)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관리변동~~ 관련 계약서 등만으로 명확한 이해관계 입증이 미흡한 경우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예시

- 이해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입증자료 추가 예시로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률 도모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10.06.15.

○ 개정이유

- 주민등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결혼이주자의 혼인관계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안 제15조제2항 신설)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지 않아 주민등록표 등본제출 요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결혼이주자의 혼인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여 다문화 가정 생활불편 해소와 더불어 ~~사회분위기~~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추가(안 제18조제10호 신설)
 - 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이 결여되어 민원 제기됨.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수수료를 면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안 별표)
 -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불편이~~ 제기됨.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 서식 보완(안 별지 제7.9호 서식)
 -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른 신청서식 보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표시 선택사항 추가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 서식을 보완하여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4.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해당하는 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아보육법~~이다. 법종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소보호 수탁거부 시 과태료부과,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기관을 정비,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 등이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10.08.11.
-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법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 처분토록 하는 조항 신설(법 제30조의2)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이 공포(’10.5.17)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신설
 -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자구정비

<

	2010	· ·
	2010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10.07.09.
- 개정이유

— 현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고 위원명단이 공개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시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관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조정(안 제7조제2항제 3호)
-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안 제21조의6제1항)

5. 기초보전 및 복지

‘기초보전 및 복지’는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많은 법령이 적용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시행

령, 모자보건법, 유모가족지원법, 유아교육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장학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의 대상자, 건강검사의 실시 및 시기, 양육수당의 대상 및 기준, 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 축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 종사자 범위 확대 등이다.

<

	2009	•	
	2009	•	
	2009	•	
	2009	•	
	2009	•	•
	2009	•	•
	2009	•	
	2009	•	
	2009	•	•
	2009	•	
	2009	•	3
	2009	•	
	2009	•	1
	2010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3.12.
-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포함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 결혼·출산 친화적 병역제도 운영 및 장병에 대한 지원 등 저출산대책과 관련성이 높은 절충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3.31.

○ 개정이유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4조4 및 제34조의6에 따라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정보 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시행령

- 금융정보 등의 범위(안 제21조의3) : 법 제34조의4에 따른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출받은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면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규정
-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안 제21조의4) : 법 제34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시행규칙

-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안 제35조의2) : 비용지원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신청방법과 절차를 규정

- 확인조사(안 제35조의3) : 보육비용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 조사계획수립 등 조사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5.06.

○ 개정이유

-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여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 하려는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15 호, 2009.02.06. 공포, 05.07. 시행)됨에 따라 채권의 발행, 국가장학기금운 영회의의 구성 및 운영, 보증계정 및 학자금계정의 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교부금의 신청 및 채권발행의 신청(영 제4조 및 제5조)

- 재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한 출연금요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 재단이 채권의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장학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의 대상자(영 제25조)

- 국가장학기금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을 해주는 대

그 자녀, 이학

여 재단의 기

- 학자금대출 신용보

• 주 채무의 보

자산요율을 한

의 1로 하고

과하지 아니

고려하여 정

- 학자금 대출금 이

(영 제31조제2항)

• 학자금 대출금

자 등 저소득

하여 교육과

- 업무의 위탁(영 제

• 재단은 기금

항 및 채권의

하여 업무를



□ 학교건강검사규칙

○ 소관부처 : 교육과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0

○ 개정이유

- 1951년부터 실시해오던 운동능력검사 위주의 「학생신체능력검사」는 단순 측정 기록에 그치고, 신속 조치가 미진하여 학생들의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비만을 포함하는 건강체력평가 체제로 개선하고, 신

체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장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전체학년으로 확대 실시토록(안 제3조 제4항) (2007.12.14)됨에 따라 법률의 내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함

○ 주요 내용

－ 건강검진 확대 실시(안 제3조 제4항)

- 신체의 능력검사를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체의 능력검사를 전 학년을 앞당김.
- 학생의 신체의 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최소한 6개월 동안 수업시간, 방과 후 활동, 가정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기말에는 충분한 신체활동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초등학생 구강검진 전 학년 확대 실시(안 제6조제1항)

- 구강검진의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별도검사의 구강검사 대상에서 초등학생 삭제
- 학교건강검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의 내용체계를 「학교보건법」과 일치시킴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신체의 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안 제7조)

- 신체의 능력검사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범위를 확대
- 신체의 능력검사를 필수평가와 선택평가로 구분하고 종목을 확대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신체의 능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학교의

건강체력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체의 능력등급(안 제9조 제2호)

- 신체의 능력검사 ◦ 신체의 능력검사 기준표에 따라 점수의 능력등급판정표에 따라 급수를 판정
- 현재 자기 자신의 건강체력 점수를 파악하고 신체활동 처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건강체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검사 결과의 관리(안 제9조 제4항)

- 신체의 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 건강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건강평가시스템을 구축함.
- 이로써 신체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연례 건강검사의 신체의 능력검사 결과 및 신체활동 처방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신체의 능력 상담 및 신체활동 실천일지 기록 함.

－ 건강검사 결과의 조치(안 10조 제4항)

- 학교는 신체의 능력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통지하고, 비만 학생에 대한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다양한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줌으로써 건강증진 및 비만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5.28.
- 개정이유

- －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하며,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하는 등

우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및 교육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제공하
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영 제1조의2 신설)
 -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포함.
 - 위기상황 발생 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긴급지원 요청 시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영 제1조의3 신설)
 -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금융정보의 경우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예금의 원금 또는 등 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의 경우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고, 보험정보의 경우 보험증권은 환급금 또는 지급금으로, 연금보험은 환급금 또는 지급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함.
 - 긴급복지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과잉조회가 사전에 예방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교육지원의 지원범위 및 방법(영 제5조의2 신설)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1분기분을 지원함.
 - 긴급지원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초·중·고등학생이 학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따른 절차 및 방법(영 제8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간접거래종사자~~ ~~간접거래종사자~~의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써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함.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6.30.

○ 개정이유

-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제도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2008. 12. 19.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사항을 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영 제10조의2 신설)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기피 및 위원 스스로에 의한 회피 제도에 관하여 규정함.
-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영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목적·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정관기재사항을 정하고,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을 위하여 공제회의 매 사업연도 사

업체회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간공과금의 관련 보고를 명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양육수당의 대상 및 기준(영 제21조의6 신설)
 -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구에 속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하고, 기구의 소득
위한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함.

□ 모자보건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7.07.
- 개정이유

- 모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
에서의 감염·질병·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에
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921호
01.07.공포, 07.08.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모자보건법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위를 축소하며, 산부와 영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조리업에 종
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통하여
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위를 축소(영 제15조)
 -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태아의 모체 밖 생명 유지가능성 시기 및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과
전염성 질환을 고려하여 이를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에 반영할 필

• 조리원 업무 중 절수술을 받은 조리원에게 불분명한 질환을 진단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있다.

• 건강보험료 조리에 중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리원 업무 중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조리에 중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중사하는 조리원 업무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않고 청소나 설거지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모든 조리업자와 산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11.02.

○ 개정이유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668호, 2009. 10. 19. 공포, 11.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786호, 2009. 10. 19. 공포, 11.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며,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되는 기준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신설
- 긴급전화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신설
-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12.31.

○ 개정이유

-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기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956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과 다자녀 가구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등의 우선 입소대상에 다문화가족과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추가함(제29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정함(제35조의2 신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경우 그 가액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과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각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수당 지급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5제2항 신설).
- 보육시설연합회의 회원자격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그 임원의 수와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합회의 자율성을 확대함(제41조, 현행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12.31.
-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혼모자 및 모·부자 공동생활가정의 보호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하고, 일시보호시설의 연장보호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등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미혼모자 및 모·부자 공동생활가정의 입소기간 확대(1년→2년, 안 제4조 제2항 제3호)
-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연장 보호기간 확대(3개월→6개월, 안 제4조제2항 제5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보서 및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등 공통 서식 활용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제3항, 제12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2.25.

○ 개정이유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이동~~의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 개정('07.8)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2009년3월 입학생부터) 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무상교육의 기준연령을 변경('3월1일~익년2월말'에서 '1월1일~12월31일'로)
-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시 신청서류 중 '5.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유지방법'을 삭제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 '8.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9.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와 내용이 중복됨.
-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기준을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변경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10.05.31.
- 개정이유

– 유아교육비용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176호, 2010. 3.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의 범위와 조회방법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유아교육비용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31조의2 및 안 제31조의5)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함.
 - 유아학비 지원 업무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요청·제공방법의 구체화(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요청·제공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자함.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회의 세부 절차적 사항

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안 제31조의6)
 - 유아학비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적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유아학비 지원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학부모등의 편의 제고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의 관계기관 위탁(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복지부 및 지자체의 업무 위탁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유아학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6.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2009년, 2010년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의 기준 완화, 자율형 사립고 지원방안 마련, 대안학교 설립주체 확대 등이다.

□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2.06.
- 개정이유

- 국제협력 및 투자협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6462호, 2001.04.07. 공포·시행)되고, 외국인유치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7120호, 2004.01.29. 공포, 2005.01.30.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

립기준, 교육과정 및 학력인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009	• •
	2009	• • •
	2010	•
	2009	• • • •
	2010	• 4 •
	2009	•
	2009	• •

○ 주요 내용

- 설립자격을 국내학교법인까지 확대(안 제5조)
 - 종전의 외국인에서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학교법인까지 설립자격을 대폭 확대
 - 특히, 이미 학교운영 및 교육능력이 검증된 국내의 사립학교법인에게 학교설립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 교육환경 보장
- 내국인 입학자격 기준을 해외거주 3년으로 완화(안 제8조)
 - 외국인학교의 문턱을 낮추어 주재관 자녀 등 3년 이상의 해외거주 경험으로 국내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의 추가적 조기유학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
 - 단, 외국인 정주여건이라는 초 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 설립의 취지 달성을 위해 내국인 수는 외국인학교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
- 학력 인정 규정 신설(안 제10조)

-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도 국내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더라도 국내 상급학교 및 대학진학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이 영 시행당시 인가받은 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 설립기준 최대한 완화, 재정지원 규정 신설(안 제18조)
 - 외국인학교의 경우 교사·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제약 최소화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화교학교, 기타계 학교 등의 재정곤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 법종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학교가 재정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가능
 - 법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변경을 명령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인가취소가 가능토록 하여 재학중인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보호 방안 마련
-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 규정 신설(안 제3장)
 - 「유아교육법」 제16조에서 위임한 외국인유치원 설립기준·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02.26.
- 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 및 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학생의 부담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취업~~.

○ 주요 내용

-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5] 의 일반기준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 4(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5]의 일반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감경사유를 구체화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3.27.
-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자율적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울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영 제78조)
 - 종전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중 변경사항만을 입학전형실시권자가 10개월 전에 공지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의 수요자에게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교육감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및 입학전형 방법 등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입학전형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수립하는 입학전~~

록 함.

-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고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입학전형의 지원제한(영 제81조제3항)

- 종전에는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원칙적으로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내의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및 새로 제도화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함.
-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생모집의 특례(영 제81조의2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인원입금 이상을 부담하는 등 입학조건을 갖춘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관청을 관할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우수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모집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어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등학교 선발고사방식 변경(영 제83조제1항)

-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선발고사로 인하여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고등학교 입학 선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입학에 위하여 실시하는 선발고사의 범위를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영 제105조의3 신설)

- 실질적인 사립 고등학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범인원입

금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운영 계획, 입학전형실시계획 및 교원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감이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을 통하여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맞는 다양한 학교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학교는 사립학교 원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7.07.
-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 폐지됨.
- 주요 내용
 - 독서진흥위원회 폐지(제4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07.10

○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야외집회장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제2조 및 제5조, 제6조 관련)
 - 수련시설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
 -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으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보고의무 주기 완화 (안 제14조의2 관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보고 등의 보고의무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년”으로 완화함.
 - 지자체의 보고의무 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요소 제거에 기여
- 민원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2항제1호 관련)
 - 수련시설 설치·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수련시설 설치예정 지역 위치도의 축척기준 삭제
 - 민원서류 간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완화(제8조 관련)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단위시설기준 및 개별기준 일부 완화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기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8.18.

○ 개정이유

—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영어교육을 담당할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계속 임용이 가능한 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거를 추가(안 제42조 제1항)

• 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 및 신분 보장이 불안하여 우수 인력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의 강사와는 차별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계약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규정 신설(안 제42조 제5항)

• 기존의 강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도의 계약 기간 및 급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의 개선이 필요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급여·근무조건 등에 대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강사와 다른 체계로 급여 및 근무 여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기간을 규정(안 제42조 제6항)

•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별도의 임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임용할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별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용기

- 간의 예외 기간을 명시한
- 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요
-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요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
- 상 자격증 소지자와 교육
- 정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10.07.
- 개정이유

-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 학습을 병행
-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 ~~○~~ 인 재직자를 정원
- 외로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 전형 정원의 비율을 일
- 부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 ~~○~~ 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 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 ~~○~~ 정원의 모집근거 신설
 -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의
 - 정원의 모집근거 신설(안 제29조제2항14의라 신설)
 -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 정원의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입학
 - 정원 대비 100분의 9에서 100분의 11로 확대함(안 제29조제2항관련 별
 - 표1).
- 전문계고 졸업생 정원 외 전형 및 기회균등전형의 모집 상한 축소
 - 제29조제2항제14호 나목(전문계고 졸업생 전형)의 총학생수 기준을 입
 - 학정원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함(안 제29조제2항관련 별

표).

- 같은 학제(사립대 등 전형)의 총학생수 기준을 입학정원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7로 축소함(안 제29조제2항관련 별표1).
- 전문대학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정원 외 입학 규정 정비
 - 제29조제2항제8호(대졸자 전형) 및 제12호(만학도 전형)의 경우 인력수급에 따른 정원관리가 필요한 학과(제28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관련 학과)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8호).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11.05.
- 개정이유

- '07년 7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현재까지 대안학교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설립 및 운영 기준 완화를 통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에 주코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대안학교 설립주체 확대(영 제2조)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안학교 설립주체가 사립학교의 설립주체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대안학교 설립주체의 제한을 폐지하여 기존 사립학교의 설립주체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안학교의 설립을 촉진하여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안학교 설립 조건 완화(영 제3조 및 안 제3조의2 신설)
 - 전인교육이나 야외학습 등 체험활동이 많고 다른 일반학교에 비하여 소규모 단위로 교육이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대안학교의 설립기준이 일반학교보다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 교사(校舍)와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일반학교에 요구되는 기준면적보다 완화하고, 일부 대안학교에 한하여 교사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판단 하에 체육장과 체육장 대응시설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
 - 열악한 재정상의 문제로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많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대안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안학교 설립인가와 학력인정 절차 통합(영 제6조 및 제9조)
 - 대안학교 설립인가와 학력인정 절차가 분리되어 있었던 이유로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었던바, 대안학교 설립인가 심의 시 교육과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설립인가 시 학력인정을 받은 것으로 하여, 국·공립 및 사립과목(국사 또는 역사 포함)을 교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 대안학교 교원 구성의 탄력성 확보(영 제10조의2 신설)
 - 대안학교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교원을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 구성의 탄력성을 높이고, 산학겸임교사, 교육, 체험학습 등이 많은 대안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등(영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학교에서 일정요건 하에 학생을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10.02.18.

○ 개정이유

- 자비 해외유학생의 증가와 민간장학재단의 해외유학지원 증가 등 해외 유학환경이 변화에 따라 1977년부터 실시해 온 국비유학제도의 지원자 선발 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능력이 우수하고, 건전한 국가관 및 사회봉사 정신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유학을 포기하는 우수한 서민층 학생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제4항 신설).
- 제1차 시험을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의 내용을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외국어 시험성적 및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및 학업과정, 지원 전공 관련 활동실적, 국외수학계획서 등으로 함(제23조 제2항).
- 제2항의 외국어 시험성적은 ~~과건국사~~ ~~국사시험~~에 필요한 공인시험성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제3항).
- 제2항의 국사 시험성적은 ~~국사공인시험~~ ~~국사시험~~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별도의 국사시험 성적으로 함(제23조 제4항).
- 제2차 시험을 면접시험으로 함(제23조 제5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10.02.18.
- 개정이유

- 능력이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유학을 포기하는 우수한 서민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영 제23조 제1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이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은 청취와 쓰기 시험이 실시하고,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2항).
- 제2차 필기시험 내용을 삭제하고, 영 제23조 제4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로 실시하는 국사시험은 선택형, 기입형 및 필답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3항).
- 제2차 필기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제9조 제4항).
- 영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은 국내 시험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 과목, 시험 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국립국제교육원과 당해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5항).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 중 두 과목의 4할 이상을 획득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별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함(제10조 제1항).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 만점 중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제10조 제3항).
- 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제2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제10조 제4항).
-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두 과목 성적우수자, 그 다음은 대학 입학시험 성적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시험(합시험에 한한다)의 평균성적 우수자로 함(제10조 제8항 4호 및 5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범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10.06.29.

○ 개정이유

- 복잡다기한 고등학교 유형을 단순화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목적, 지정 및 운영 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고등학교를 4가지 형태로 구분(영 제76조의2)
 - 현재의 고등학교 구분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고등학교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및 자율 고등학교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함.
 - 고등학교 형태를 단순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의 고등학교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안 마련(영 제82조제6항)
 - 현재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 및 인구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 도시의 경우 기업이 교육여건 개선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전에 소극적임.
 - 혁신도시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할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그 기업과 관련된 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양육할 인재를 양성하게 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특수목적 고등학교 목적 및 지정 기준·절차 정비(영 제90조)
 - 특수목적 고등학교 가운데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운영 되어온 외국어 고등학교 등의 목적을 정비하고, 지정·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특수목적 고등학교 가운데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여,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유형을 과학

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와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함.

-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평가 등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목적과 지정·운영절차가 명확하게 되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경과조치(영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신설)
-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학생 선발의 자율권이 계속 보장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음.
 - 종전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시험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 의무 선발 규정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10.05.04.
- 개정이유

– 교육과정의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과용 인정도서의 개편 일정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인정도서를 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으로 정해진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인정도서의 신청(제14조)
 -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인정도서의 인정심사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질 높은 일강도교육 및 교과서 개발자 편의 제고가 목적
- 제1항에 "다만, 교육과정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은 일강도교육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를 단서조항 신설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10.08.11.
- 개정이유

—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상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298호, 2010. 5.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10.08.11.

○ 개정이유

-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상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299호, 2010. 5.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하고, ‘한국청소년수련원’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규정을 각각 신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에 따라 활동진흥원으로 통합되는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규정을 삭제

7.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에 해당하는 법령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해당된다. 2009년, 2010년에는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뜨거운 감자였다.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자’를 ‘특정범죄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 내용을 추가한 것 등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

	2009	•
		•
	2009	•
		•
	2009	•
		•
	2009	•
		•
	2010	•
		•
	2010	•
		•
	2010	•
		•
	2010	•
		•
	2010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02.23.

○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마련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한 것임

○ 주요 내용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확대(안 제9조의3)

- 성매매피해자 의료비 지원범위에 치아손상 치료비용 추가(안 제10조 제7호)
- 종사자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시설기준 미충족 상태를 해소할 수습종사자 제도 도입(안 별표 2)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5).
 -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3.18.
- 개정이유
 - 공단 명칭 변경, 심사위원회 결정서 ‘서명’ 추가 및 서면의결 가능 규정, 법원의 결정전조사 절차 규정과 소년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의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주요 내용
 -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가능 규정 마련
 - 법원의 결정전조사 실시 절차 규정 및 소년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11.23.
- 개정이유
 - '09. 5. 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09.

11. 29 시행)

- 그 밖에 실무상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비

○ 주요 내용

- 특별준수사항 구체화(영 제19조)
-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신청 절차 마련(영 제19조의2)
- 경찰서 유치장 일시구금을 위한 (긴급)구인장 개선(영 제23조 등)
- 분류처우에 필요한 내용 규정(영 제19조의 3)
- 보호관찰공무원의 전문적 교육훈련 실시 규정(영 제6조의2)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2009.06.09.

○ 개정이유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 9122호, '08.6.13)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신설·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영 제4조의2 신설)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의 장 및 공원관리청이 아닌 도시공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등을 받으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 내 아동 범죄 발생 현황 등을 조

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 아동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을, 도시공원은 또 다른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영 제4조의3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고장·노후 등으로 교체·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종 : 대통령령
- 처리일자 : 2009.07.30.
- 개정이유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654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으로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특정 성폭력범죄가 특정범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성폭력범죄자'를 '특정 범죄자'로 용어 변경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종 : 법률
- 처리일자 : 2010.04.15.

○ 개정이유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여,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법 제2조제1호, 법 제5조제3항 신설).
-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법 제5조제1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함(법 제9조제1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법 제9조제3항 신설).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및 제14조, 법 제14조의2 신설).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법 제32조의2 신설)

-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를 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을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함(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11.27.

○ 개정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48호, 2009.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호장구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며, 원호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신청 서식 마련(규칙 제24조의2)

- 보호장구별 사용방법 및 절차 마련(규칙 제31조의2)

- 경찰서유치장 일시구금을 위한 (긴급)구인장 서식 개선(규칙 제32조)

- 그 밖에 신고서, 유치허가장, 집행유예 취소신청서 등 서식 개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09.12.31.

○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공포(법률 제9765호, 2009.06.09)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아동도 이 법에서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과 본문도 이에 맞추어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도록 함.
-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자임을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검사는 통보하도록 모범에서 규정되어 신설됨에 따라 통보서식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 서식).
- 검사가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 이수명령을 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의 서식을 마련 함(안 제4조, 제3호 서식).
-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통보할 때의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 제4호 서식).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제도가 인터넷 공개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열람신청 및 열람대장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시행규칙 제7조 삭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종 : 법률

○ 처리일자 : 2010.04.15.

○ 개정이유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고,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법 제2조제1호, 법 제5조제3항 신설).
-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법 제5조제1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함(법 제9조제1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법 제9조제3항 신설).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및 제14조, 법 제14조의2 신설).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법 제32조의2 신설).
-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치추적 방법 시
행 당시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그 요
건과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위치추
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규칙 제2조 신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10.08.09.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등
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
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부착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
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
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57호, 2010. 4. 15. 공
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위하여 출
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부착명령의 집행지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이전 등의 허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관
한 사항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10.08.09.

○ 개정이유

- 분류심사 과정 중 보호자와 그 밖의 참고인 등의 불참으로 면접조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면접이외에 유선통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무부내 조사(분류심사)업무의 전문성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자격 인증을 부여하는 ‘조사관 자격인증제’ 도입에 따른 근거조문을 신설함.

○ 주요 내용

- 위탁소년 등의 분류심사 과정 중 보호자와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면접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면접 또는 유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9조).
- 분류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년보호기관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교육이수, 필기시험, 분류심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51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10.08.16.

○ 개정이유

-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양성하여 판결 전 조사 등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조사업무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의 조사관 인증과 관련한 절차 규정과 세부사항의 훈령 위임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10.08.17.
 - 개정이유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의 기관명 변경에
불구 변경되지 않은 것을 명문화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에 대한 해당 기관명 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법종 : 부령
 - 처리일자 : 2010.08.23.
 - 개정이유
 -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91호, 2010.07.023.공포, 2010.
08.24.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
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등 일부기준 미비사항 개정

제2절 아동관련 정책 모니터링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이행조치 및 아동의 정의

가. 아동관련 예산

전체국가 예산 중 아동관련 예산은 2005년과 2006년 증가세를 보이다, 소폭 감소

다시 상승하였다. 2007년 기준 아동관련 예산 증감률 및 고등교육 관련 예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

(: , %)

	118,132,320	120,139,368	135,215,587	146,962,504	156,517,719
	17,623,061	18,985,240	24,390,080	25,257,051	26,835,133
	(-)	(7.7)	(31.3)	(3.5)	(6.2)
	84,297	101,182	13,670	21,663	70,235
	(-)	(20.0)	(86.51)	(58.6)	(224.2)
	312,012	404,997	600,091	791,008	1,043,474
	(-)	(29.8)	(48.2)	(31.8)	(31.9)
	89,747	109,824	125,039	137,815	156,536
	(-)	(22.4)	(13.9)	(10.2)	(13.6)
	6,324	13,675	14,563	19,013	20,352
	(-)	(53.7)	(6.5)	(30.5)	(7.0)
	18,115,441	19,614,918	25,143,443	26,226,550	28,125,730
	(-)	(8.3)	(28.2)	(4.3)	(7.2)
	15.3	16.3	18.6	17.8	18.0

: 1) 2005

2) ()

나.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

정부는 2006년 4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설립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점검하고 권리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0년 6월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성인 10인, 아동 10인을 위촉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9월에 제출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들이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아동관련 통계수집

아동관련 통계는 1965년 청소년백서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이래 45년 동안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성과와 현황을 제시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고 있으며, 그 실행을 위해 4년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약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c).

정부는 새터민 아동의 학교·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조성을 위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대책」과 「2009~2010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입국초기단계에서의 하나원에서의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새터민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09년 11월)해 탈북청소년 등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요건 완화 및 공립 대안학교 설립근거 마련하여 전국 최초 탈북청소년교육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여명학교’를 개교(2010년 4월)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교육지원(2009년 8월 부터)을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d).

나.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정부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개설하여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사회안전망 및 만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 보호를 하는 한편 지구대인 등 경찰을 통해 경찰과 연계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퇴직경찰과 대한노인회 회원 중 희망자를 「아동안전 지킴이」로 선발하여 지역경찰과 협조하여 통학로·공원·놀이터 주변에서 순찰하는 등 치안보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동안전 지킴이 100명을 선발하여 안양·일산 등 수도권 10개 경찰서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하였다. 2010년 현재 전국 174개교 1,740명이 활동하고 있다(아동안전지킴이집, 2010).

2010년 내로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CCTV 4천 225대가 추가 설치되었다. 최근 아동 납치 살해 사건 등으로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어린이 신변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4월 아시아 최초로 유괴·실종경보시스템인 ‘앰버경보시스템 (Amber Alert System)’을 도입하여, 아동 실종 및 유괴사건 등 발생시 TV, 라디오 방송, 도로, 지하철 전광판, 휴대전화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해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조기신고를 유도하였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63명에 대한 경보가 발령되었고, 이 중 96명을 발견하는 등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었다(보건복지부, 2010b).

아동 안전·교통·익사 및 추락사고 사망자수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 1,210명에서 2008년 508명으로 6년 사이 2분의 1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

(:)

	9,725	9,573	9,417	9,240	8,996	8,580	8,519
	1,210	1,016	891	756	645	538	508
	12.4	10.8	9.5	8.18	7.17	6.3	6.0

84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크게 감소하였는데, 2002년 468건, 2005년 284건, 2009년 154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교통사고 건수의 감소에 기인하는데, 아동 교통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녹색어머니’ 제도와 ‘스쿨존’과 같은 아동 교통안전에 사회적 노력에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 >

(:)

23,301	24,209	22,226	20,495	19,223	18,416	17,874	18,092
468	394	296	284	276	202	161	154
27,135	29,435						

망지
으며
약
<

다.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아동 스스로가 자신
들이 생각하는 결의문을 제출하여 정부에 제
안하여 개최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아
동청년대회(이하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말하다’)라는
주제어로 서울·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에서
지역별 대회를 개최하며, 본 대회에서 아동들이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
에 제출하여(청소년참여포탈, 2010a).

‘청소년특별회의’는 청년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
책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특별회의 활동을 함께 수
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잠재 역량 개발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
식과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이며, 올해는 2010년 5월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가 개최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2004년 시범사업 실
시 이후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정책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출범식, 지역회의
및 연간활동의 최종 보고대회인 정책과제 보고대회를 갖는다. 그동안 ‘청소년특별회의’
의를 통해 제안되었던 정책과제들은 해당 부처의 업무를 거쳐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왔으며, 지난 해의 경우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 4개 분야 20개 정책과
제를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에 제안하여 현재 14개 과제가 채택되어 추진 중
에 있다(청소년참여포탈, 201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10년 8월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은 청소년의 자질을 관용시켜 잠재 역량 개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이다. 이는 청소년관련 활동·문화·복지·보호·참여·생활 등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권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0).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적이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설치현황 및 설치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40개소 씩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해마다 10개소 이상 증가했다(김승권 외, 2008).

< >

(:)

	170	210	250
	111	130	146

: , 『 . 5 , 2008.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심의 자문기구이다. 이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운영회는 학부모위원(40~50%), 지역위원(10~30%), 교장을 포함한 교사위원(30~40%)으로 구성된다(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2010).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 초·중학교를 심의하며, 사립학교에 자문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국·공립 초·중학교의 학교현장 및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운영방법, 교육자료의 선정,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국·공립 초·중학교와 기능과 유사하나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을 하는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2010).

나. 체벌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교육상의 필요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 아동의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의 내용으로 체벌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는 최근 일부 교사의 심각한 체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체벌 금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체벌금지가 현행 법령의 기본 원칙이자 시대정신으로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각성의 움직임에서 실시된 것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0). 또한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대신에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추구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체벌 대체 방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하며,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의 규칙과 규율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 체벌 대체 프로그램, 체벌 예방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 체벌 발생 시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27.7	52.16	51.0	53.1
	2,845	5,369	5,458	5,706

4.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

요보호이동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0c). 통계청에 따르면, 요보호아동 발생수는 2008년 10,534명에서 2009년 10,153명으로 증가하거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교유 미안, 성폭, 생기회복 등으로 인해 요보호아동은 일정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보호아동중 시설보호면 시설보호의 경우 2008년은 4,964명에서 2009년 3,245명보다 증가하였으며, 정위탁과 입양 등의 가정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은 2008년 5,570명으로 2007년 5,616명보다 약 120명 정도 감소하였다.

< >

(:)

	10,222	4,747	42	35	4,824	2,392	2,506	500	5,398
	9,393	4,680	38	64	4,782	2,212	2,100	299	4,611
	9,420	4,769	48	1	4,818	2,322	1,873	407	4,602
	9,034	4,313	53	-	4,366	3,101	1,259	308	4,668
	8,861	3,189	39	17	3,245	3,378	1,991	247	5,616
	8,578	4,258	39	667	4,964	2,838	1,304	178	4,320

출처: 보건복지부, 『2009년 아동복지사업보고서』, 2009.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중 빈곤, 실직, 학대 등 기타 발생유형의 경우 2008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09년에 급속히 감소하였다.

< >

(:)

	21,882	11,660	5,540	4,682	628	4,457	79	595	4,463
	20,357	10,964	5,153	4,240	481	4,004	62	581	4,265
	18,468	9,048	5,351	4,069	429	2,638	63	1,413	4,877
	16,008	6,974	4,904	4,130	230	3,022	55	802	4,925
	11,394	2,533	4,786	4,075	305	2,417	37	748	5,354
	10,534	-	-	-	212	3,463	151	706	6,002
	10,500	1,472	4,999	4,029	230	3,070	35	707	710

2009.

입양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의 입양건수는 2,556건에서 2009년 2,439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 중 국내입양비율은 51.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해 국제입양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입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게 입양수수료를 지원하며, 중앙입양정보원을 2009년 7월 설립해 입양 관련 국내·외 유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해 입양 관련 총괄 조정·지원·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양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양인 및 입양대상아동에 관한 원스톱 정보 제공,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모니터링, DB 구축,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한 입양가족단체 지원 등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c).

90

< >

(: , %)

	1,564	1,641	1,461	1,332	1,388	1,306	1,314
	40.6	42.0	41.0	41.2	52.3	51.1	53.9
	2,287	2,258	2,101	1,899	1,264	1,250	1,125
	3,851	3,899	3,562	3,231	2,652	2,556	2,439

2009.

가정위탁은 대리양육가정, 원가족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으로 구분되며, 2009년 12월 전체 가정위탁 아동은 16,608명이다. 이중 대리양육가정의 아동은 10,947명,

친인척위탁가정 아동 4,500명, 양육부담금 지원,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위탁아동 지원 등 총 62.5%로 가장 높다. 정부는 위탁가정보호사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있어서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 경우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을 지급,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등의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c).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9년 기준 총 45개소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9,30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의 심사례는 7,354건(79.0%), 중복신고건수는 101건(1.1%), 일반상담건수는 1,854건(19.4%)이었다. 또한 재신고 건수는 1,114건(12.2%), 2009년 최초로 신고된 건수는 8,175건(87.8%)이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중복학대는 줄어들고 정서학대와 성학대, 방임이 늘어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

아동학대를 2009년 기준으로 할 때, 두가지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복합학대(39.4%)와 방임(35.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

(단위: 명, %)

	347(11.9)	364(9.4)	423(9.1)	439(8.4)	473(8.5)	422(7.6)	338(5.9)
	207(7.1)	350(9.0)	512(11.1)	604(11.6)	589(10.6)	683(12.2)	778(13.7)
	134(4.6)	177(4.5)	206(4.4)	249(4.8)	266(4.8)	284(5.1)	274(4.8)
	965(33.0)	1,367(35.1)	1,635(35.3)	2,035(39.1)	2,107(37.7)	2,237(40.1)	2,025(35.6)
	113(3.9)	125(3.2)	147(3.2)	76(1.5)	59(1.0)	57(1.0)	32(0.6)
	1,155(39.5)	1,508(38.8)	1,710(36.9)	1,799(34.6)	2,087(37.4)	1,895(34.0)	2,238(39.4)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9년

신고위무자의 신고율은 31.8%, ~~신고위무자의 신고율은 62.8%~~ ~~신고위무자의 신고율이 더 낮았다~~(보건복지부, 2010b). 신고위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율이 97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 547건, 의료인 98건, 학원교사 1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

(:)

--	--	--	--	--	--	--	--	--	--	--	--	--	--

3,536	181	575	190	83	-	-	-	-	-	-	-	-	-	1,029
4,880	226	738	280	102	15	-	-	-	-	-	-	-	-	1,361
5,761	222	805	431	126	23	-	-	-	-	-	-	-	-	1,607
6,452	217	1,038	611	114	32	-	-	-	-	-	-	-	-	2,012
7,083	374	953	771	157	26	3	-	-	-	-	-	-	-	2,284
7,219	426	941	887	105	24	6	-	-	-	-	-	-	-	2,389
7,354	0	975	547	98	18	11	-	-	-	-	-	-	-	2,339
42,285	1,818	4,747	2,589	697	96	3	358	15	76	43	41	15	142	

: 1)

2)

2009

2009년도 12월 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정원은 23,843명(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21,65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을 비롯하여 일시보호 시설의 정원이 850명으로 높다.

< >

(:)

	23,843	21,654	120	664	380	850	175

: 1)

2) 2009.12.31

, 2010.

5. 기초보건 및 복지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통학 수단은 2009년 기준 자가용에 거주하는 학생의 수가 2,373명이며,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수는 2,305명, 자가용 2,186명 순이다.

< >

(단위 : 명)

	522	15,116	2,186	827	2,305	2,373	22,807	799	23,606

출처 : 『2009년 장애인복지조사보고서』, 2009.

가. 생존 및 발달

1) 이동빈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도시지역의 과밀집합한 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되었다. 2003년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이래, 광역시, 중소도시로 확대되어 2008년부터는 인구 제한 없이 시 지역 10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학습능력 증진, 문화 체험 활동 지원, 심리·정서발달 지원, 교사와 학부모 지원,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 교육·보육 활성화 지원하기 위함이다. 2008년 기준 전국의 517개교에서 진행 중이며, 유치원 195개소, 초등학교 187개소, 중학교 132개소, 고등학교 3개소가 이에 속한다. 총 지원을 받은 학생수는 307,400명이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28,242명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까지 실종아동 발생건수 중 초기에 발견되어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미발견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하지만 2010년 5월까지 집계된 실종아동 발생건수 중 미발견 건수가 5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실종아동전문기관, 2010).

< >

(: , %)

	3,206	3,201(99.8)	5
	4,064	4,063(100.0)	1
	2,695	2,695(100)	-
	7,064	7,057(99.9)	7
	8,602	8,596(99.9)	6
	9,470	9,469(99.9)	1
	9,240	9,207(99.6)	33
	496	480(96.7)	16

: 1) 2005 8 , 2006 ('05.12.1)

14
2) 2010 1

정부는 유아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유아 학비 지원대상을 영유아가구소득 70%까지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아 학비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만 5세 유아 중 지원받는 아동은 기존 13만 명에서 약 17만 명으로, 만 3-4세 유아는 기존 13만 명에서 약 1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전자카드제’와 전산시스템(e-유치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자카드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e).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랜 2015)」을 2010년 10월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유아휴직급여의 정률제를 도입하고, 양육부담경감을 위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등을 꾀하게 된다.

전체 보육시설인 35,550개소 중 48.8%를 차지하고 있
 보육시설'이 40.4%로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시설 1개당 아동수와 직원 1인당
 아동수의 경우 '가정보육시설' 13.6명, '보통형' 시설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 >

	35,550	1,917	1,470	14,368	935	13		
	100.0	5.4	4.1	40.4	2.6	3		
	33.1	67.6	76.4	47.0	56.4	4		0.8
	5.7	6.7	6.6	6.5	6.6			5.2

: 2009. 12. 31.

: , 「 , 2010.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
 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2008년도의 경우 청소년성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검거된 건
 수는 850건으로 2,112명이 검거되었으며, 행위자는 1,464명, 업주 등 관련자는 196
 명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0b).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
 정·시행되면서, 2006년 6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2월 다시 법을 개정·시행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
 상정보 등록·열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등록하여 관리하고, 법원에서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자
 는 5년간 열람을 제공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0b).

2009년의 전국 평균이 100%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

99.8	99.9	100.0
------	------	-------

2009

중간 산전수진을 받은 횟수는 임신부 100명 중 99.8명 정도를 나타내었다. 산전수진 등 산전관리란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임신중에는 해부학적·생리학적 변화가 있으므로 태아와 모체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출산과정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태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며,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전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승권, 2009).

< >

(: %, ,)

1.4	22.8	58.4	14.7	2.7	100.0(948)	31.24
2.6	22.3	57.0	15.5	2.6	100.0(973)	12.15

2009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만 명당 영아사망수를 나타내는 보건지표로 임신 22주 이상 또는 출생체중 500g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점차 감소되어 추세이다. 1999년에는 6.2명이었으나 2005년 4.7명, 2009년에는 3.2명으로 줄어들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 >

(:)

~	6.6	4.1	3.8	3.3	2.8	2.5	2.0	11.8	1.7
~	3.3	3.6	2.4	2.0	1.9	1.6	1.5	1.5	1.5
~	9.9	7.7	6.2	5.3	4.7	4.1	3.5	3.4	3.2

: 1)
2) 22 500g
: , ' 2009.

저체중아는 출생시의 체중이 2500g 미만인 출생아를 일컫으며, 출생시 체중은 태내성장의 지표로서 산모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며, 영아기의 사망위험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체중아발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전, 산전관리의 향상에 힘입어 저체중아 출생률이 낮아졌으나, 최근 30세 이상 고령 출산, 임신 중 흡연, 인공수정으로 인한 쌍둥이 출산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44세 유배우부인의 저체중아발생률은 2006년 3.2%에서 2009년 3.8%로 증가하였다(김승권 외, 2009).

< >

(: %,)

	3.2	91.3	5.5	100.0(953)
	3.8	91.7	4.5	100.0(975)
	2.8	87.5	9.7	100.0(72)
	4.1	93.7	2.2	100.0(367)
	2.7	92.0	5.2	100.0(401)
	6.0	88.1	6.0	100.0(134)

: , 『2009』, 2009.

선천성 이상은 출생 직후부터 선천적 기형, 감각이상, 염색체이상, 대사이상, 신경발달학적 이상 등을 지칭하며 태아사망과 영아사망 그리고 장애발생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다(김승권 외, 2009; 최정수, 2009; 황나미, 2000. 재인용). 최근 보건복지부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조사결과, 신체결함이나 기능장애를 갖고 태어난 선천성 이상아가 2005년에는 신생아 1만 명당 272.9명, 2006년에는 314.7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제적 사
 아사망을
 130% 이
 인 경우
 숙아 등의
 아동권리

다. 아동

최근
 따르면 2
 자살시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6월 기준 자살시도율은 4.0명(100명당 4.0명)이다.

< >

(:)

	6.0	6.4	4.9
	-	4.7	5.5

5, 2008

6. 사회 복지 아동보호시설

정부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08년에는 3,013개소, 2009년 6월 기준 3,274개소로 증가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b).

2) 자살시도율은 각년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

현재 지역사
 을 위한 ‘지역
 원봉사자 중심
 년 9~10월에
 동센터에 아동
 ‘아동발달지
 소득층 아동의
 편을 위한 자
 시설 생활아동
 이 대상이 된
 은 38,180명
 (보건복지부, 2010c).

정부는 ‘상
 자립준비교육
 자립준비사업
 2010년 10개
 영할 것으로
 는 교육, 2단
 복지부, 2010

청소년방과
 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 46개소에서 시
 범 실시 하였으며, 2009년에는 178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c).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특수학교의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144개소에서 2008년 149개소, 2009년 150개소로 증가하였다.

< >

(:)

	23,566	23,394	23,147	23,419	23,720	
	1,259	1,192	1,136	1,063	1,033	
	8,695	8,143	7,698	7,422	7,319	
	6,168	6,233	6,306	6,338	6,189	
	6,456	6,604	6,561	6,854	7,126	
	988	1,222	1,446	1,742	2,053	
	7.7	7.4	7.1	6.7	6.5	
	4.6	4.4	4.3	4.0	3.8	
	6.6	6.2	5.9	5.5	5.4	
	8.8	8.4	8.1	7.6	7.1	
	9.5	9.1	8.5	8.0	7.8	
	10.1	10.4	10.0	9.9	9.6	

또한 통합교육이라는 정책 방향 하에 2008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합해 4,971개이며, 학생수는 37,857명이다.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수를 장애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전체 학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지체장애, 학습장애 순으로 높다. 또한 교육 과정별로는 유치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의 수보다 월등히 적다.

< >

(: ,)

		23,606	39,380	12,006	195	75,187		
		1,470	292	348	3	2,113		
		1,257	849	1,255	24	3,385		
		15,353	21,973	3,245	30	40,601		
		3,206	3,729	2,609	115	9,659		
		860	2,035	642	-	3,537		
		983	3,256	408	-	4,647		
		92	599	632	1	1,324		
		13	5,390	1,123	-	6,526		
		16	538	1,391	-	1,945		
		356	719	353	22	1,450		
		23,606	39,380	12,006	195	75,187		
				949	720	1,727	195	3,591
				7,271	22,469	4,295	-	34,035
				6,181	9,197	2,568	-	17,946
7,143	6,994			3,146	-	17,553		
2,062	-			-	-	2,062		
23,606	39,380			12,006	195	75,187		
		150	5,324	5,704	-	11,178		
		3,637	6,924	10,905	-	21,466		
		6,612	7,128	-	257	13,997		
		2,411	5,153	681	-	8,245		

: , ' , 2009.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교 배치율보다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2003년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반학교 배치율이 54.7%에서, 2009년 68.3%, 2010년 70.0%로 증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 >

(: , %)

	24,192	29,212(2,304)	53,404
	45.3	54.7	100
	23,762	31,612(3,610)	55,374
	42.9	57.1	100
	23,449	34,913(5,110)	58,362
	40.2	59.8	100
	23,291	39,247(6,741)	62,538
	37.2	62.8	100
	22,963	42,977(7,637)	65,940
	34.8	65.2	100
	23,400	48,084(10,227)	71,484
	32.7	67.3	100
	23,801	51,386(12,006)	75,187
	31.7	68.3	100
	23,944	55,767(13,746)	79,711
	30.0	70.0	100

: , ' , 2010.

2009년,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였다. 장애학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육성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정부는 2010년 4월 현재 특수학교 198개 순회·파견학급에서 203명의 교직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감은 장애강박·집약·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c).

또한 정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만 3세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은, 2010년 1월 현재 특수학교 29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41학급, 총 70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

되어 있
 중학교·고
 로 제공
 영하
 치원 특
 있다(교

나. 다문

2008
 년에는
 되었다.
 세 이하
 5-10년
 등 다양한 문제에

< >

			(: , %)		
			2,080	1,341	44,258
			3,672	2,504	58,007
			6.33	4.32	100.00

: '2008, 2008.

교육과학기술부 따르면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
 결혼가족은 2008년... 16,778명이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1,499명...
 여명에 달한다. 향후 출생 성비의 불균형으로 여성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국제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문화 아동·청소년수도 당분간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0b).

< >

	7,998
	13,445
	18,778
	100.0

: , '20

정부는 다문화
 에, 다문화가정 학
 류사회 구성원의
 강화하고 있다. 또
 노력을 지속하고

2009년에는 다
 다문화교육연구센
 실행하였다. 또한
 육 프로그램을 개
 을 지원하여 예
 2010c).

2010년에는 다
 다문화가정 학생
 가정 학생 맞춤
 며, 다문화가정
 제공한다(교육과학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

학령기에 해당 6세에서 만 20세 이하의 탈북청소년의 수는 2009년 4월
 기준 1,478명이다. 1999년에는 19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부터는 10배 이상 증가
 하여 2005년 이 부터는 연평균 315명 정도의 학령기 탈북 청소년들이 입국하고

있다. 2005년에는 724명이었으나, 2008년 1,319명, 2009년 1,478명으로 증가하였다.

< >

(:)

	724	841	1,050	1,319	1,478	1,711

: 2009
: '2010, 2010.

탈북청소년은 입학...에서의 초기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2001년부터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09년 10월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는 7명(2009년 10월, 유치반 1명, 초등반 2명, 청소년반 5명)이다. 또한 정부에서 ‘청소년무지개센터’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학습위주의 교육보다는 심리 정서적으로 위축된 이들에게 우리사회에 잘 적응 정착할 수 있기 위해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 2010a).

정부는 2000년 2월부터 하나원 인근에 위치한 삼죽 초등학교에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에는 삼죽 초등학교가 「북한이탈학생 적응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과정 개발이 지원되었고, 2009-2011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요청 연구학교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4월 기준 16명이 삼죽 초등학교에서 초기 적응교육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a).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로서 2006년 3월에 개교하였다.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위탁교육 과정과 일반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나뉜다. 위탁교육은 하나원... 3개월 동안 중·고등학교 다... 소년을 대상으로 초기 적응교육을 실시하며 이...의 정격을 띤다. 예비학교의 운영은 2009년... 직접계획으로 전환된다. 또한 정규 중·고등학교... 중학교 60명, 고등학교 60명이며, 학급 정원이 20명씩 총 6학급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7년 2월에 76명이던 학생수는 2008년 2월 110명, 2009년 6월 기준 19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a).

< >

탈북청소
관인 한겨
탈북청소년
305명, 고

< >

2009년
며, 5명 이
을 400명,
지역의 학

라. 학교교

교육과학...에 따르면 2008년 학급...중학생
3,672,207명...1명, 고등학생 1,906,978명이다...재학생수
2004년 이...감소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2000년...증가
다 2006년 이...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1998년...감소하였
으나, 2004년 이...부터는 소폭이긴 하나 다시 증가 추세에 있고, 전문계 고등학생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일반학교 수는 5,813개교로 1980년보다 674개교가 줄어든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중학교 수는 3,071개교로 1980년보다 977개교가 늘어났다. 2008년 고등학교 수는 총 2,190개교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1980년 605개교에서 2008년 697개교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1980년 148개교에서 2008년 1,493개교로 크게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0b).

중학교 진학률과 고등학교 진학률의 경우 약 99.9%의 진학률을 보이는데, 이는 의무교육 대상 확대의 결과로 보인다.

< >

		(: %)		
		→	→	→
		99.9	99.7	79.7
		99.9	99.7	81.3
		99.9	99.7	82.1
		99.9	99.7	82.1
		99.9	99.6	82.8
		99.9	99.7	83.8
		99.9	99.6	81.9

계열별 대학 진학 비율은 2003년 기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남학생 89.8%, 여학생 90.5%,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중 남학생 63.5%, 여학생 51.5%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학률이 감소추세를 보여 2010년 남학생 기준 79.6%였으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진학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남학생 기준 71.6%의 진학률을 보였다. 또한 계열에 관계없이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남학생을 초과했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 >

(: %)

	→		→	
	89.8	90.5	63.5	51.5
	89.8	89.8	67.0	57.3
	87.8	88.8	72.7	62.0
	86.8	88.1	73.4	63.3
	86.3	88.0	75.7	66.6
	87.2	88.5	75.7	69.5
	83.7	86.3	75.8	70.8
	79.6	83.6	71.6	70.6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률의 경우, 2003년 90.2%에서 2007년 71.6%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은 높아졌다.

< >

(: %)

	90.2	17.6	57.6	90.2
	89.8	14.0	62.3	87.6
	88.3	12.1	67.6	86.3
	87.5	9.8	68.6	83.3
	87.1	6.8	71.5	71.6
	87.9	-	72.9	-
	84.9	-	73.5	-

2009년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이 21.6명으로 가장 적으며, 초등학교 27.8명, 전문계 고등학교 29.8명 순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적다.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유치원 아동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

	25.0	33.9	34.8	34.1	31.0
	24.6	32.9	35.1	33.8	30.2
	24.2	31.8	35.3	33.9	30.0
	23.7	30.9	35.3	33.7	29.9
	22.7	30.2	35.0	34.3	30.1
	21.9	29.2	34.7	35.1	30.0
	21.6	27.8	34.4	35.9	29.8

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교급별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3년 27.1명에서 2009년 19.8명으로 약 7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

(:)

	18.0	27.1	18.6	16.0	13.8
	17.9	26.2	19.0	15.8	13.4
	17.5	25.1	19.4	15.9	13.5
	17.0	24.0	19.4	15.8	13.5
	16.2	22.9	19.1	16.1	13.5
	15.5	21.3	18.8	16.4	13.4
	15.2	19.8	18.4	16.7	13.3

마. 문화적 활동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은 2009년 432개소로, 공공시설은 135개소, 민간시설은 297개소로 공공시설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 종류별로는 공공에서는 문화의 집이 101개소로, 민간은 수련원이 135개소로 가장 높은 시설 건수를 보인다.

< >

	432	150	191	47
	258	4	4	135
	690	154	195	182

2009.

6. 특별보호조치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총 범죄자 중 소년 범죄자는 133,072명이다. 총 범죄자에서 소년범죄자는 4.9%로 2007년 4.6%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가 22.2%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17세, 15세, 18세, 19세 순이었다. 2008년도 청소년 범죄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0%, 여자가 20%로 남자의 비율이 4배 정도 높다. 그러나 2006년 이 청소년 범죄의 남녀 비율은 82.8%에서 80.0%로 다소 줄어든 반면, 여자 청소년의 범죄율은 14.2%에서 19.0%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11

< >

(: , %)						
	2,441,267	2,606,718	2,384,613	2,401,537	2,548,010	2,733,185
	104,158	92,976	86,014	92,643	116,135	133,072
	4.3	3.6	3.6	3.9	4.6	4.9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가정법원이 있다. 1986년 7월부터 경찰은 소년범죄처리를 부정해 전담하게 하고 있으며, 소년법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2개소에서 시작 실시되어 2006년부터 2008년에 52개 경찰서에서 실시되었다. 2008년 소년범죄에 대해 검찰이 처리한 내역을 보면 전체범죄의 기소유예율 13.5%와 비교하면 소년범죄의 기소유예율이 32%나 높는데, 이는 소년범에게

대해서는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0b).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경우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2002년 0명에서 2008년 6명으로 증가했다.

< >

(: , %)

	10,673	0(0)	11(13.9)	68(86.1)	79(100.0)
	7,546	3(8.1)	6(16.2)	28(75.7)	37(100.0)
	7,747	0(0)	0(0)	19(100)	19(100.0)
	7,154	1(3.3)	9(30.0)	20(66.7)	30(100.0)
	7,709	2(6.3)	1(3.1)	29(90.6)	32(100.0)
	10,483	1(5.9)	1(5.9)	15(88.2)	17(100.0)
	9,705	6(31.6)	0(0)	13(68.4)	19(100.0)

또한 연령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04년 92명에서 2008년 420명으로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5세 미만 청소년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인 16세 32.4%, 15세 미만 12.9%의 순으로 환각물질 흡입사범으로 단속되었다.

<표 2-49> 연령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 , %)

	626	0(0)	16(17.4)	9(9.8)	16(17.4)	21(22.8)	30(32.6)	92(100.0)
	654	4(4.8)	11(13.3)	13(15.7)	17(20.5)	26(31.3)	12(14.5)	83(100.0)
	670	8(5.4)	57(38.5)	35(23.6)	25(16.9)	13(8.8)	10(6.8)	148(100.0)
	760	24(10.4)	44(19.1)	53(23.0)	42(18.3)	36(15.7)	31(13.5)	230(100.0)
	881	54(12.9)	140(33.3)	136(32.4)	51(12.1)	29(6.9)	10(2.4)	420(100.0)

청소년성매매 검거대상별 검거 인원은 성매매 행위자, 중매자, 손님 등 관련자의 검거수는 계속해서 줄어든 반면, 검거된 성매매 대상 청소년수는 2003년 37명에서 2008년 45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훈방조치 되던 대상청

소년을 전원 입건한 사례가 있다.

< >

(:)

	1,349	9	1,520
	1,593	12	1,968
	1,139	295	1,651
	744	149	1,596
	839	126	2,456
	850	81	2,031

제3절 주요 이

1. 장애아동의



(KBS

1

UN아동권리협약은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달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취업률과 「특수교육대상자특성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고용유무권을 분명히 보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위임과 같은 장애아동 고용유무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3)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아동권리 소식지, 창간호 6면 '아동권리 Issue & Focus', 2010.에서 발췌

가. 장애이동 고등교육 관련 법령 및 대학입학제도

장애이동의 고등교육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등교육법」 제32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각종 장애 또는 기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생정원이 별도로 정해지거나 밝히며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을 마련하였다. 이는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자격기준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장애이동의 대학입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입제도라 할 수 있다.

나.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의 실태

□ 일부대학에서만 실시되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장애이동이 자신의 적성과 실력에 맞는 다양한 대학들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 김주영(2009)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 중 405개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90개교로 전체 대학의 약 22%에 불과하다.

□ 적은 모집 정원으로 제한된 학과 선택의 폭

- 장애인특별전형은 모집 정원이 적고, 특정학과에 제한되어 있다. 특히 예체능계열보다는 사회과학계열이나 인문계열 위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의 사각지대인 중증

○ 경기도 소재 한 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장애인의 대학입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 학교마다 상이한 장애인정 범위와 단서조

인의 경우 고등교육을 향유하기엔 많은 오

이와 같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제도로
터 2009년까지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은 약 4만 5천여 명으로, 경기도 내
아동 고등교육권 보장에 적지 않은 호곡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대를 위해 특별 전형 실시의 의무화, 장애인정 범위의 표준화 및 확대, 또
증대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이 입학 기회에도 적절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의 의무화 등의 “속초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2. 아동의 건강권⁴⁾

최근 들어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⁵⁾와 소아 성인병⁶⁾이 크게 증가하면서 아동
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체중아
2002년 4.0%이던 저체중아 출생률은 2008년 7.9%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생활습관형 만성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집계한 10대 미만 성인병 환자는 2만 696명이며,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는 159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5대 성인병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은 총
15만 4109명이었을 정도로 우리 아동들의 건강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4)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아동권리 소식지', 제2호 5-6면 '아동권리 Issue & Focus', 2010.에서 발췌하
여 정리

5)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라 하며, 선천성이상은
발생 원인이나 발생 시기에 무관하게 출산 시 갖고 있는 건강 결함을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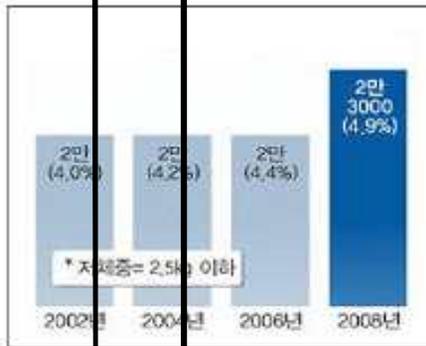
6) 비만,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증, 당뇨병 등 성인에게서만 나타나던 병들이 아동에게 발병하는 것을 일컫음.

[]

[]

(:)

(:)



:
:

: 5 (2006 ~2010 5) 10
:

. 2010

위와 같은 이동통행수단에 대한 국가의 예방·치료책은 다음과 같다.

가.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책

□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체

－ 보건복지부

○ 목적

－ 저체중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체중아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포기, 치료시기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고보조(서울은 30%, 지방 50% 보조) 서비스이다.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4인 가구 기준, 556만원)인 저체중아 등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저체중아는 최대 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이며,

100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경우~~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지원사업

○ 주체

－ 보건복지부

○ 목적

－ 신생아집중치료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적기 ~~신생아~~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병상 등을 확충하는 등 2008년부터 정부가 지원을 시작하였다.

○ 지원대상

－ 저체중아 등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한 지방 국립대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지방 국립대병원에 병상 및 보육기, 인공 환기기, 수액주입기, 광선치료기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영양 리스 사업)

○ 주체

－ 보건복지부

○ 목적

－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만 60개월 이하)로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지원내용

-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한다.

2. 아동 성인병 지원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시행
 - 2010년 1월 1일
- 목적 및 주요 내용
 -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만이나 질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식품의 소비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 영양개선사업(보건소)

- 주체
 - 보건복지부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 예산
 -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0%에 한하여 시도에 지원하게 된다.
- 목적
 - 지역사회 보건소 등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서구화된 식생활, 가공식품의 증가 등 잘못된 식생활과 영양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 영양상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수명의 연장 등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지원대상

- 세부사업별로 다르나 대개는 ~~지역주민이 대상이 된다~~

○ 지원내용

- 영양상담
 - 체성분 측정, 비만 관련 상담
- 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 임신기 영양 상담
- 월령별 이유식 상담
- 영양관련 홍보사업
- 아동 영양체험실 운영 및 영양관련 교육, 무료 요리

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
~~은 한계점을 극복해 왔다.~~

첫째,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들의 치료실 부족 현상이
요가 대폭 증가 2차 병원들은 출산과 ~~신생아~~ ~~기~~ ~~등을~~ ~~점~~
기관도 예산문제 등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대폭 늘리지 못
가 2008년부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2010년 NICU 지
개 기관(병상 24개) 증가하는 데 ~~크~~ ~~쳤다~~. 결국 민간병원의 병
증가 수보다 더 커서 NICU 확대 사업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둘째,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인지부족을 들 수
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
지부족으로 인해 매우 낮은 비율을 ~~받~~ ~~고~~ ~~있~~ ~~다~~ 지원사업을 인
인의 23%였으며, 이들 중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은 ~~적~~ ~~을~~ ~~상~~ ~~도~~ ~~로~~ ~~의~~
료비지원 제도에 관한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 성인병의 조기발견 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아~~ ~~동~~ ~~성~~ ~~인~~ ~~병~~ ~~이~~ ~~빠~~ ~~른~~ ~~속~~ ~~도~~ ~~로~~ ~~증~~ ~~가~~ ~~하~~ ~~고~~ ~~있~~ ~~다~~.

이렇듯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NICU의 지속적 확대가 요구되며, 의
료비지원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성인

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며, 정기검진항목에서 성인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진 항목 등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4절 주요 지표로 본 한류아동의 권리수준

1. 아동권리의 지속적 향상 지표

가. 아동의 안전·건강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개 조항 가운데 아동은 생명에 관한 보호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제6조). 정부는 산모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안전을 위한 법·정책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아사망률

- 당해 연도 출생아 가운데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수를 출생아 한 명당 수로 나타낸 보건지표인 영아사망률은 1989년 11.1%, 1991년 10.0%, 1993년 9.9%, 1996년 7.7%, 1999년 6.2%, 2002년 5.3%, 2005년 4.7%, 2006년 4.1%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임.
-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위험 신생아(저체중아, 조기분만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높은 생존율, 양육수요의 증가, 시설분만율의 증가 등으로 영아사망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 아동의 건강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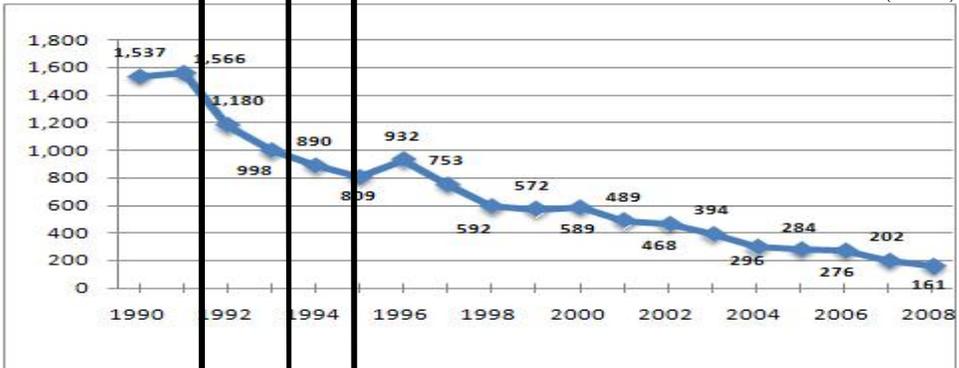
: = /
: OECD, ' ,

□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수

-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수는 ~~1990~~ 1990년 1,537명, 1995년 809명, 2000년 589명, 2005년 284명, 2008년 161명으로, 1990년과 2008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약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이 ~~1995~~ 199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강화 및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통봉사 등으로 인한 결과임.
-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수의 감소로 어린이의 안전권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



: 14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인종, 피부색 등으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아동이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제2조, 제27조).

- 또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 것이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제20조).

-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입양 및 가정위탁을 제공하고 빈곤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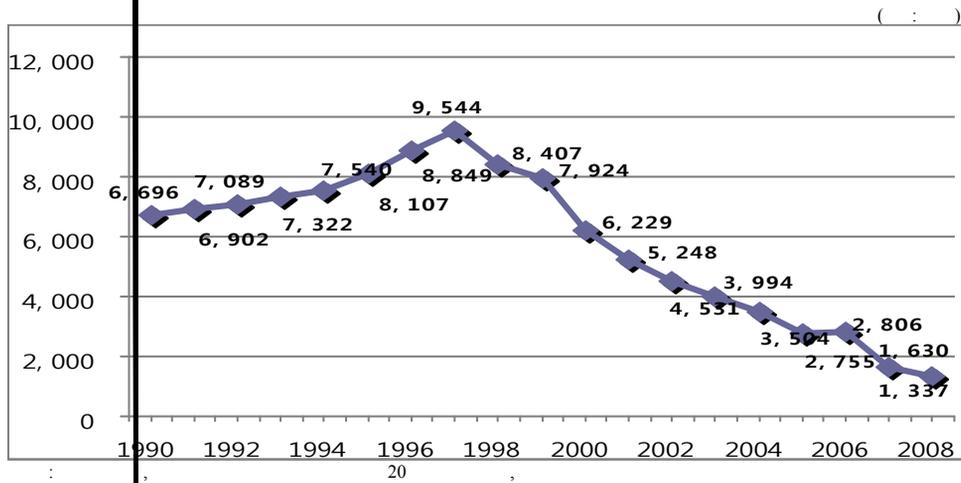
- 특히, 의료급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더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음.

□ 아동빈곤율

- 아동빈곤율은 ~~IMF강제구조조정~~을 경험한 1999년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최소한의 삶의 질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이 감소됨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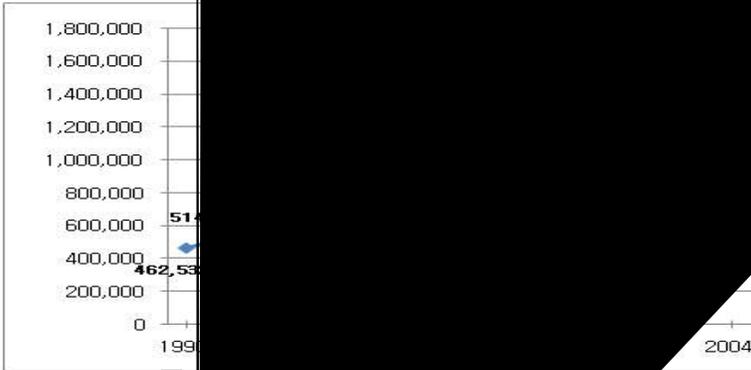
□ 보육 및 학업의 질 향상

- 유엔은 아동권리협약 제28조 '교육에의 권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함.
- 그동안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음.
- 정부는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유치원·초·중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였음.
- 육아시설 아동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등을 통해 보육 및 학업의 질이 1990년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육아시설 아동수

- 육아시설(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수는 1990년 462,532명, 1995년 729,408명, 2000년 1,231,263명, 2008년 1,673,32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즉 상당수 영유아가 기관에서 구조화된 교육과 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하여 보육수요 증가하였기 때문임.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아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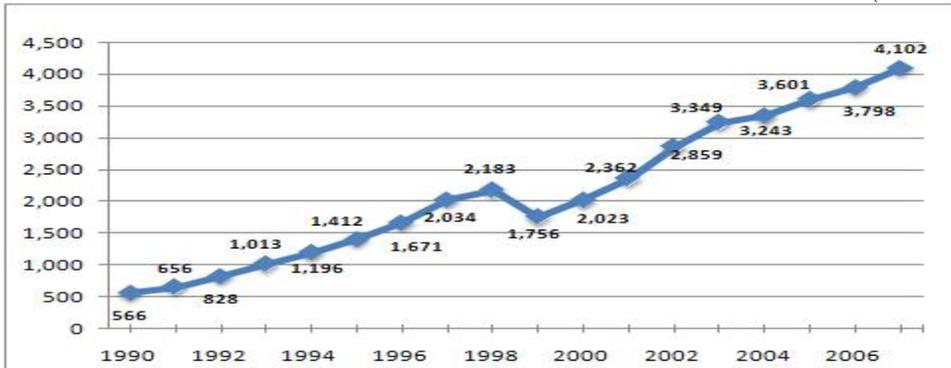


□ 초등학교 학생

-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995년 566,000원,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9년도에 하락하여 462,530원으로 감소한 후 2000년 2,023,000원으로 증가한 후 2007년 현재 4,102,000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1999년 감축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이 1950년 이후로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외환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육예산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임
- 2000년 이후 1인당 공교육비가 다시 증가함으로써 학생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

(:)



1) = (+) /

2)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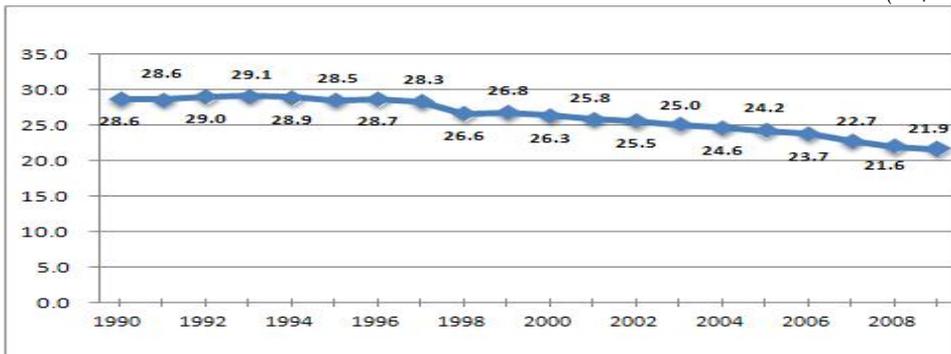
4) 2002 , 2003~2004

□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수

- 1990년도에 학급당 28.6명이었던 학생수가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도에는 21.9명으로 최근 20년간 약 7명이 줄어듦.
-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교사 1인당의 원아 수를 줄어들게 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 할 수 있게 함.

[]

(:)



1) = /

2) ,

[]

(:)



2. 이동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표

□ 아동의 학업중단 및 비행·일탈

- 유엔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제6조, 제18조), 아동이 부모로부터 적절히 보호받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표명함.
- 현재 아동의 비행 및 일탈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동의 보호 및 발달의 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아동의 학업중단, 흡연, 가출, 범죄, 자살률의 증가는 아동의 비행 및 일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을

-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을 모두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중학생의 학업중단율보다 높음.
-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01년 4.1%에서 2008년 2.9%로 2%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교육 밖으로 일탈하는 고등학생의 수가 다소 감소하였음.

[]



: 1)
$$= \left(\frac{\text{...}}{\text{...}} \right) * 1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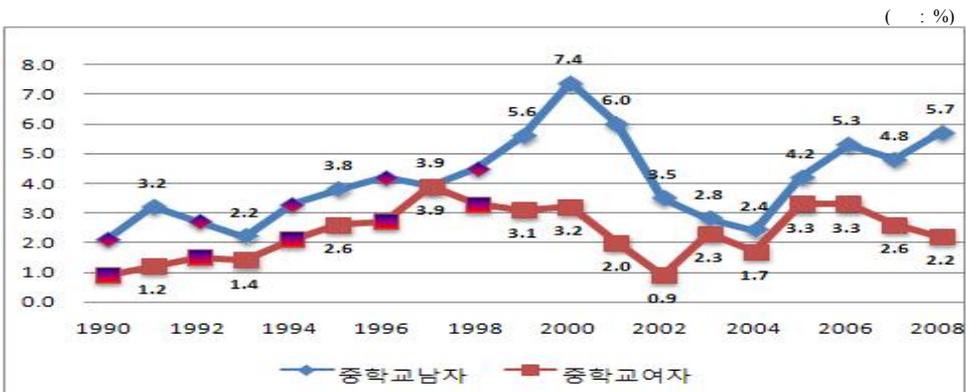
3) 2003

4) 1990, 1995, 2000

□ 청소년 흡연율

- 중학생 흡연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반기에 증가하고 있으며, 남자 고등학생은 감소추세인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증가추세로 나타남.
- 흡연이 청소년 성장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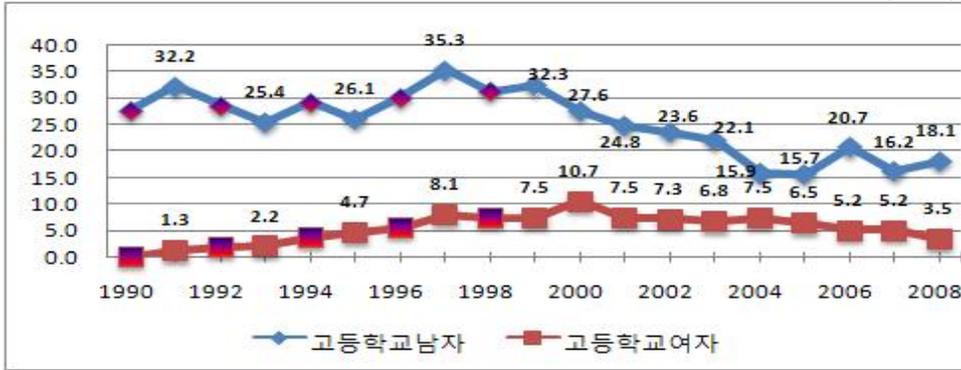
: 1) 2000

2) 2000

3)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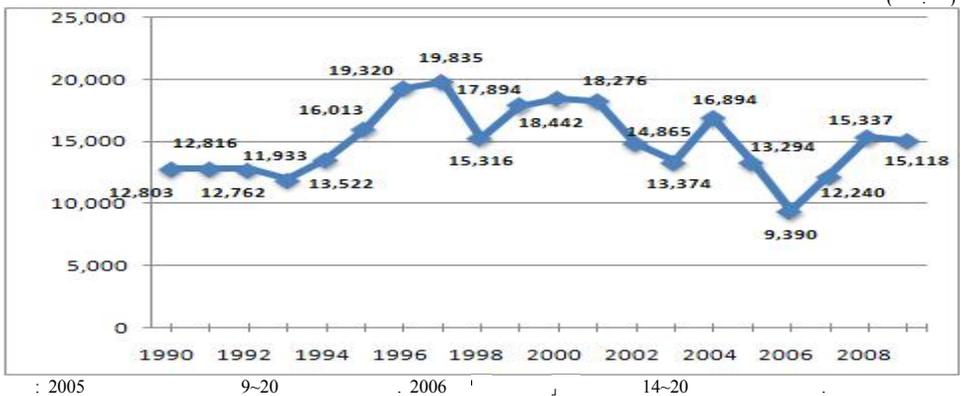
: 1) 2000 2 2000
2)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 가출청소년수

- 가출청소년 수는 1990년 12,803명, 1995년 16,013명, 2000년 18,442명, 2005년 13,294명, 2009년 현재 15,118명으로 증감을 반복함
- 청소년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가출의 감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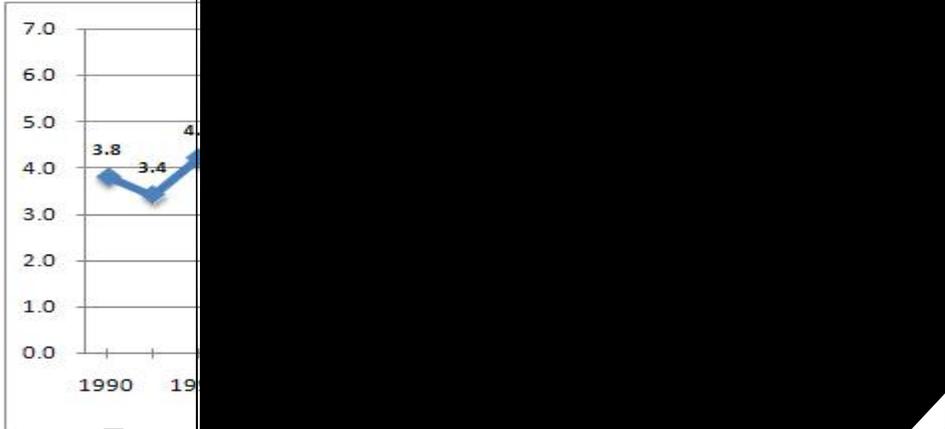


: 2005 9-20 2006 14-20

□ 소년범죄자 수

- 소년범죄자 수는 1990년 83,269명, 1995년 123,372명, 2000년 143,024명,

[]



- 1) 10-19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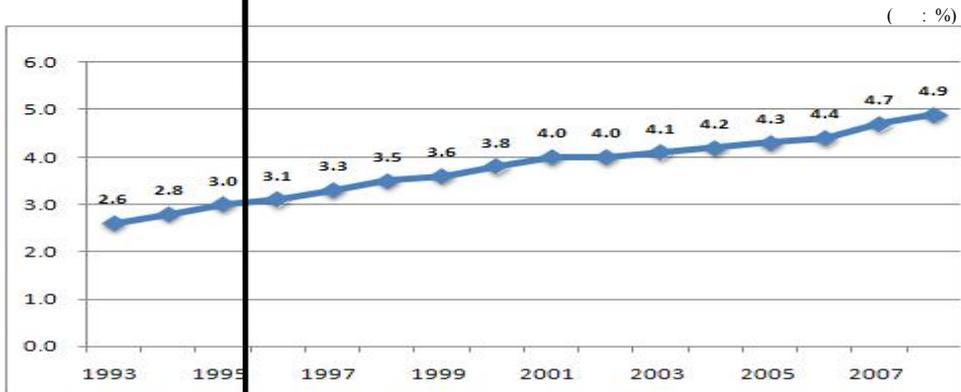
□ 아동의 건강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가 아동의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함(제6조)
- 정부의 산모보건사업의 확대와 의료기술의 발달은 영아기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영아기의 건강영역은 보충받지 못하고 있음.
-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정책 등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이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저체중아 출산

- 당해 연도 저체중아 수 대비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의 비율로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냄.
- 1995년 3.0명, 2000년 3.6명, 2005년 4.3명, 2008년 현재 4.9명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산모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미숙아, 저체중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저체중아 출산은 아동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의미하며, 이에 출생 전, 즉 태아를 가진 산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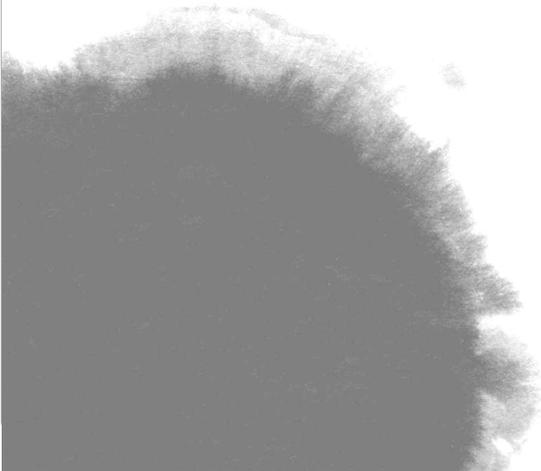


□ HIV/AIDS 아동 청소년 감염자수

- HIV/AIDS에 감염되어 신고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 현재 27명으로 나타남.
- HIV/AIDS 감염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HIV/AIDS 감염 예방 및 감염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요구됨.
 - 특히, 아동이 HIV/AIDS의 노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HIV/AIDS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HIV/AIDS 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시킬 필요가 있음.

03

이동권리옴부즈퍼는 활동



제3장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

제1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위촉 및 역할

보건복지부는 전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추천을 받아 2010년 6월 16일 제2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 20인을 위촉하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및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교육계, 법조계, 의료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인 10인과 아동총회에서 선발된 아동 및 장애, 시설, 다문화 가정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 12~17세 아동 10인으로 이루어졌다.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는 아동권리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침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

< >

			1
			1
			3
			2
			2
			2
			2
			6
			5
			5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법·정책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옴부즈퍼슨의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개선활동

○ 1단계: 옴부즈퍼슨의 권리 침해사례 발굴 활동

— 옴부즈퍼슨은 개별활동과 함께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한다.

○ 2단계: 활동보고서 제출 (분기별)

— 옴부즈퍼슨은 발굴한 권리침해 사례 내용을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 제출한다.

○ 3단계: 발굴된 사례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퍼슨 회의

— 옴부즈퍼슨 내부회의를 통해 활동보고서에 제시된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함께 공유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4단계: 개선방안 도출 및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옴부즈퍼슨이 제안한 개선 방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관련 공무원, 현장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현실화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5단계: 법정책 등 제도 개선(안) 복지부 아동권리과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3·4단계를 통해 도출된 제정안 등 아동권리과에 제출한다.

□ 이슈별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 아동권리 관련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 ombudsman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2010년에는 ‘아동친권관련 T/F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제2절 아동권리ombudsman의 주요 활동

1. 성인 ombudsman

가. 제1차 회의

성인 ombudsman 제1차 회의가 2010년 7월 30일(금)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아동권리ombudsman(성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를 통해 아동권리ombudsman의 역할 및 향후 활동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아동권리 이슈 및 제3·4차 국가보고서와 관련하여 ombudsman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ombudsman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추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나. 제2차 회의

2010년 9월 28일(화) 성인 옴부즈퍼슨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성인 옴부즈퍼슨들이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으며, 2011년 하반기에 있을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의 주제 중 하나인, ‘성폭력 피해 어린이 진술 관련 효율적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친권 관련 TF 팀’을 구성하여 친권으로 인해 아동의 침해당하는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2. 아동 옴부즈퍼슨

가. 제1차 회의

아동 옴부즈퍼슨 제1차 회의가 2010년 7월 26일(월) 아동 옴부즈퍼슨과, 아동 옴부즈퍼슨의 보호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아동 옴부즈퍼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 눈높이에 맞춘 아동권리 교육도 실시되었는데, 세부 교육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옴부즈퍼슨 제도, 옴부즈퍼슨의 역할 등이다. 이를 통하여 아동 옴부즈퍼슨과 보호자의 아동권리 인식도를 향상시키고 활발한 옴부즈퍼슨 활동을 가능케 하고자 함이다.

나.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워크숍

2010년 8월 12~13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인터라켄 펜션에서 실시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아동) 워크숍에서 옴부즈퍼슨 아동 8인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옴부즈퍼슨 활동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주변 아동안전에 대한 옴부즈퍼슨(아동)의 모니터링 방안

□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요소

○ 먹거리

- 최근 문구점과 슈퍼마켓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탕, 쿠키, 아이스크림 등이 많은 학생들이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불량식품은 일괄적으로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유통과정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또한 아동들의 기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탕이나 젤리가 기도를 막아 질식사할 수 있어, 사탕이나 젤리가 신체적 건강이 취약한 아동에게 위협하다.

○ 교통

- 학교의 위치가 보통 아파트 단지 안이나 차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특히,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범죄

- 학교주변에 일어나는 학생간의 폭력,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아동성범죄 등의 범죄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

□ 모니터링 방안

○ 먹거리

- 불량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부기관인 식품관리위원회에 불량식품의 위험성을 더욱 강조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제조업체가 성분 표시, 제조지, 제조일자 등을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아동 식품 관련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식품에 안전마크 등을 해당 식품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먹거리 안전 그린푸드 존(Green food zone) 확대
 - 아동이 인체에 유해한 재료를 첨가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그린푸드

존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 주변 500m반경 이내에 먹거리 안전 그린푸드 존을 지정하여 학교 주변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분식집이나 식품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교통

- 녹색어머니 활동 활성화

- 녹색어머니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안전 관련 홍보으로 자녀들의 안전은 어머니가 가장 잘 알고있음을 알리는 홍보패널을 전개한다. 녹색어머니 활동은 등하교길의 횡단보도나 무단횡단이나 운전자의 과속운전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스쿨 존에 대한 홍보 강화

-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운전자의 편의성에 더 중점을 두는 현실에서 학교 주변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스쿨 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학교주변 스쿨 존에 '스쿨 존 제한속도' 관련 표지판 부착을 확대하고, 네비게이션 업체에 스쿨 존 제한속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건의하며, 초등학교 주변에만 국한되는 스쿨 존의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범죄

- 우범장소 조사

- 아동이 직접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일부 다세대아파트 등)를 선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알리고, 주변 아파트 등의 경비원과도 공유하여 아동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아동보호구역의 확보

- 아동을 아동 성범죄 및 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학교 근거리뿐 아니라 주변부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학교주변 아동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동 ombudsman 역할

○ :	,
○ :	
○ :	



○	
---	--



○ :	,
○ :	
○ :	,

2) ombudsman(아동)의 효율적인 이동권리모니터링 방안

□ ombudsman(아동)의 이동권리모니터링 활동을 제약하는 장애요인

- 시간과 장소의 제약
 - 아동 ombudsman은 학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므로 활동시간에 대한 제약이 크다. 또한 아동 ombudsman의 거주지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다.
- ombudsman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부족
 - ombudsman에 위촉되었지만 아직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모니터링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 개인활동에 대한 부담감
 - 아동 이동 수 있다.
- 시간과 장소의 제약
 - 아동 ombudsman 1기의 온라인등 밀착 추적추적으로 운영하면서, 2기도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즉 온라인카페는 1기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ombuds퍼슨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동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공유와 활동 가능하기 때문이다.

-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글을 올린 아동 ombuds퍼슨 외의 9명의 ombuds퍼슨 아동이 보고서에 대해 코멘트를 달도록 한다.

○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부재

- 교육

- 아동권리 전문가에게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주제는 전문가가 직접 선정할 수도 있고, 아동 ombuds퍼슨이 관심 있는 모니터링 주제에 관한 것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체험학습

-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모의 역할극이나, 테마별 모니터링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분식집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떠한 절차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다.

○ 개인활동에 대한 부담감

- 가까운 지역의 아동 ombuds퍼슨끼리 팀(2-3명 정도)을 이루거나 필요시 성인 ombuds퍼슨이나 모니터링센터 연구진과 함께 모니터링 활동을 하도록 하며, 혼자서 모든 모니터링 활동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성인 ombuds퍼슨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온라인 활동의 활성화도 개인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온라인 카페 개설

- 온라인 카페 개설은 시간 공간 제약이 많은 아동 ombuds퍼슨의 모니터링

활동에 ~~유~~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온라인 카페는 ~~이동~~ ~~옴부즈~~ ~~퍼슨~~ 1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현 ~~이동~~ ~~옴부즈~~ ~~퍼슨~~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교육

-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막연했던 ~~이동~~ ~~옴부즈~~ ~~퍼슨~~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모니터링 활동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옴부즈~~ ~~퍼슨~~들 들어, 테마별 모의 체험학습은 ~~각각의~~ ~~상황과~~ ~~상황에~~ ~~알맞은~~ ~~모니터링~~ 방법을 함께 해봄으로써 활동에 대해 자신감이 높일 수 있다.

○ 팀별 활동

- 팀별 활동은 ~~활동~~ ~~리더~~ ~~가~~ ~~다른~~ ~~팀~~ ~~을~~ ~~대~~ ~~하~~ ~~고~~ ~~이동~~ ~~옴부즈~~ ~~퍼슨~~의 의견을 개선하거나 설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아동 옴부즈퍼슨 및 부모 대상 권리 교육

□ 교육 개요

- 일시 : 2010.12.27(월) 10:00~18:00
- 장소 :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 교육 1 : 아동권리에 대한 전반적 이해
 - 교육목적
 - 아동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감수성 향상
 - 주요 내용
 - 인권 전반에 관한 지식 및 정보 교환
 - 참여적 활동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 감수성 키우기
 - 사례 나누기

< >

	○ - ~ - ~ - ~
	○ - () 1 - 5 - ,
	○ - 4-3-1 - 4 , - ,
	○ - - ,

○ 교육 2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 교육목적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정,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가해와 피해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키움
- 성적자기결정권의 주인이자 UN아동권리협약 옴부즈퍼슨으로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을 탐색

－ 교육 방법

- 토론 / 강의 / 시청각 자료

－ 주요 내용

- 성에 관한 지식 및 정보 교환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 >

	○ ‘ ’ ○
	○ ‘What is sexuality’ ○ ○ - 3
	○ ‘ ’ ○ ○ ‘ ’ ○
	○ ‘ ’ ○ ‘ ’



제3 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활동보고서

1. 성인 옴부즈퍼슨의 활동보고서

□ 성인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활동보고서는 <표 3-5>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모두 10

80% 이상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모르고 있는 등 아동 교육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아동분야 예산에 대한 개별적인 책자와 자료가 발간되지 않음
-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가 부재함
 - 장관급이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없음
- 이런 문제점들에 착안하여 유니세프는 최근 35개 국가와 아동권리협약 일반 이행조치에 대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Promises? Progres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on the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보고서 발간하였음.
 - 또한 각 나라의 아동권리현황 요약분석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자료들을 각국 아동권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인종·문화·언어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임.

□ 조치방법

- 개선 권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나. 주제 2. 친권자동부활에 관한 문제점

□ 권리침해현황

- 현행법은 단독친권과 공동친권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자동적으로 생존 친권이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이 부활되는지 아니면 의견이 개시되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다만, 대법원 판례와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생존친의 친권이 자동부활 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
 - 이러한 견해는 생존친이 친권자로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나 친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았고, 자녀의 복리가 심

각하게

○ 이에 이동

부의안변

같은 민변

- 첫째,

정법원

- 둘째,

대한 사

- 셋째,

에 의하

○ 이러한 기

래한다

활이 적합

활이 아

동권리의

○ 특히, 개

수 있음.

- 첫째,

수 있음

- 둘째,

족관계

- 셋째,

- 넷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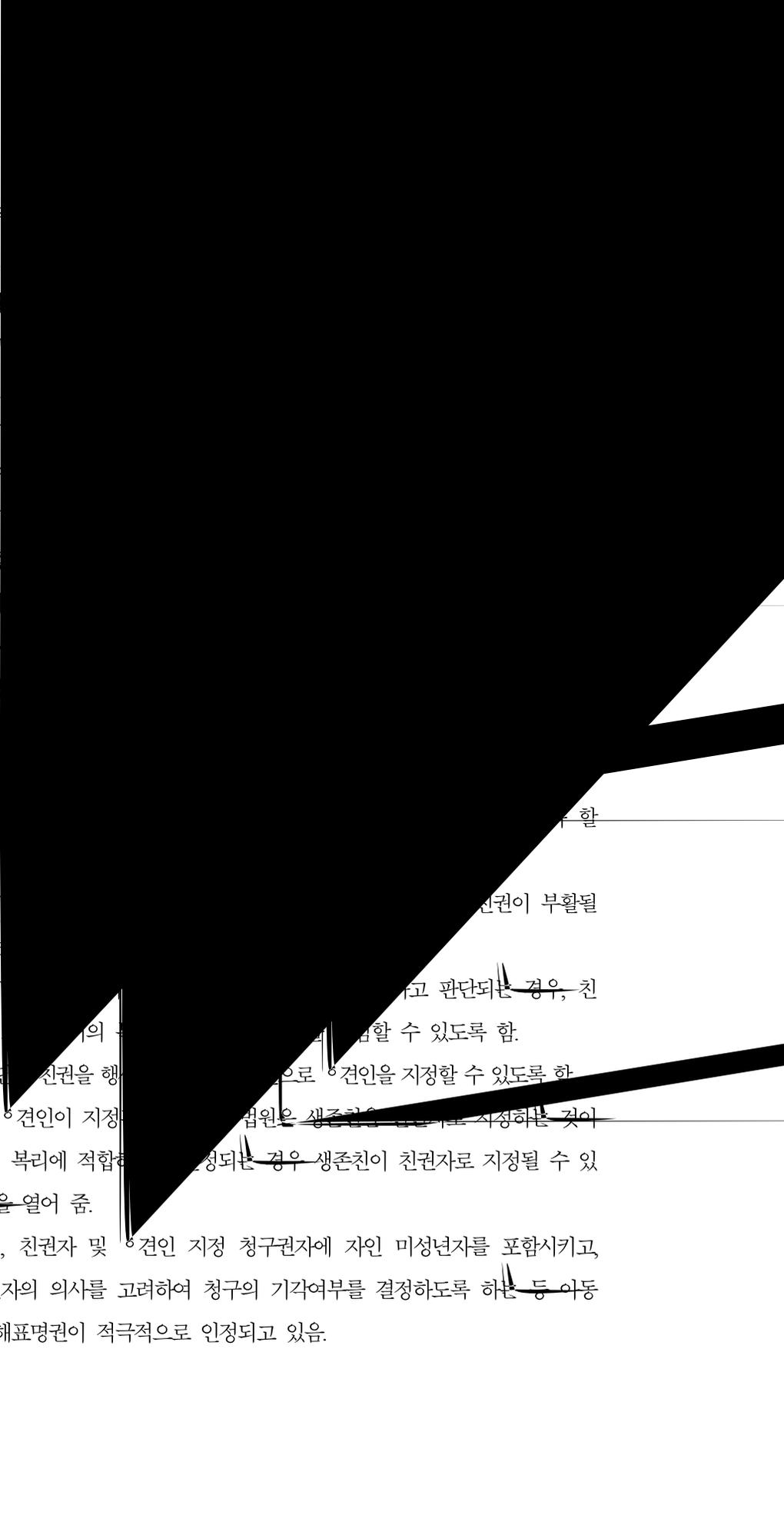
자녀의 복리에 적합

는 길을 열어 줌.

- 다섯째,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청구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아동

의 견해표명권이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개선

○

○

있는데
 선임할 수 있
 견인이 선임된
 견인 감독 등 사
 - 그러므로 법정대리우국활

침해 받게 됨.

□ 개선방안

- 이에 친권자가 장기간 연락두절 된 경우 친권을 정지시키고 위탁가정에 있는 동안 위탁부모가 특정사무에 관하여 친권자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조치방법

- 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라. 주제 4. 성폭력 피해 어린이 진술 관련 효율적 대책마련

□ 권리침해현황

-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적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 사건의 약 10% 정도만 받고되는 것으로 추정됨.
-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의 68%가 심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명확한 진술을 얻기 위해 잘 갖추어진 전문가가 필요함.
- 하지만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 어린이 진술 관련 전문가와 전문적 조사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하에 윈스톱 센터의 자칭 전문가들이 피해아동 진술을 받고 있음.
- 이들은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심도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자로, 피해아동의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무분별하게 양성된 이들은 성폭력 피해아동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 의료전문가, 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가 없는 상태임.
- 이들 전문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어

- 린이·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어린이
- 하지만 실제 진술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여성부에서 양성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주체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됨.
 - 따라서 적어도 진술관련 전문가 양성과 매뉴얼 개발은 수사기관 주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여성가족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을 못한 상태임.
 - 2008년부터 여성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경찰청이 협조하여 서울 지역 원스톱 센터에 내원하는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칭 진술분석 전문가를 내세워 이들이 진술과정에 투입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자칭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대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다 여성부에게 진술 이들의 진술을 바로 맡게 한 것은 명백히 수사기관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

- 이러한 성폭력피해 어린이 진술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함.
 - 첫째, 성폭력 피해 어린이 진술을 위한 제대로 된 조사 매뉴얼 마련 및 진술 전문가 양성 등을 수사기관 주도하에 조속히 마련하여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계도를 마련해야 함.
 - 둘째, 진술 전문가들의 지속적 질 관리와 진술이 아주 어려운 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가 수퍼비전 시스템(전문가 자문기구) 수사기관에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진술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은 피해 어린이 경우 현재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해비라기 이동 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와 진술과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마련해야 함.

- 넷째,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범죄 피해자 구제기금 중 일부를 성폭력 피해 어린이·청소년 진술조사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 승인이 필요함.

□ 조치방법

- 감사요구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마. 주제 5.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학교선택권 보장

□ 권리침해현황

- 현재 전국에 230여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그 곳에서 18,00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음.
-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대부분 아동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취학하고,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해서 취학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에 있는 한 아동양육시설(서울소년의집)은 수백명 아동이 한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음.
 - 또한 부산 소재 시설(소년의 집, 송도가정)에서 생활하고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에 취학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전원 같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임).
- 초등학교의 경우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중학생은 '취학할 당해 교육급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교육급 없이 아동양육시설의 모든 아동이 같은 학교에 취학하는 것'은 합법적임. 또한 고등학생은 일반계와 전문계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도 위법임.
 - 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즉,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출신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육청에서 중학교

비정원서를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그 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 중학교입학
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중학교에 있어서는 그 출신 초등학
교의 장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
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의 이행을 촉구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추첨제에 의해서 중학교에 배치되고 고등학교는 본인의 희
망에 따라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출신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교에 진학하면 국가
가 연간 최고 45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모든 아동을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진로지도를 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보기 어렵
다. ~~이런 것을 설득하고, 모든 아동이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아동의
학습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는~~ ~~기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조치방법

- 시정 권고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바. 주제 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차별적 지원 개선 및 통계자
료 보완**

□ 권리침해현황

- 그룹홈을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국민기초생활보
자료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그룹홈)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장기시설아동들과 차별
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보

장시설에 속하지 않은 공동생활가정의 이동을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함임.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보호되는 아동에 대한 통계수치 부족으로 국가 보호아동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에 따른 국가정책수립에 걸림돌이 됨.

□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안내용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보장시설 범주로 포함하는 제도개선 필요하며, 국가보호 하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처우 및 아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제안내용의 예상 문제점은 중앙정부 차원 그룹홈 범주에 들어있던 공동시설을 보장시설 범주로 포함시킬 경우,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이양됨으로써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제안내용의 내용이 실현될 경우, 공동생활가정에서, 특히 일시보호 형태로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확보하여 양육환경 개선이 가능함.

□ 조치방법

- 시정권고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사. 주제 7.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

□ 권리침해현황

- 학교주변 환경정화구역에 게임장, 유흥주점, 모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난립이 심각한 상태임.
 - 2009년 11월 30일 강원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일선학교 주변 200m까지 설정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6월말을 기준으로

543곳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성업 중임.

- 이 가운데 유흥단란주점이 526곳으로 가장 많았고,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이 400곳, 노래연습장 250곳 등으로 조사됨.

○ 뿐만 아니라 11개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를 통하여 허가된 유해업소의 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교육청 및 11개 지역 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허가 수는 2007년 594개에 불과했으나, 2008년도에 780개를 허가해 전년도에 비해 31%나 증가함. 유해업소의 종류별로 보면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은 2008년도에 비해 6.3%, 18.8%가 각각 증가했고, 양주장은 55.8%, 노래방은 36% 증가해 학교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의 종류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들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학교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고려할 때,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러한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경찰청의 청소년 유해환경 상시점검 및 상습 악질업소 분기별·테마별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임.

- 특히, 청소년 유해시설이 한 번만 적발 되더라도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장이 폐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담장 등 경계선에서 200m 반경은 '학교 정화위생 정화구역'으로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나 시설 설치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절대 정화구역의 한계선인 반경 50m 이내만 아니면, 많은 지역이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이 허가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학교정화구역 내 무허가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섰을 때 법률에 명시된 대로 형사 처분과 함께 영업장이 폐쇄되어야 함.

- 둘째, 학교정화구역 내 유흥업소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와 더불어 뚜렷한 학교정화구역의 관리방안 신설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및 교육당국의 명확한 교육행정방침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조처방법

- 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공문 송부

아. 주제 8. 부모의 이혼과정에서의 아동진술권 보장

□ 권리침해현황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과 민법 제837조 2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아동의 권리 즉, 직접 아동이 부모에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 2와 제100조에서 아동의 친권자지정,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규정된 내용은 모두 개정된 것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이혼문제에 아동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여 아동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이혼에 관한 법적절차에 직접 참여시키고 아동이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한 물적 및 인적 시설이 법원 내에 부재한 상황임.

□ 개선방안

-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아동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녀들에 대한 심리사담,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음(서울가정법원 “자녀솔루션모임”).
 -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3차에 걸쳐서 아동들과 법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아동의 문제를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인식에서 시작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 위하여 부모들의 반발이 다소 있음.

- 제내내용이 잘 실행될 경우, 가정에서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함으로써, 법원이 사소한 분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서로의 이혼문제에만 골몰하여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아동의 문제에 관하여 귀를 기울이게 될 수 있음. 또한 아동 자신도 이혼문제가 어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 기대됨.

□ 조치방법

- 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자. 주제 9. 장애아동 가정의 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당국의 방과 후 안전대책 요청

□ 권리침해현황

- 공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주민 9명이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2010년 7월 22일 각 언론에 보도됨.
 - 특히, 피해아동 K양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 K양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 및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 하나 없이 2년 동안 이웃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왔음.

- 이 사건 이 피해학생은 슬더기 지자체, 지역주민의 사회적 방임으로 있음.
- 이 지자체의 장애인가족에 대한 있었던 사건으로서 부모가 장애 등으로 가족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매우 허술함과 교육당국의 방과 안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

□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첫째, 지자체와 중앙정부 교육당국의 방과 안전대책
 - 둘째,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체계와 아울러 교육당국의 방과 안전대책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가족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제안함.
- 그러나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체계와 교육당국의 방과 안전대책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조달이 쉽지 않으며, 특별법 제정에 장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장애요인이 존재함.
- 이러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제안 내용이 잘 시행될 경우,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따른 본 협약의 제13조와 제2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아동,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조항의 실천을 기할 수 있음. 또한 가족지원은 단순히 가족에게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가족들 스스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줌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고취됨을 기대할 수 있음.

□ 조치방법

- 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차. 주제 10. 학교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 권리침해현황

○ 초중고교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는 아동들이 여전히 있음(조선일보, 잠자는 학교 시리즈, 2010.08.).

— 초중고교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교실과 복도 등 학교 안의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야 함. 외국의 경우 모든 아동청소년은 교실과 복도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발달 및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성인과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개선방안

○ 이에 '이름으로 부르기' 운동 전개와 같이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제안함.

□ 조치방법

○ 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2. 아동 ombuds퍼슨의 활동보고서

□ 아동 ombuds퍼슨의 활동보고서(표 3-6)에 제시되는 비의 같이 모두 8건이 채택되었음

○ 활동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객별(주: 아동, 객: 아동권리과)이 제시함

< >

가. 주제 1.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에

□ 권리침해현황

○ 관련 법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 영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며,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의 차별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특히, 장애인부모의 아동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 아동보육시설에서 아동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미흡한 실정

○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보육시설에서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규제가 요구됨.

□ 개선방안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에 신고 접수 ○ 인권위원회에 이관하여 이를 조사하거나, 보육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를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장애인부모의 자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다른

것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야 함.

- 이와 같은 개인대상 유급을 경우,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불편신고 접수가 현실화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음.

□ 조치방법

- 개선 건의
- 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나. 주제 2.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린푸드존의 실정

□ 권리침해현황

- ‘그린푸드 존’이라는 말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그린푸드 존’ 우수 지정업소 리모델링 시 1억원 한도 내 연 1% 용자금 지원 등으로 업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적어 참여 활성화가 필요함.

□ 개선방안

- 그린푸드 존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
- 고열량 저영양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연수에 관련 규정을 강화함.
 - 이와 같은 개인 대상 유급이 있을 경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량의 감소효과로 아동들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을 것임.

□ 조치방법

- 시정권고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다. 주제 3. 장애아동의 학교 내 따돌림

□ 권리침해현황

- 관련 법조항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조
- 보통 3~4명 정도의 장애인학생과 함께 한 활동을 함 그러나 장애인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학교에서 장애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아동은 같은 사회적 상황과 환경에 처하고 수용하여야 한다는 교육내용 등으로 장애학생 관련 인권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 장애아동의 차별 현상이 개선되는 바뀔 것임.

□ 조치방법

- 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송부

라. 주제 4. 영유아의 해외입양 지양

□ 권리침해현황

-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1·2항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해외입양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의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음에도 여전히,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입양현실은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회 상황임. 아동은 출생권~~ ~~의해 양육되고 성장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입양아동의 현실임.

□ 개선방안

- 부모의 국가에서 성장할 권리를 부여해야 함. 즉, 당사국은 ~~이동권~~ ~~한 보호와 배려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도록 해야 하며, 입법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아동이 부모의 국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국내입양의 경우, 과거의 해외입양아들의 자기 정체성 혼란(피부색, 언어, 외모 등으로 인한) 방지와 소속감 및 친밀감을 부여하기 쉬울 것임.
 - ~~고이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음.

□ 조치방법

- 시정권고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공문 송부

마. 주제 5. 학교폭력 및 따돌림

□ 권리침해현황

-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친구를 따돌리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무시함.

□ 개선방안

-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를~~ 선생님과 친구들이 보호해주며, 아동 한 사람 한사람이 소중하다 ~~는~~ ~~교육을~~ 실시함.
 -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동들에게 심겨져,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동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소외당하는 ~~아동~~ ~~이~~ 줄어들 것임.

□ 조치방법

- 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공문 송부

바. 주제 6. 청소년 연예인 활동과 인권

□ 권리침해현황

- 관련 법조항
 - UN아동권리협약 제32조,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협약 등의 연소자 근로권 보호 규정
- 드라마 출연 시, 계약서 없는 활동과 비합리적인 출연료 책정이 됨.
 - 주연과 조연이 아닐 경우, 드라마 제작사와 기획사 사이에 구두로만 계약을 맺음.
- 아동이 출연할 경우, 이동비도 되지 않는 금액을 출연료로 지불하면서, ‘주연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함. 교통비와 이동이 촬영 기간 동안의 시간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

□ 개선방안

- 주연 또는 조연이 아닌 아동 출연자들에 대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해야 함.
 - 아동을 계약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연예기획사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음.
- 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 기준 법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받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확산될 수 있음.
- 연예기획사의 아동연예인 중개수수료의 합리적인 기준 제시안이 필요함.
- 합리적인 출연료 산정의 공정거래안 제시가 필요함.
 - 아동에 대한 합리적인 출연료 책정으로 아동의 개인 부담 비용 감소될 수 있음.
- 연예기획사의 역할 중 중개 기획사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규정 필요함.

□ 조치방법

- 시정권고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공문 송부

사. 주제 7.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 권리침해현황

- 아동들이 많이 통행하는 학교 주택가 근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으며, 신호등이 있어도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들이 많음.
- 학교폭력, 아파트 단지, 주택가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아동 대상 범죄가 발생함.

□ 개선방안

- 녹색어머니 등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학교 등 아동들이 자주 통행하는 지역과 사고다발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 근처 등에 신호위반,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해야 함.
 - 신호지킴이 활동
- 학교 내 인적이 드문 장소 위주로 CCTV를 설치해야 함.
- 아동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인 ‘블루 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확대가 필요함.
 - 아동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 모두에게 심각성을 일깨워 줄 수 있으며, 아동들 또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임.
 - 효과적인 음부즈퍼슨의 활동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인력이 필요성이 부각되어 좀 더 많은 지역과 학교에 음부즈퍼슨 제도의 확대가 기대됨.

□ 조치방법

- 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공문 송부

아. 주제 8. 예절과 배려가 없어진 아동 도 우□ 니

□ 위원구성

○ 아동권리옴부즈퍼슨

-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문교정 본부장(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 이호균 부회장(굿네이버스)

○ 외부 전문가

-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이경수 사무총장(중앙입양정보원)
- 조민선 소장(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과)

2. 「아동친권 관련 T/F팀」 운영

□ 제 1차 회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친권~~ 아동친권 관련 4가지 이슈를 원 7인에게 각 이슈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요청함.
- T/F팀 위원 7인 중 6인이 제1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제 2차 회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제1차~~ 제1차 의견서를 취합·정리한 ¹⁰, 타 T/F팀 위원 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함.
- T/F팀 위원 7인 중 6인이 제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결과보고서 작성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T/F팀~~ T/F팀 위원 6인의 제1~2차 의견서를 정리·조율 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3. 「아동친권 관련 T/F팀」 운영 결과보고서

가. 주제

1) 현황

□ 단독친

○ 현행

의

○ 다만

사망

-

□ 문제점

○ 아동

전부

사망

○ 특히

-

-

-

-

로 행사하는 경우

□ 정부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정부는 2009년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

○ 주요 내용

-

-

의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함.

909 2
909 20

② “

③ 1
777

④ 1

⑤ 3

⑥

171

954

25

- 친권자가 그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양육하도록 할 수 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친권을 기각하고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정해질 때까지 법정대리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27조의 2: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함.

2. 친권 상실

□ 입 친권자 견인 선정제도 도입

○ 1단계: 친권자 지정청구 & 8개월의 선임청구

- 단독친권자의 친권상실 이외, 생존부모, 아동의 친족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아동전문가, 단독친권자 변호사 등)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함.

- 만약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지정한다.

어있으나(제909조

○ 2

□ 임시·견인제도 도입

○ 단독친권자의 친권상실 시 임시·견인·친권자 결정

부재가 발생하므로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신청을 하여 친권상실을 인정받아
인을 지정해야 함.

- 가정법원은 친족, 친인척, 기타 이해관계인 중 이동의
합하는 자를 임시·견인으로 결정해야 함.

※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제10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
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실상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미국은 단독친권자 구청장, 주(state) 고등법원이 임시·견인을 결정함

나. 주제 2: 위

1) 현황 및

- 가정위탁이란
 - 가정위탁
 - 양육하는

□ 현황

- 친권정지
 - 아동의
 - 없음
 - 음(민
 - 시도
 - 나 행
 - 선임
 - 아동보
 - 시·도
 - 제12조

□ 문제점

- 아동의 친권자가 다른 가정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친권상
- 실의 선임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경우(제12조, 13조), 법원에
- 청구한 선임을 하지 않고, 친권의 선임에 따라 청구한 선례 또한 없음.
- 따라서 친권자가 행방불명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때 친권행사를 제한·상실하
- 거나, 친권을 선임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친권자가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 해외방학, 해외여행 시 여권발급 등 행정
- 연락을 끊은 경우, 아동의 귀환, 사고, 전학, 해외여행 시 여권발급 등 행정

의료기관

○ 학대가해

거부할 수

2) 개선방안

□ 친권정지·상

○ 중앙가정

1항의 사

- 아동의

야 함

※ 「아동

소 및

의 장

□ 친권의 일시

○ 친권자의

경우에

원센터의

할 수 있

○ 가정법원

야 함.

- 전문평

하고

- 전문평

으로서

○ 친권정지

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함.

□ 친권

-
-
-

□ 친권

-

다. 주... 제점과 개선방안

1)

□ 현황

- ...을 제한 또는 상실시키는 법적인 규정은
-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친족이나 검사의
... 친권상실청구가 가능함.
- ... 제12조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시, 도지사, 시장,
... 구청장에 대해 친권상실이나 제한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로 넘어서서 검찰조사
... 법원으로 이송되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함.

□ 문제점

○ 법률상의 문제점

- 민법은 친권상실에 대한 친권을 제한하는 절차를 생략되어 있으므로, 친권상실 신고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진 법원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부분적인 친권제한 제도가 요구된다.
- 아동복지법은 친권제한과 같은 조항이 있으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시보호조치 등을 법원으로부터 얼마만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나, 현행 시범시행기관을 판결을 받기 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실효성의 문제

- 친족, 검사 등이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또는 성폭행으로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하도록 한 사례는 2001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9건 뿐임.
- 또한 지자체장들도 대체로 선거에 대한 의식으로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요청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임.

※ 사망사례(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폭력성향의 친권자(아버지)가 체, 정서, 방임의 중복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학대수용소를 개입하길 중, 친권자임을 내세우며 그룹홈에 보호되어 있던 아동을 강제로 퇴소시켜 정신과진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고 또다시 학대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친부에 대하여 기관 내 사례판정위원회 및 지역 내 연석회의를 통해 친권제한청구 요청을 결정하였고, 현행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장에게 친권제한 청구소송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시장은 기관의 긴급대응요청과 아동의 보호조치를 거절하였고, 결국 가정 내 보호되던 아동을 사망하였음.

○ 인식상의 문제

- 친부(또는 계부)에 의한 아동성폭행 시,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므로 형사적인 처벌만 받으면 되었지 친권까지 박탈하는 이중적

인 가혹한 처벌이라는 동정적인

○ 시설부족

- 학대피해아동 전담보호시설은

수용인원도 7명에 불과하여 피

며, 입소 아동의 연령, 학대유형

의 특성별 집중 치료 및 보호

2) 개선방안

□ 신속한 아동보호조치

○ 검사, 시법경찰관, 시도 및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법원에

○ 또한 법원은 즉각구급명령을 발

※ 캐나다의 경우, CAS(Children's

에게 아동의 격리보호를 요청하

령(최장 12개월)을 내림.

※ 미국의 Child Protective Servi

나 아동보호명령 요청을 Child

유선으로 보호명령을 구두로 요

□ 아동보호조치의 단계화

○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해자의 상담서비스 수강명령, 친권박탈명령을 결정하여야 함.

○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는 친권박탈명령 발령기간 동안 반드시 학대재발

방지 상담 수강 및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친권자는 아동양육능력 회복

의 기회를 가짐.

○ 이와 같은 추가 조치는 아동학대 친권자의 노력과 변화정도를 법원, 관계

전문가가 평가하여 아동의 가정복귀, 친권 박탈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함.

- 친권자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하고 이동을 귀가
- 가해자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
- 장기 이동을 만18세가 될 때까지
- ※ 친권자는 보호기간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동안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게 됨. 이 기간 동안에도 가해자의 인성개선이 아동보호를 일정기간 연장되고, 연장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인성개선이 없다면 친권이 박탈되고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격리 보호됨.

□ 친권정지·상실 및 의견인 선임 청구권자의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 1항의 사유를 발견할 때에 친권정지,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 상담 및 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쉼터의 장에 친권상실신고 청구권한을 부여함(제14조).

□ 학대피해아동 전담보호시설의 확충

- 학대피해아동 전담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보호시설이 아동 특성별로 확충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라. 주제 4: 친권자에 의한 학대와 성폭행 관련 친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내입양은 민법과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음. 민법에 의한 입양은 일반입양

과 친양자입양이 있음.

- 민법에 의한 일반입양은 이동의 신고만으로도 입양부모의 상호 동의하에 신고만으로 이루어짐.
- 민법에 의한 친양자입양은 이동의 신고만으로도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입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법원에 가서 입양동의를 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
 - 이러한 경우에 아동과 친부모와의 관계는 법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완전입양의 형태가 됨.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가 기재됨. 친양자입양은 이혼이후 각각의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에 새로운 배우자가 아내의 자녀들을 입양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오로지 입양특례법에서 정정부로부터 지정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양기관은 입양을 신청한 사람이 부모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해서 입양을 허락하고 있음.

□ 문제점

- 민법의 일반 입양제도와 같이 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반 입양제도는 입양부모의 입양 적합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입양허가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 입양아의 성을 양아버지 성으로 바꾸려고 하면 ‘친권 이양 동의’를 받아야 하나, 친부의 허락여부는 물론이고 친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현재 몇 번의 출두서를 보내도 연락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으로 처리해서 친양자입양을 허락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절차는 아동 입양에 많은 시간을 소요시키며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친양자입양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개선방안

□ 입양허가제 도입

- 모든 입양은 시범부의 범위를 통해 결정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입양을 허가하여야 함.
- 법원은 친권자가 동등한 관련 경우를 ‘친권자의 동의’로 해석하여 친권자의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하도록 함.
※ 법무부는 2010년 10월, 입양허가제 도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부분적인 입양허가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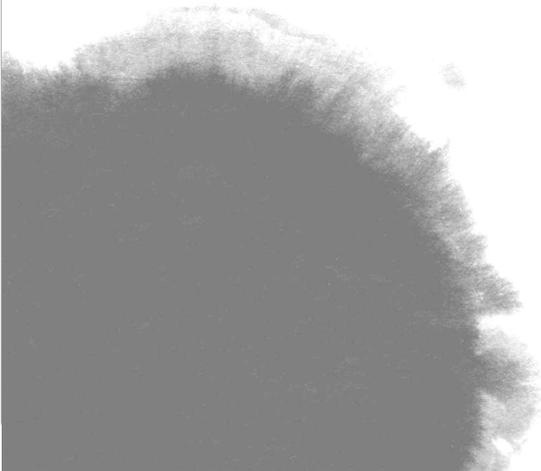
- 전면적인 입양허가제의 도입이 어렵다면, 친권자가 원하던 입양부모가 법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입양동의가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성심사에 통과한다면 입양을 허가하도록 함.
- 친생부모가 부득이하게 행방불명이 되어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이 일정기간 내 친생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사유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친권자의 친권을 박탈한다.
-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닌 부분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후, 추후 전면적인 입양허가제를 도입함.

□ 친권상실

- 친부모가 아동을 입양기관이나 시설에 맡긴 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록 찾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연락이 끊어 친권자로서 장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친권을 상실 또는 개환을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토파리국립대법원과 같음.

04

이동권리 홍보



제4장 이동권리

제1절 한국이동권리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

1. 운영 현황

한국이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2007년부터 한국의 향상과 유엔 이동권리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동권리모니터링센터”라는 홈페이지 명칭을 “한국이 08월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국이동권리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는 ‘센터소개’, ‘참여마당’, ‘자료실’로 구성되는데, 특히 자료실에는 료와 이동권리 관련 뉴스, 통계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하든 이들에게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서 우리 센터에서 진행된 이동권리 관련 행사 소식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 구성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센터소개

－ 인사말

- 한국이동권리모니터링센터 소장의 인사말과 센터의 역할 소개

－ 설립목적 및 기능

- 유엔이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일치하는 이동권리 모니터링 기구가 출범 하기 전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설립될 기구의 효율성과 실효

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를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

－ 조직 및 구성

-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는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되어 운영
-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성인 10명, 아동 10명을 위촉해 한국의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함.

○ 아동권리협약

－ 소개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인권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역사

- 1990년 아동권리협약 발표
- 2002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 채택
- 현재 전 세계 192개국이 협약에 가입

－ 협약 전문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아동권리와 관련된 단체들의 행사소식, 아동권리옴부즈퍼슨들과 진행하는 행사소식, UN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등에 정보
- 2010년에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1차 회의 공지와 워크샵, 교육 일정 등의 내용이 공지되었음.

－ 우리센터관련 뉴스

- 아동권리옴부즈퍼슨들의 대외적 활동과 아동권리옴부즈퍼슨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소식 등

○ 참여마당

－ 게시판

- 본 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센터에 건의하는 내용이나 이동권리 관련 유익한 정보 등을 올릴 수 있음.

－ 회원가입

-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2010년 1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서 홈페이지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은 총 173명으로 집계

○ 자료실

－ 법령·정책자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등과 같이 아동과 관련된 법·정책 자료를 수록함.

－ 이동권리 관련 뉴스

- 국내뿐 아니라 국외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를 신문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함.

－ 통계자료

- 관련 부처의 자료를 토대로 아동 통계자료 업데이트

2. 향후 홈페이지 운영 과제

가.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1) 이동권리침해 신고센터 신설

국내에서 이동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의 ‘이동권리침해 신고센터’를 신설하도록 한다. 신고센터의 글은 의명으로 관리되어 홈페이지 관리자와 글쓴이만 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홈페이지 개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의 홈페이지의 내용 구성과 디자인 등은 이동권리침해

든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아동권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동권리 홍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 세련된 디자인 구성
 - 홈페이지 이용자의 주 대상인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깔끔하고 쉽게 구성된 메인 페이지와 메뉴 디자인의 수정이 요구됨.
- 회원관리 기능의 차별화
 -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회원레벨별로 각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참여를 유도해야 함.

나. 홈페이지 운영 강화

아동관련 정보, 교육자료, 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접근이 용이한 참여형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2절 아동권리 소식지

1. 아동권리소식지 발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더욱 효과적인 아동권리 홍보를 위해 ‘아동권리 소식지 창간호’를 2010년 9월 발간하였으며, 2010년 12월 ‘아동권리 소식지 2호’가 발간되었다.

□ 발간 일정

- 매 분기마다 발간(2011년 3월, 6월, 9월, 12월 발간 예정)

□ 소식지의 주요 내용

- 아동권리의 국내·외 동향

- 아동권리의 동향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아동 권리 증진에 방안에 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아동권리관련 정책동향과 활동
 -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책 주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정책 제언 등
- 아동권리증진 사례
 - 아동권리 증진의 모범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권리증진 방안을 모색해 봄.
- 권리증진을 위한 특별기고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원고투고, 의견 제시 등
-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국민과 아동의 인식
 - 설문지 등을 통해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을 알아본 뒤, 그 결과를 소식지에 수록
- 아동권리협약 조항 소개
 -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다양한 권리와 조항을 쉽게 소개함.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소식
 -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권리 관련 연구와 대외 활동, 아동권리움부즈 퍼슨의 활동 내용 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소식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 소식과 국가 심의 일정 등
- 아동권리 관련 단체 소개 및 행사 소식 등
 -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아동권리 관련 단체 소개와 주요 행사들을 소개함으로써 아동권리 단체들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됨.

2. 아동권리 소식지 배포

보건복지부 외 13개 부처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관련 기관 및 단체에 아동권리 소식지를 배포하여 아동권리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다.

아동권리소식지 제2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소식지 제 2호

발행인 _ 김승권 발행일 _ 2010년 12월
주소 _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_ 02.380.8212 팩스 _ (02) 384.3084
홈페이지 _ <http://www.childrights.re.kr>

UN아동권리협약 민간 보고서와 한국 UNCRC 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1주년을 맞은 올해,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민간 보고서를 준비 중인 「한국 UNCRC NPO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11월 한 달을 바쁘게 보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9월로 예정된 한국 정부의 3·4차 통합 국가보고서 심의에 앞서 민간 보고서의 사전 심의를 내년 2월 초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간 보고서는 국가 보고서가 충분히 다루지 않는 분야 및 정보, 국가보고서가 간과하거나 미진하게 다룬 부분에 대한 보완, 지난 국가보고서(1차) 심의 이후 주요 분야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이슈 등을 비판적 측면이 아니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지적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는 원칙하에 작성하였다.

9명의 아동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협약의 8개 클러스터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집필했다. 또한 아동의 상소권 보장과 입양허가제 등 2개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협약 비준시 3개의 유보 조항을 두었으나 그 중 아동의 부모 면담권은 2008년도 민법 개정으로 철회되었음)를 비롯해, 독립적인 아동정책 조정기구의 상설화, 장기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정확하고 상세한 아동관련 기초 통계 수립, 적절한 예산 및 자원 배정 건의도 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한국 UNCRC NPO연대」는 2005년 9월 국내 17개 아동 관련 단체들이 모여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구상점을 제공하고 법적·정책적 변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회원 단체들의 과도한 고유 업무로 인해 NPO연대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재원 부족으로 NPO연대 전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NPO연대가 설립 목적을 제대로 성취했는지를 자문하면서, 이번 민간 보고서가 그 회답에 대해 신해 주리라 본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
한국 UNCRC NPO연대 회장

우리센터 소식



■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위촉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위촉

보건복지부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소장 김승권)에서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2010. 6. 16일(수)에 위촉하였다.

위촉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임기 동안(2010년 6월 ~ 2012년 12월) UN아동권리협약의 8개 클러스터 별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법·정책 등에 대해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아동권리옴부즈퍼슨 명단(20인) <<<

구분	분야	성명	현직
성인	학계·전문가	조홍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교	· 광주대학교 교수
		황옥경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법조·의료인	정승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 지방 법무법인 변호사
		신의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교수
	현장 전문가	박몽은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호균	· 굿네이버스 부회장
		전영순	· 월드비전 국내복합사업본부장
아동	고등학생	문교정	·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정상현	· 서울 하남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	장하빈	· 서울 중경고등학교 1학년
		김은주	· 서울 광양중학교 3학년
		정사라	· 경기 안산 양지중학교 2학년
		박지은	· 서울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 2학년
		서지환	· 강원 남춘천중학교 2학년
	초등학생	정태민	· 경기 군포 당정중학교 2학년
		이준혁	· 충남 석양초등학교 6학년
		전희진	· 서울 성저초등학교 5학년
황은영	· 서울 동교초등학교 5학년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보도자료(2010. 06. 15)

제3절 아동권리 거리 홍보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에 관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5월 어린이 주간과 11월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아동과 소통하며 아동권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아동권리 홍보물품을 배부 등의 활동을 하였다.

1. 어린이 주간

□ 홍보장소 및 일시

- 2010년 5월 청계광장

□ 주요 홍보 내용

- 5월 어린이주간 행사에 대국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홍보
 - － 아동 수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알아보기」 홍보물 전시 및 방문아동에게 1대1 설명 및 질의응
 - － 『아동과 권리』 홍보책자 배부
 - － 아동권리 리 렛 배부

2.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

□ 홍보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 홍보일시

- 2010년 11월

□ 주요 홍보 내용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립 배경 및 활동,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역할 등에 관한 홍보
 - － 아동권리 리 렛 등 활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 및 책자 배포
- 아동권리 홍보물 배포 및 아동 및 부모대상 질의응

제5장 한국아동의 권리증진 정책개발 : 나홀로 아동 대책

제1절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 발족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관련 법·정책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중심이 된 민·관 합동의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정보원,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협의회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





지 동 클 실무협의회 주요 활동

지 동 클 실무협의회(지동클 실무협의회)의 제1차 회의는 2010년 5월 27일 개최되어 「아동권리협약」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실무협의회 운영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토의하는 등,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의 방향

- 아동복지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아동, 즉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비저소득층 아동이 복지를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아동에 집중되어 있다. 빈곤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 저출산 문제의 해결점은 단순한 출생률 증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아닌, 아동복지서비스의 양질적인 향상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출생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있다.

□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 운영방향 및 계획

- 아동권리관련 법·정책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중심이 된 민·관 합동의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관련 기관의 서비스(프로그램) 및 권리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권리침해 사전예방과 권리증진을 위하여 상호간 자문 제공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정보센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중앙입양정보원 등 관계자

- 주요 논의 내용

- 아동방임 및 학대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정위탁제도, 아동배치과정,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내·외 입양 절차, 입양가정 지원, 입양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사자교육, 방임아동 사례관리 등에 대한 자문활동
- 실종아동의 가족지원 사업 및 실종예방 등 실종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아동권리홍보 및 교육, 아동기금 마련 및 아동위원 활동 등에 대한 논의

2. 제2차 회의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의 제2차 회의는 2010년 6월 8일 개최되었다.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의 소속기관이 담당하는 분야의 관련하여 신규정책 개발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들 중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업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회의 결과, 제3~4차 회의에서는 생계형 바인딩을 통한 나홀로 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동권리관련 기관별 논의

- 이동권리홍보: 이동권리관련 기관의 합동 홍보 제안
 - 현재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이동권리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 홍보의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2010년 11월 이동권리주간에 이동권리관련 기관의 합동 홍보를 제안함.
- 이동권리교육: 이동권리 관련 종사자 대상 이동권리교육(일반과정/심화과정)의 공동 기획 및 제작 제안
 - 이동권리교육자의 명확한 자격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비전문적 이동권리교육이 존재함. 또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동권리교육을 기획, 제작하여 권리교육프로그램의 수는 많으나 그 질은 검증되지 않음.
 - 「이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가 공동으로 이동권리교육을 기획, 제작하여 질 높은 종사자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이동권리 관련 종사자는 공통적으로 일반과정을 이수하여 generalist의 면모를 갖추도록 함. 또한 각 세부분야별로 심화과정을 제작하여 specialist의 교육구도 충족시키고자 함.
-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 보험적용
 - 심리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는 상해보험료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실종유괴예방교육의 강제화 및 교육자 자격요건 명시화
 - 「아동복지법」은 연간 10시간 이상의 실종유괴예방교육을 하도록 명시화하였지만, 강제화 되어 있지는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 및 교육자의 자격요건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방임 예방 대책마련

- 방임이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이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는 체임, 학대, 성학대, 정서적 학대와 같은 방임행위 유형이 증가하여 방임행위 유형이 다양화되고 방임행위 유형이 증가되어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함
- 특히, 생계형 방임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저소득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의 방임발생 가능성이 일반 가정보다 높음.
- 지역사회 내에서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방임이동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임사례의 위험정도에 따른 차등적 개입체계를 마련하여 방임사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해결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보호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가족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여러 부처에서 프로그램을 산발적이고 중복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3. 제3~4차 회의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의 제3차 회의는 2010년 6월 22일, 제4차 회의는 7월 7일에 개최되었으며 제3~4차 회의에서는 아동보호차원에서 바라 본 ‘나홀로 아동’의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아동권리증진 실무협의회」는 잠정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제1~4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나홀로 아동에 대한 대책(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 제출하였다.

제3절 「나홀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지난 11월 14일 차례 회의를 통해 나홀로 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물인 『나홀로 아동의 실태 및 대책방안』을 발간하였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최 종안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하였다.

1. '나홀로 아동

□ '나홀로 아동'의

- '나홀로 아동'에 관한 개념 및 데이터 전무
- 평일 방과 후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 자매가 없는 아동(보건복지부, 2009b)
 - 6~8세 108,037명, 9-11세 441,656명
 - 1시간 이상 방임되는 아동을 살펴보면, 비공인돌봄 시설이나 비민간아동보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 6-8세 아동의 1시간 이상 방임률이 중소도시·대도시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단위: %)

		66.6	77.9	75.8	78.8	75.7	63.7	75.8
		20.2	12.9	17.4	15.4	14.8	26.6	16.2
		13.3	9.2	9.2	5.8	9.5	9.7	8.0
		52.3	54.0	54.8	54.0	55.0	52.5	54.4
		20.5	21.0	24.2	22.2	22.1	32.5	23.1
		27.2	25.0	21.0	23.7	22.9	15.0	22.6

출처: 보건복지부, 『2009년 아동방임 실태조사 결과』, 2009.

□ ...을 위한 ...
 2 ... 지역사회 내 방 ... 호 서비스 ... 있는 부처를
 살펴 ...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방과 ... 교실 등을 통해 지
 역사 ... 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 과학기술부 ... 학교, 특히 초등 방
 과 ... 보육과 교육복지투자우선 ... 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보호 하고 있
 다. 여성가족부 ... 청소년 방과 ... 아카데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사업 등
 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

- 추진주체가 보건복지부인 나홀로 아동 정책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아동들에
 게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빈곤아동의 가
 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터, 2007)

- 전국에 3,474개소(2009년 기준)의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3,013	68,956	18	282	50%
	87,291	(79%)			
	3,474	76,509		457	
	97,926	(78.2%)		576	
	-	-			

-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은 크게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기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

		(, , ,)	

-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는 국가가 취약지역 아동에게 영유아기부터 집중 투자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 100여개 드림스타트센터가 설치되었다(보건복지부, 2010c).

< >

	13

: , '2010

- 드림 교육

< >

	·	
	·	
	·	()
	·	
	·	
	·	()
	·	
	·	
	·	()
	·	

201

- 방과 후 교실
 - 방과 후 보육시설은 영유아(3세) 미만 대상에서 맞벌이부부 등 이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초등학생 이동을 대상으로 한다.
 - 서비스 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특기교육,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화체... 학생들의 삶 전반에 대하여 지원한다.

- 2010... 중·고등학교(초등학교 299개, 중학교 235개, 고등학교...) 중이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 추진주체가... 부인 아동보호정책

－ 청소년... 아카데미

방과... 아카데미 사업은 지역... 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교육·문화적 격차를 보완하고, 학습능력 향상 도모, 진취적 기상 함양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하... 사업이다.

< >

	100	150	· 4~6 , 1~2 · · () (,)
	150	237.11 ()	
	178	121	
	178	121	

: <http://www.youthacademy.or.kr>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

- 목적: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지원내용: 아이돌보미 파견, 월 80시간(연 480시간 이내), 서비스 수요 유형에 따라 아동 양육 중심의 양육 돌봄 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돌보미 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5,000	4,000	1,000	50% (80%)
	5,000	1,000	4,000	51%~100% (20%)

<

	3,474	2,668	100	99.9% 233,369 ('08.06)	60 187, 132 195 517 3	178	98
	97,926 10-50 /1 29 /1	28,121 20 1	80,000	57.6%(09.6) 4 (2010) : 132,000 (6,622) : 67.8% (2009): 4	307,400 140	7,300 60 /	-
	18	1~ 3 ()	(0 ~ 12)	(6 ~ 17)		4- 2 (9 - 13)	
	3,474 () 4,310 () 7,784	1,370 () 93 ()	5-10 /	-	(06.12) 30 / 163	1 3 450	
				()			
	()		()				
	12 ~19 10 ~19 / /	6 4	-	1 2 () 19:00 / 21:00		6 () 15-22 5 12 ~19 () 9-16) 5	-
	1 300 (29) 2,946 576	50%	301	3,200 ('09)	2475	121	-
	16 1 11	12 27 :	-	32 1 5		9	-

□ 외국의 '나홀로 아동'을 위한 제도

○ 미국

- 미국은 1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방임행위로 간주함(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 각 주(State)에서는 아동보호허가기관(child care licensing agency)을 두고 아동보호센터(Child Care Center)와 FCC홈(Family Child Care Home)등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아동을 보호하고 있음.
- Child Care Centers : 비거주형 시설로 24시간 미만으로 보호서비스 제공
- Family Child Care Home : 보호서비스를 제공한 care provider)의 집에서 적은 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제공. Small Home는 3명 정도의 아동을 한 명의 보호제공자 care provider)가 담당하고, Large/Group Home은 더 많은 아동들을 한 명의 보호제공자와 보조원이 보호하고 있음.
- Family, Friend, and Neighbor care : 친인척, 친구, 이웃 등 부모와 관계가 있는 자들에 의해 아동의 집 또는 친구, 이웃의 집에서 보호서비스 제공
- Nanny/Au pair : 아동의 부모에 의해 고용된 유모가 아동의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생활하지 않는 형태로 아동을 보호하며, 유모들은 여러 가정에서 아동들을 집단으로 보호할 수 있음.
- Early Head Start(EHS) : 저소득 임산부 및 영아(3세 미만)가 있는 빈곤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센터 프로그램 또는 가정 방문 프로그램으로 아동과 가족에게 폭넓은 아동발달 서비스 제공
- Head Start : 저소득 가정의 3~5세 아동 및 가족에게 취학 전 준비프로그램 등 아동발달서비스 제공
- State-funded prekindergarten programs : 3, 4세 아동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 필요한 경험프로그램 제공

<

		10,252
		197,294
•		147,327
•		49,967
		17,743
		325,289

: (part-day preschools & nursery schools), FCC , Head Start ,
 (residential facilities)
 : 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Child Care Licensing Study,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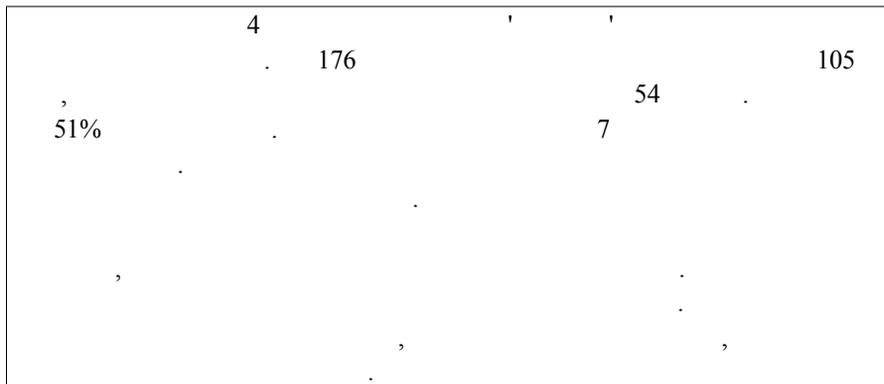
- 미국 Massachusetts에서는 방과 후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0-2 9
	2 9 -5
	,
	,
	(provider)
	()

: www.ethosgallery.com

3. 지역사회 내 나홀로 아동 사례



나홀로 이동을 위한 방안

우리 사회는 1980년대 이후 핵가족화, 홀로 지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사라져서 1시간 이상 있는 것을 방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60%이상이 1시간 이상이 홀로 지내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목인과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제시한다.

나홀로 아동에 대한 대책방안은 통합적인 접근, 주거, 문화예술 등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기 다른 제공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대발생이 심각하다.

따라서 중앙·시도·시군구 별 업무조정 및 관련 기관의 협력과 연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는 각각 시행하는 방임아동관련 사업과 방임아동 정책개발, 전문자격관리(DB구축 및 관리), 아동청소년보호관 등 업무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지원기관인 지역아동정보센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아동보육정보센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여성가족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지원협의회,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가 참여하여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다.

시도는 시도청 아동담당 공무원, 교육청, 사·도의원이 모두 협력하여 광역별 나홀로 아동 대책방안을 마련한다. 시군구에서는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아동보육분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및 보호관련 기관의 협력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아동보육분과 내 네트워크협의체의 형식으로 시군구의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 및

하드
확대

서비스
내

- 맞벌이 가정
있는 빈곤층
홀로 아동
※ 외국의
의 집에
요한 복지 서비스 Child
- 현재 방과 ◦ 지원
아동정보센터, 2009
접근성을 높일 수 ◦ 지원
동발달 향상 프로그램 ◦ 할 수 있는 소규모 이 ◦ 확대가 필
함.
- 현존하는 소규모 이 시설의 종류: 지역아동센터, 방과 ◦ 보육교실, 방과 ◦
학교, 청소년 방과 ◦ 아카데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
- 또한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

□ 2차 보호체계(중 고위험 아동):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 부모의 보호 없이 방치되며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도 어려운 ‘나홀로 아동’ 중 보호자의 사고, 급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하여 아동 홀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1~4주 정도 단기간 내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특별히 야간에 홀로 집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경우 성학대 등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야간보호가 긴급히 필요한 아동들에 대하여 단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마련 필요
 - ※ 현재 아동을 단기간(1~4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재
- 24시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의식주를 제공하고 레저, 문화체험, 사회성 발달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이지만 통합적으로 아동발달을 함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또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지원받는 ‘나홀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대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 아동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

□ 3차 보호체계(고위험 아동): 거주형 보호시설 연계 및 가정위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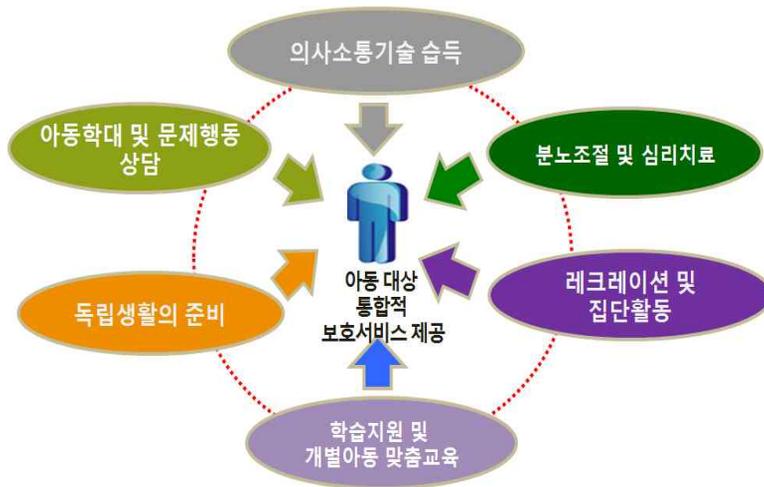


- ‘나홀로 아동’들 가운데 심각한 방임,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격리되어 장기간 안전하게 돌봄 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거주형 소규모 보호시설 연계
- 더불어 전문위탁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장기적인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나홀로 아동’들의 개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위탁가정 연계가 필요함(예: ‘나홀로 아동’들 중 장애아동, 학대피해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발굴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홍보 강화 및 위탁가정 대상 다양한 혜택 제공 등 유인책 마련 필요
 -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인프라 및 복지협의체 등을 활용한 가정위탁사업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전문가정위탁 발굴사업 촉진

- 전문가정위탁 세제 혜택 도입 및 재정 지원 강화 등 가정위탁신청을 위한 유인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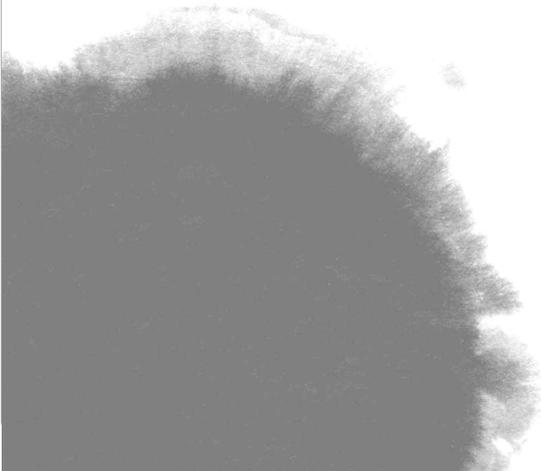
○ 심각한 방임, 학대 등을 경험한 아동들 대부분은 사회성 결핍, 정서 불안, 학습장애, 공격성 등의 문제를 드러내므로 거주형 보호시설에서는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치료·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06

K
I
H
A
S
A

유엔이동권위원회 동향



제6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동향

제1절 2010년 국가별 심의일정

2010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국은 모두 53세션 8개국, 54세션 7개국, 55세션 8개국이다.

모든 심의국가는 심의 1~2개월 전 추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CRC는 심의 2~3개월 전에 각국에게 추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리스트(추가보고서 요청공문)를 각국에 보낸다. 추가보고서는 요청공문에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심의국은 추가보고서 요청공문을 심의일 전 2~3개월 전에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내에 추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CRC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보고서 작성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요청공문이 오기 전부터 추가보고서 작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

Burkina Faso	2009	8	21	2009	11	19	2010	1	13
Cameroon	2009	10	12	2009	11	19	2010	1	14
Ecuador	2009	10	29	2009	11	19	2010	1	18~19
El Salvador	2009	11	2	2009	11	19	2010	1	21
Mongolia	2009	10	12	2009	11	19	2010	1	12~13
Norway	2009	10	12	2009	11	19	2010	1	21~22
Paraguay		-		2009	11	19	2010	1	12
Tajikistan	2009	10	12	2009	11	19	2010	1	18~19

< >

	Argentina	2010 3 3	2010 4 6	2010 6 2~3
	Belgium	2010 3 8	2010 4 6	2010 6 2
	FYR of Macedonia	2010 3 1	2010 4 6	2010 5 28
	Grenada	2010 2 5	2010 4 6	2010 5 31
	Japan	2010 2 5	2010 4 6	2010 5 28
	Nigeria	2010 2 5	2010 4 6	2010 5 26
	Tunisia	2010 3 8	2010 4 6	2010 6 4
	Angola	2010 6 18	2010 8 2	2010 9 14
	Burundi	2010 7 13	2010 8 2	2010 9 16
	Guatemala	2010 2 5	2010 4 6	2010 9 14
	Montenegro	-	2010 8 2	2010 9 20~21
	Nicaragua	-	2010 8 2	2010 9 23~24
	Spain	2010 7 20	2010 8 2	2010 9 15
	Sri Lanka	2010 6 18	2010 8 2	2010 9 23~24
	Sudan	2010 6 16	2010 8 2	2010 9 20~21

제2절 「추가보고서 요청공문」 분석

「추가보고서 요청공문」은 크게 「주요 이슈 및 정책관련 자료 요청」과 「통계자료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23개 심의국 중 추가보고서 요청공문의 영어버전이 있는 21개국의 요청공문을 분석하였다.

1. 주요 이슈 및 정책관련 자료 요청

21개 심의국의 추가보고서 요청공문을 분석한 결과, 유엔 CRC위원회는 일반의견, 특별보고원칙, 특별보호원칙에 대한 추가 정보를 많이 요청하였다. 특히, 국가의 이동관련 중장기계획의 세부내용과 결과, 중장기계획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에 대한 내용을 14개국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 CRC는 이동대상 폭력의 실태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13개국에게, 정부가 가정 우선시하는 이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2개국에게, 소년원의 실태 및 교육권 보장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10개국에게 요청하였다. 유엔 CRC는 유엔이동권리협약 이행 및 이동권리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도 6개국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 , - , ,	' , ' , ' , 9 ,	14
(, , ,) ' () ,	' , ' , ' , ' , ' , ' , 8	13
?	' , ' , ' , 7 ,	12
,	' , ' , ' , ' , ,	6
()	' , ' , ' , ' , ,	6
	' , ' , ' , ' , ,	6
' ,	' , ' , ' , ' , ,	5
	' , ' , ' ,	4
' ,	' , ' , ' ,	4
()	' , ' ,	3
	,	2
		1
		1
		1
		1
NGO ,		1
' ,	' , ,	3
		1

< >

	, ,	, , ,	5
		, , ,	5
	,	, , ,	4
		, ,	3
		, , ,	3
	,	, ,	2
	, ,		1
	, , , ,	, , ,	3
			1
	, ,		1
			1
) (, , , ,	7
			1
			1
	,		1
	, ,	, , , ,	6
	(,)	, , ,	3
	, HIV/AIDS, ,	, , ,	3
	,		1
	.		1
			1
			1
	,		1
		, , ,	4
		, ,	1
	, , ,		1

< >

	,	, , ,	10
	5	, ,	8
(,)	, ,	, ,	4
,	3	, ,	2
,		, ,	
,		,	

2. 통계자료 요청

‘통계자료 요청’을 Cluster별로 분류한 결과, 특별보호조치,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조건 및 복지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이 가장 많았다. 세부 토픽별로 살펴보면, 유엔 CRC는 ~~이동정책~~ 이동정책 영역별 국가의 예산현황과 지난 3년간의 동향분석’을 17개국에게, ‘가정위탁, 입양, 이동생활시설 등 대안적 돌봄시스템 내에 있는 ~~이동~~ 이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14개국에게, ‘성학대 및 성적 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통계자료’를 10개국에 요청하였다.

< >

	, (,),	, ,	17
(budget allocation)	(trends analysis)	, ,	12
(, ,)			1
			1
3			1
	, ,		1
	18		1

< >

			1
			1
	HIV/AIDS		1
			1
	HIV/AIDS		1
	10		1
			1
			1
	()		1
			3
			2
	18 ()		2
	1		2
			1
			1
			1
		7	10
		5	9
			6
			6
	2		

< >

	18	’ ’ ’	5
		’	3
		’ ’	3
18		’ ’	3
		’ ’	3
		’	2
		’	2
		’ ’ ’	2
)	(2
		’	2
		’	2
		’	2
		’ ’ ’	1
			1
18			1
18			1
18			1
		’ ’ ’	1
			1
		’	1

제3절 주요 국가의 영역별 권고사항 분석결과 및 시사점⁹⁾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0년에 심의한 15개국¹⁰⁾ 중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¹¹⁾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룬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국외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동향과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슈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대표단의 심의준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아동권리영역 중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8개 영역(제4조)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8개 영역은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이다.

여기서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이 무엇인지 영역별로 분석하고, 3개국에 대한 권고사항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여러 나라에 유사한 권고를 한 것은 의의가 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반복된 권고사항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한국 대표단은 국외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1. 일반이행조치(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일반이행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4조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해당국의 전반적 이행에 해당하고 있으며, 제42조와 제44조 6항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홍보 및 국가보고서 홍보, 권리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조는 유보조항 철회, 기타

9)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1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에서 일부 발췌하여 정리

10) 아르헨티나, 벨기에, 마케도니아, 그레나다, 일본, 나이지리아, 튀니지, 앙골라, 부룬디, 과테말라,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11) IMF의 GDP순위에 따르면, 한국 15위, 노르웨이 24위, 벨기에 20위, 일본 2위로 나타난다.

국제협약의 비준, 국내법과 협약의 일치, 국가행동전략, 아동영향평가, 아동예산편성 및 예산분석,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기관, 시민사회의 참여, 국제적 협력 및 원조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보건복지부가족부 외 2개 부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먼저,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권고사항 중 이행이 더딘 국가에 대해 이행상황을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국가에게 각국의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국내법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치하도록 법을 제·개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아동의 청원을 조사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청원제도 운영을 위한 자원을 제공받도록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보건영역 종사자, 사회복지사, 법조인, 정책 결정자, 공무원 등에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 중 2개국에게 권고한 사항을 정리한 결과, 약 7가지 권고사항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동권리위원회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정책 협력 및 조정을 위해, 모든 지역의 아동권리 정책을 모니터링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로 지역 간 아동권리 정책 및 서비스 조정이 어렵고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이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상이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둘째,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의 목표, 실행과정, 모니터링체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World Fit for Children’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정부는 계획의 실행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아동권리보장을 기본 가치로 예산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시 아동 및 국민이 참여가능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아동영향평가 등 아동예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권리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권리정책 계획, 이행 및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 시,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일곱 번째, 국외원조 비율을 GDP의 0.7%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개선해

야 할 ‘일반이행조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조항인 ‘아동의 상속권’과 ‘입양허가제 도입’의 철회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부당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 없으며, ‘아동입양허가제’ 도입은 단계적 도입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대한민국 정부, 2008).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사업은 지역각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평등하고 중앙 타 지방정부와 연계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아동복지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정부-지방정부간 서비스 조정이 어려워지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상이한 서비스의 양과 질로 인해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분권교부세 확대, 아동복지사업의 중앙정부로의 재이양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지역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난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제2차 권고사항으로 언급했듯이, 아동예산을 확대하고 아동권리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 아동에 투입하는 예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적은 예산은 아동권리관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국외원조비율은 약 0.1%로 OECD 평균인 0.25%에 미치지 못한다. 국외원조비율의 상향조정도 주요한 과제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World Fit for Childre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DP 0.7%	-	○	○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NOR/CO/4), 45 (CRC/C/BEL/CO/3-4), (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2. 아동의 정의(제1조)

아동의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해당하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에게 남아의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여아의 혼인가능연령은 16세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제2차 권고사항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권고조치 받았으며, 지난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여아의 혼

인가능연령을 남아(만18세)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08).

< >

18	-	-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NOR/CO/4), 45 (CRC/C/BEL/CO/3-4),
 (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3. 일반원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일반원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4가지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제2조), 최선의 아동이익(제3조), 아동의 생존 발달권(제6조),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가 존중받을 권리(제12조)를 말한다. 특히, 제2조에서 말하는 ‘차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민족, 사회 계층, 빈부, 출생 등을 근거로 하는 모든 배척, 제한 또는 우대를 말한다(보건복지가족부 외, 2009).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게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국은 빈곤, 다문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한다. 특히, 노르웨이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어도 인종,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여,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뿐 아니라 행정적·정책적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둘째, ‘최선의 아동이익’은 모든 법규정과 행정적 결정 절차에 반영되도록 한다. 특히, 가족, 대안양육, 이주에 관한 이슈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이 반영되어야 해야 한다. 또한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이들이 이를 준수하게 한다. 셋째, 가족, 학교, 아동기관, 지역사회 및 행정적·사법적 절차에서 모든 아동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비차별원칙에 근간하여 빈곤, 다문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권고는 오랜 시간 단일민족이라고 말해오던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아동 견해에 대한 존중의 원칙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게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로 인해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하지만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견해에 대한 존중은 현재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 ombuds퍼슨 등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이 정책 참여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나, 모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도록 하는 제도적 방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
	(child guidance)			○
				○
	, , ,	○	○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NOR/CO/4), 45 (CRC/C/BEL/CO/3-4), (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4.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제7조, 제8조, 제13조~제17조, 제37조 1항)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는 제7조, 제8조, 제13~17조, 제37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7조는 아동의 출생신고와 성명권, 국적 취득권 및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제8조는 아동의 신분을 가질 권리 그리고 그 신분을 유지하고

필요시에만 구가에 의해 신분회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는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제14조는 아동에게도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시민권을 명시한다. 제15조는 아동의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제16조는 모든 아동이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제17조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대중매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위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 영역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은 없었으나,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2개국에 동일한 권고를 하였다.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며, 둘째, 비폭력·비체벌에 대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인식교양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내체벌은 최근 수년간 매우 뜨거운 감자다. 현재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체벌을 전면금지하고 대체지도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였지만 아직도 체벌전면금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일부 교사 및 학부모는 체벌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체벌전면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권리위원회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의 비폭력·비체벌에 대한 부모교육 및 인식교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체벌전면금지를 해야 함을 시사한다.

< >

		○		
				○
			○	○
			○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NOR/CO/4), 45 (CRC/C/BEL/CO/3-4), (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5.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제5조, 제9~11조, 제18~21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영역은 제5조, 제9~11조, 제18~21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로, 부모의 지도 및 아동능력, 부모의 책임, 부모와 리,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입국과 출국 불법해외이송 및 미귀환, 모든 형태의 폭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입양, 양육 및 보호기관에 정기조사, 아동양육비의 회부, 피해아동의 회복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가족부 외, 2009).

우선,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위기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모든 지역의 학대방임아동에게 충분한 서비스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권리위원회가 2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가 원활한 아동양육을 행하기 위해, 해당국은 출산후 1개월 동안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가정 외 보호방안을 마련한 아동의 경우 최선의 이익에 부응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안양육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학대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입양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보면, 권리가 중첩적으로 나타나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가 아동양육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시소와 그네, 아이돌보미사업,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학대피해아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충격으로 고통 받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

족하다. 또한 보호기관의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이동을 다수 경험으로 되
 돌려 보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막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최우선의 이행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NOR/CO/4), 45 (CRC/C/BEL/CO/3-4),
 (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6. 기초보전 및 복지(제6조, 제18조 3항, 제23~24조, 제26조, 제27조 1~3항)

‘기초보전 및 복지’는 제6조, 제18조 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1~3항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 맞춤형 가정의 아동양육시설, 장애아동의 권리, 보건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이용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정신질환 예방, 경증·중증 정신질환 치료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ADHD아동에 대해 조사하며, ADHD아동, 부모, 교사에 심리적·교육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3개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가 2개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약물남용 및 비만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지역의 아동이 보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장애아동의 위한 통합·전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강제결혼, 여성생식기절단 등 아동권리를 저해하는 관습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빈곤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육·교육·보건·주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곱째,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및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아동빈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아동의 ‘기초보전 및 복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한다. 첫째, 정신보건센터, 특히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2월 기준 155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아동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9개 시군구는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서비스’를 실시하여 문제행동아동에게 상담, 놀이치료, 인지치료, 모래놀이치료,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의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은 최근 몇 년

야 생겨난 것으로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한국 현실에서 아동의 정신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는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와 대책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 빈곤과 자녀의 교육수준의 긴밀한 관계는 빈곤이 나지 않게 하였고, 빈곤아동은 출생일부터 빈곤 아동과 다른 현실에서 살고 있다. 이에 아동빈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1차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50%)은 60.8%로, 아동이 있는 양부모가정의 상대빈곤율인 8.9%의 약 7배인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

		○	○	
	1		○	
			○	
	.	○	○	○
	.		○	
	ADHD ADHD , ,	○	○	○
	.		○	
		○	○	
	(.)		○	○
			○	○
			○	○
		○	○	
	HIV/ADIS , 10			○
	. . .	○	○	
			○	○
				○
	,			○

	(.)			○	○
				○	○
					○
					○
					○
			○	○	
	HIV/AIDS	, 0			○
			○	○	
				○	○
					○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NOR/CO/4), 45 (CRC/C/BEL/CO/3-4), (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7.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제28조 제29조, 제31조)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은 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대한 영역으로, 제28조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제29조는 교육의 목적을, 제31조는 아동이 여가 오락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3개국 모두에 교내 집단따돌림(bullying)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도 따돌림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2개국이 공통으로 권고 받은 사항은 학습 부담 완화, 하업중단율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 접근가능성과 오락 및 문화활동 참여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크다. 먼저, 우리나라도 왕따(집단따돌림)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왕따로 인한 아동 청소년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할 만큼 집단따돌림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학교가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여 무너진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는 어떤 이해와 배려가 전무하게 만들었다. 집단따돌림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 15대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왕따 없는 학교’를 제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과 9월 셋째 주를 ‘친구사랑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 피해아동의 자살은 집단따돌림과 공존하는 학교의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노르웨이, 벨기에에 권고한 ‘학업중단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영국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학교부진이나 중퇴 등이 학업중단에 주된 이유는 집은 학생의 학습동기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학업중단을 막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진단·상담·치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Wee센터(학생안정통합시스템)의 확대 설치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아동이 사회·환경적인 이유로 교육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낮은 학교적응률에 대한 증가는 학업중단율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장애·인종·사회경제적 요인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접근성과 여가, 오락 및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은 다문화사회가 도래한 우리나라에도 권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문화가족의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8. 특별보호조치(제2

특별보호조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1~4항, 제38~40조에 해당되는 아동노동, 마약, 성적 착취, 모든 형태의 학대, 아동차용, 아동매매, 아동기유기의 박탈,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 사법절차에서의 재판과 대우 등에 관련되어 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매매 거래의 예방을 위한 법·정책 등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아동노동, 마약, 성적 착취, 아동차용, 아동기유기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 중 2개국에게 권고한 사항을 정리한 결과, 7가지 권고사항이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망명신청아동을 돕기 위해 인권 제도를 촉진하고 인권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아동에게 특별보호를 제공하고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화해야 한다. 둘째, 망명신청가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임시거주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성학대·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소년사법 관련 중사지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동권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아동의 구금수감장소는 성인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모든 사법절차에서 아동은 변호자를 선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원주민, 소수민족의 아동의 복지·보건·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이 험난한 탈북과정으로 받은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의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추었다. 법원은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

며 보호처분은 1 10호 처분을 받고 있다. 가장 심한 10호 처분은 소년의 수감에
 미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0세로 하향조정한 것이 과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
 합하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NOR/CO/4), 45 (CRC/C/BEL/CO/3-4),
 (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지금까지 아동권리위원회가 2010년 3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비교 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영역별 아동권리이슈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11월 비준하여 약 20년의 지금까지 유보조항 3개 중 1가지를 철회하고, 정부의 자체적 모니터링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며, 일부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기에는 정부의 협약이행 노력에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정부는 인사개편이 잦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리, 복지, 교육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수많은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본 코에서 분석한 결과와 2011년 9월 국가 심의 이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토대로 아동권리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심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 대표단은 현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와 아동권리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UN CRC 제3선택의정서 실무그룹 2차 회의 주요 내용

2010년 12월 6일(월)부터 12월 10일(금)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CRC 제3선택의정서 실무그룹 2차 회의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연구진이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와 함께 참여하였다. 실무그룹 2차 회의 참석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개인진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성안을 위하여 실무그룹 의장 초안에 대한 독회 및 협상을 위한 것이다. 본 센터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제3선택의정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결정하고 이를 표명하였는데,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입장이 아동권리에 입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무부는 법률적 부문, 외교부는 국가 및 유엔과의 관계에 대한 부문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제3선택의정서 초안의 주요

가. 조항별 내용

- 제1조: 이동권리위원회는 ~~이동권리협약~~ 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2조: 청원의 주체인 개인 in ~~이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이동권리협약~~
-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 ombudsman ~~이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이동권리협약~~
- 제4조: 이동권리위원회는 ~~이동권리협약~~ 청원의 수용여부를 결정 ~~이동권리협약~~
- 제5조: 이동권리위원회는 ~~이동권리협약~~ 당국에 잠정적인 긴급조치를 ~~이동권리협약~~
- 제6조: 이동권리위원회는 ~~이동권리협약~~ 신속하게 전달한다. 해당국은 ~~이동권리협약~~ 241 내에 이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이동권리협약~~
- 제7조: 이동권리위원회와 해당국 ~~이동권리협약~~
- 제8조: 이동권리위원회는 ~~이동권리협약~~ 비공인 ~~이동권리협약~~ 의를 통 ~~이동권리협약~~ 조를 구한다. 청원을 심사한 ~~이동권리협약~~ 에는 해당국 ~~이동권리협약~~
- 제9조: 해당국은 ~~이동권리협약~~ 위임 ~~이동권리협약~~ (a watch response)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 ~~이동권리협약~~ 결과 ~~이동권리협약~~ 이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에 포함하여 ~~이동권리협약~~
- 제10조: 이동권리위원회는 ~~이동권리협약~~ 청원 내용이 심 ~~이동권리협약~~ 조지적으로 권리가 침 ~~이동권리협약~~ 해된 사항일 경우에 관련 해당국과 협동하 ~~이동권리협약~~ 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제11조: 제10조에 의해 시행된 정밀조사 ~~이동권리협약~~, 해당국은 ~~이동권리협약~~ 조사 결과 ~~이동권리협약~~ 조지를 국가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12조: 해당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해당국이 이행하지 ~~이동권리협약~~ 않다고 ~~이동권리협약~~ 청원하는 경우에 이동권리위원회는 ~~이동권리협약~~ 이러한 청원을 수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13조: 청원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4조: 청원 및 조사내용과 관련한 해당국의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기관의 타 기관이 있다면, 위원회는 해당국의 동의 하에 이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 위원회는 본 선택의정서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마다 유엔총회에 제출한다.
- 제16조: 해당국은 본 선택의정서 제13조에 대한 이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일반 이동 및 성인이 알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7조: 본 협약은 모든 국가는 물론 유엔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 기탁한다.
- 제18조: 협약 발효시기
- 제19조: 본 협약은 유엔군장을 추가하지 않는다.
- 제20조: 해당국은 본 협약의 적용을 제한하고 이를 유엔군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을 연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다수가 수락한다.
- 제21조: 해당국은 일개 당사국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22조: 유엔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비준, 비준 및 가입, 본 협약 및 개정의 발효일자, 제21조에 따른 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모든 국가에 통보한다.
- 제23조: 본 협약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나. 주요 내용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이하 CRC)는 당사국이 자국 영역 또는 관할내의 개인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유엔 CRC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 청원을 하는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o
를 검토중임.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군복무에 관한 선택의정서, 에서
해지된 구체적인 청원제
- 유엔 CRC는 모든 절
려함(Article 1).
- 청원의 주체는 개인(individuals) 또는 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및 비정부기구(NGOs) 등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우에는 심각하게 또는
(Article 2&Article 3)
- 청원내용에 대한 유엔 CRC는 피해(physical or moral damage)에 대해서는
(Article 5).
- 유엔 CRC은 발의된 청원서를 신속하게 청원서를
전달할 것이며, 이 때 해당국은 청원내용
대한 사항 및 처리방
CRC에 제출해야 함
(Article 6).
- 유엔 CRC가 심각하게 침해된 인권이 침해된 사항과 관련한 청원을
받을 경우, CRC는 관련 해당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
임. 정밀조사가 끝난 후에는 관련 권고사항을 관련
며, 관련 해당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관련 처리결과 등을 유엔 CRC에
제출해야 함(Article 10).
- 본 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해 개방
됨. 본 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2인사무총장에게~~ 기탁됨(Article 17).

2. 회의 내용

가. 전문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Noting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Reaffirming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ecognising that children's special and dependent status creates real difficulties for them in pursuing remedies for violations of their rights,
Encouraging States Parties to develop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enable children and others acting on their behalf and in their best interests to have access to effective remedies for violations of their right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mandated to promote and safeguard the rights of children,
Considering that, in order furth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visions, it would be appropriate to enable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to carry out the function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Protocol.

244

- 전문 제2항은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비차별원칙을 언급함~~
 - 우리나라 대표단 외 다수의 국가들은 ~~이동권자유권 제2항을 토대로 규정할~~ 것을 제안
- 전문 제5항은 ~~이동권자유권 제2항을~~ 증진을 위하여 가능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해 규정함
 - 우리 대표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및 아동음부즈퍼슨에 대한 언급을 둔 리히

텐슈타인의 수정안을 지지함.

나. 개인진정제도

□ 제1조

Article 1: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State Party")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as provided for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2. The Committee shall exercise the functions conferred on it by the present Protocol in a manner that respects the rights of the child and ensures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s a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actions concerning the child.

- 최선의 이익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 외에 아동의 의사존중원칙, 아동의 참여원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국가가 있었음.
- 일부 국가는 최선의 이익원칙 등 아동권리에 대한 원칙을 전문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함.

□ 제2조

Article 2: Individual communications

1. Communications may be submitted by or on behalf of an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State Party,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at State Party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 (a) the Convention;
- (b)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c)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 A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1(b) and/or (c) of the present article.

3. Any State Party having mad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may, at any time, amend or withdraw this declar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4. Where a communication is submitted on behalf of an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this shall be with their consent unless the author can justify acting on their behalf without such consent.

5. Where the author of a communication is acting on behalf of a child a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r a group of children,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whether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or group of children concerned to consider the communication.

246

- 5항은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개인신청제도를 신청할 경우에 위원회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됨. 이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아동권리위원회는 5항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것은 사안에 따라 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

다. 집단진정제도와 국가간 통보

□ 제3조

Article 3 Collective communications

1.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ombudsman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with particular competence in the matters covered by the Convention and its Optional Protocols, which have been approved for that purpose by the Committee, may submit collective communications alleging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a) the Convention;

(b)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 Each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1(b) and/or (c) of the present article.

3. Any State Party may also,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present Protocol,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that it recognizes the right of any 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in its jurisdiction, which has particular competence in the matters covered by the Convention and its Optional Protocols, to submit collective communication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247

○ 코스타리카 등 남미국가 외 모든 국가가 집단진정제도의 삭제를 주장

- 주요 근거로는 피해자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될 수 없어 국가보고서 심의와 다르지 않음.
- 또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제2조의 개인진정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한편 특정 관행이나 정책의 변경을 요하는 진정의 경우는 제10조 조사제도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
- 실무그룹 의장 및 이동권리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자문역인 Peter Newell(이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핸드북 저자)등이 집단진정제도에 대한 국가의 설명요구에 대해 한 결과, 동 제도는 개인진정제도에 대한 심리적 격 규정(안 제8조)이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 인권침해 사실이 아닌 정책, 법률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될 것으로 전망

Article 12 Inter-state communications

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may at any time declar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in which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 (a) the Convention;
- (b)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c)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 The Committee shall not receive communications concerning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nor communications from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3. The Committee shall make available its good offices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 friendly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the respect for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and its Optional Protocols.

4.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e present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s by any State Party shall be received under the present article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new declaration.

라. 절차규정, 잠정조치, 보호조치 등

□ 제4조

Article 4 Admissibility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a communication inadmissible when:

- (a) The communication is anonymous;
- (b) The communication constitutes an abuse of the right of submission of such communications or is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or its Optional Protocols;
- (c) The same matter has already been examined by the Committee or has been or is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 (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not been exhausted.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or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 The Committee shall interpret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n a manner sensitive to the impact that delays may cause to a child's well-being and development.
- (e) It is manifestly ill-founded or not sufficiently substantiated; or when
- (f) The fact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ommunication occurre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unless those facts continued after that date.

250

- 심리적격 규정(제4조)에 진정접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진정접수방법에 대해 각 국가들의 의견이 상이함. 수정안을 제출한 국가들 중 상당수는 반드시 서면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알제리, 스웨덴, 폴란드, 캐나다, 벨기에, 독일 등은 원칙적으로 구두신청을 두고, 이동 친화적인 기타 형태의 자료 제출을 수용하지는 않음. 또한 뉴질랜드, 핀란드, 프랑스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면 아동의 접근성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함.
 - CRC는 서면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현 의장 초안을 지지함.

□ 제6조

Article 6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1. Unless the Committee considers a communication inadmissible without reference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 Committee shall bring any communication submitted to it under the present Protocol confidentially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as soon as possible.
2. The identity of any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concerned shall not be revealed to the State Party or otherwise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e individual or individuals concerned.
3. Within three months, the receiving State Party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ritten explanations or statements clarifying the matter and the remedy, if any, that may have been provided by that State Party.

○ 진정자의 신원공개

- 상당수 국가는 당사국에게 진정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진정의 당사자주의를 지키는 것임을 지적함.
- 이에 의장수정안에 ‘진정절차의 목적을 위해서만 당사국에게 공개한다’로 고쳐짐. 의장수정안은 다음과 같음.

Article 6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2. The identity of any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concerned is not public and is revealed to the State party only for the purpose of the procedure.

251

- 그러나 일부국가는 사생활보호를 우려하여 당사국과 위원회가 진정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함. 이에 보호규정(원안 제13조)에 이를 포함하기로 함.

○ 변통보 시한

- 원안은 3개월 내 당사국의 의견을 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대다수 국가는 변통보 시한에 반대하며 6개월로 할 것을 제안함. 반면 일부국가는 이동권리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3개월이 적절하다고 주장함.
- 이를 반영한 의장수정안은 다음과 같음.

□ 제9

Article

1. The Committee shall, in cooperation with the States Parties,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promo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Optional Protocol, including as may be required by the Committee, in the light of the information about any situation which the State Party has reported to its views or recommendations, including as may be required by the Committee, in the State Party's subsequent reports under the Convention or under Article 17 of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r Article 8 of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속조치~~ 시한

- 원안은 3개월 내에 ~~속조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대다수 국가들은 ~~변통보~~ 시한에 반대하며 6개월로 할 것을 제안함.
※ 우리 정부도 위와 같은 의견 발표함.
- 폴란드국은 이행조치에서 'taken'를 'envisaged'로 수정하여 범위확대를 제안하였고 채택됨.

마. 조사제도 및 국제협력

□ 제10조

Article 10 Inquiry Procedure for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1. If the Committee receives reliable information indicating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by a State Party of rights set forth in:

- (a) the Convention;
- (b)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c)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the Committee shall invite the State Party to cooperate in the examination of the information and to this end to submit observations without delay with regard to the information concerned.

2. Taking into account any observations that may have been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as well as any other reliable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e Committee may designate one or more of its members to conduct an inquiry and to report urgently to the Committee. Where warranted and with the consent of the State Party, the inquiry may include a visit to its territory.

3. Such an inquiry shall be conducted confidentially and the cooperation of the State Party shall be sought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4. After examining the findings of such an inquiry,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without delay these findings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ogether with any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5. The State Party concerned shall, within three months of receiving the findings,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transmitted by the Committee, submit its observations to the Committee.

6. After such proceedings have been completed with regard to an inquiry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the Committee may,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decide to include a summary account of the results of the proceedings in its report provided for in Article 15 of the present Protocol.

7. Each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provided for in the present article.

8. Any State Party having mad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the present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is declar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조사제도 규정 관련

- 일부 국가는 4항 ‘without delay’를 ‘without undue delay’로 수정할 것

을 제안함.

- 일부국가는 조사제도는 심각하고 조직적인 아동권리 침해를 다루는 미국 7~8항에 언급되어 있는 opt-out규정을 반대함
- 원안은 3개월 내 아동권리 관련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함. 대다수 국가는 변통보 시한에 반대하며 6개월로 할 것을 제안함.

바. 표준규정

□ 제16조

Article 16 Publicity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make widely known and to disseminate the present Protocol and to facilitat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view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in particular on matters involving the State Party, by appropriate and activ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 폴란드는 타 유사 의정서와 동일하게 제16조 제목을 publicity에서 dissemination and information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 뉴질랜드는 장애아동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accessible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 채택
- 원안에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의정서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 있음
- 위의 사항을 반영한 의장수정안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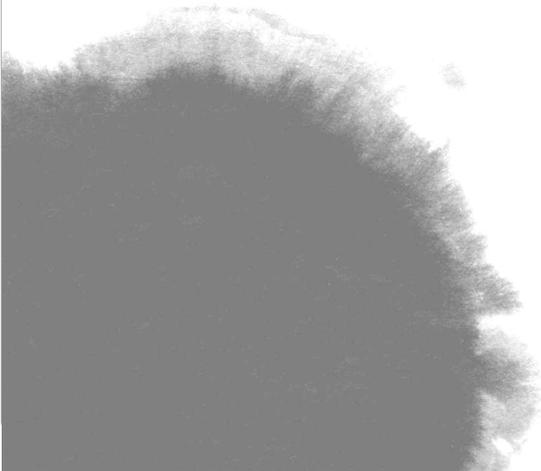
Article 16 Dissemination and information

1.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make widely known and to disseminate the present Protocol and to facilitat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view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in particular on matters involving the State Party, by appropriate, accessible and active means.

2. The Committee and State parties shall make widely known and disseminate information on the communication procedure established by the present Protocol in a child-friendly format and manner

07

결론



제7장 결론

본 사업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권리증진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아동권리침해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였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아동권리침해사례발산, 거리홍보 등을 통하여 아직은 낮은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아동권리 관련 국제동향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아동권리개선 목표’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본 장에서는 2011년의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 보다 발전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기제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모니터링체계 강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기능·역할 강화, 3·4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등 세 가지 사업방향을 제시한다.

1. 3·4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심의 2~3개월 전에 각국에게 추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적힌 요청 공문을 각국에 보내며, 심의국은 이리전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보고서 요청 공문이 오는 시기가 추가보고서 제출기한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보고서 요청 공문이 도착하기 전부터 추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보고서 심의 및 추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심의 준비에 대한 빠르고 능숙한 진행이 요구되어 지는 시점

에서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및 추가보고서 작성 TF의 회의와 추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회의와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법·정책 등 제도 현황을 분석, 자료 분석 등 추가보고서를 위한 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 관련 부처에 관련통계 등을 요청하여 추가보고서 초안

둘째, 정부합동 추가보고서 작성 TF팀 구성 및 운영. 이동권리관련 관계부처 담당자와 이동권리움부즈퍼슨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추가보고서 TF’를 구성한다. 정부합동 추가보고서 TF는 ‘국가보고서 심의준비 및 추가보고서 작성 TF’에서 만든 추가보고서 초안 내용 등을 토대로 중간점검 하며,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 또한 유엔이동권리위원회가 타 심의국들의 추가보고서 요청 공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격적인 추가보고서 작성에 활용한다.

셋째, 국가심의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가심의 방문단을 중심으로 심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심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통역사, 한국이동권리모니터링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국가심의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심의준비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분석 및 예상질문과 변을 철저히 준비하여 심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심의방문단은 유엔이동권리위원회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보고서 심의에서의 이동권리위원의 예상질문을 파악하고 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넷째, 추가보고서 작성의 최종단계에서의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보고서의 작성의 마무리 단계에서 내용별 해당부처가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면 추가보고서의 국문이 확정된다.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확정하여 추가보고서 최종본을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게 된다. 심의일을 앞두고 심의 예상 질문 파악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통역사와 지속적인 집중 업무 공유를 해야 한다. 심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국가심의방문단은 출국하기 전

2. 모니터링체계 강화

모니터링체계의 강화를 위해 ombudsman의 지역을 광역 단위로 확대하여 전국단위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아동권리ombudsman의 운영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ombudsman 활동의 지역 확대가 요구된다. 수도권 위주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발굴하고 아동권리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ombudsman의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아동 청소년권리센터 및 기타지역의 아동복지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구축 및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광역별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광역 권리센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국단위의 권리센터는 각각 기관이 아동권리ombudsman제도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ombudsman 운영결과의 실효성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만이 아동권리증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아동권리ombudsman으로 활동하고 있는 ombudsman은 10명이다. 성인 ombudsman은 의정기관, 시민단체, 학계,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동 ombudsman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등의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ombudsman의 인적구성에도 불구하고 ombudsman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러한 ombudsman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권리ombudsman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필요하다. 아동권리ombudsman은 한국의 아동권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가졌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3.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기능·역할 강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통해 아동의 관한 거시적인 영역을 모니터링 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권리 증

진을 도모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또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인력은 센터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옴부즈퍼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권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둘째, 본 센터는 아동권리 특히, 유엔아동권리에 관해 아동과 부모, 대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동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그 만이 아니라 아동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기존의 아동권리 홍보 방안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홍보 기술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한다.

셋째,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옴부즈퍼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옴부즈퍼슨뿐 아니라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에 대한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동권리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아동권리교재개발 및 교육인력 확보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활습관병 예방사업 추진계획」, 2009.

경찰청, 「경찰백서」, 각 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년 업무계획」, 2010.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분석」, 각 년도.

경찰청, 「내부자료」, 각 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주요 업무계획발표」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방과 후 학교 현황분석」, 2010a.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b.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0c.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0d.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유아학비 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0e.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2010.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김태완, 『2009년 빈곤통계연보』, 2009.

김승권 외,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보건복지가족부. ~~한정희·차현영·김치매·이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김승권·김형욱·이수희

지가족부·한국보건사
 김주영, 『장애학생 교육권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민국 정부, 『유엔아동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보건복지부, 「2010년도 이
 보건복지부, 「2009년 보육
 보건복지부, 「2009 아동·
 보건복지부, 「2010년도 이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생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

2007.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신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
 핸드북(번역서)]. 2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체벌업
 수자료”, 2010.
 여성가족부, 「2009년도 청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
 실태조사, 각 년도
 지역아동정보센터, 「방과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한겨레중. 고. 대. 2009.

한국교육개발원 『2009년 초·중·고등교육 평가보고서』, 2009.

한국교육개발원 『2009년 초·중·고등교육 평가보고서』,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여성·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연구』, 2009.

한국아동권익위원회 『2010년 아동권익향상 방안 연구』, 2010a.

한국아동권익위원회 『2010년 아동권익향상 방안 연구』, 2010b.

허정현·강영진 『2008년 다문화 사회: 혼자 크는 어린이』, 2008.06.03

행정자치부 『2008년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주민실태조사』, 행정자치부, 2008.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에서 2010.11. 인출.

실종아동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missingchild.or.kr>에서 2010.11. 인출.

아동안전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childsafetyhouse.go.kr>에서 2010.11. 인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youthacademy.or.kr>에서 2010.11. 인출.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 <http://www.withyouth.go.kr>에서 2010.11. 인출.

PD수첩 시청자모임 인터넷 카페, cafe.naver.com/pdnote, 2010.06.22. 인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ywa.or.kr>에서 2010.11. 인출.

www.ethosgallery.com에서 2010.06.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노르웨이(CRC/C/NOR/CO/4), 45세션 벨기에(CRC/C/BEL/CO/3-4), 일본(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32세션 대한민국(CRC/C/15/Add.197)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200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노르웨이(CRC/C/NOR/CO/4), 45세션 벨기에(CRC/C/BEL/CO/3-4), 일본(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The 2007 Child Care Licensing Study」, 2009.

OECD, 「보건통계자료」, 각 년도



부록

1. '03년 및 '0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점검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6 요약

[부록 1] '03년 및 '0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점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8개의 권리조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국가별로 전
은 이리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
서 권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
터링센터는 2009년 정책보고서를 통해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2009년의 분석을 시
목에 대해 변화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이행, 이행추진, 미이행으로 구분하였다. 이행추진과 미이행의 경우 향
보완 할 점
을 추가함으로써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

(○):

(△):

(×):

12) 김승권·김형욱·이수희,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2008.4-2009.3)』,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9.에서 발췌하여 지난 2009년, 2010년의 변화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함.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협약 4조, 42조, 44조 6항)

< >

I	I-1-(1) 40 2-b-v		• •	×		'03
I	I-1-(2) (1993) 21 a 9 3		• ('08.1.1) •	○		'03
	I-1-(3) ()		• • •	△		'03
I	I-2-(1)		•	△		'03
I	I-3-(1) World Fit for Children" (A		• 5 • • • 2 5 ('11-'15)	○		'03
	I-3-(2)		• ('04)	○		'03
I	I-4-(1)		• ('06)	○		'03

< >

I	I-7-(3)		• ('08)	○		'03
I	I-8-(1)		• - ('08)	○		'03
	I-8-(2)		•	△		'03
	I-9-(1)		•	△	('03
	I-9-(2)	2002 (CRC/C/121) (2002 Day of General Discussion)	16 / /	•	○	'03

2. 아동의 정의 (협약 1조)

< >

II	II-1-(1)	(16) (18)	•'07.11	○		'03

3. 일반원칙 (협약 2조, 3조, 6조, 12조)

< >

III	III-1-(1)		•	△		'03
	III-1-(2)		•	△		'03
	III-1-(3)		•	△		'03
III	III-2-(1) 2	, , , /	• • •	○		'03
	III-2-(2)	, , , /	• •	△		'03
	III-2-(3) 2001 29 1 ()	/	• • •	△		'03

< >

III	III-3-(1) 2000		• ('04)	○		'03
	III-3-(2)	, / /	• ('04) • ('04) • ('04) • ('07) • () , , , ,)	△		'03
	III-3-(3)	, , / /	• • •	△		'03
	III-3-(4)	, , /	• ()	△	40	'03

4. 시민권과 자유 (협약 7조, 8조, 13-17(a)조)

< >

5.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협약 5조, 18조 1-2항, 9-11조, 19-21조, 25조, 27조 4항, 39조)

< >

V	V-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 • • • ('09) • (1 10) 	△		'03
	V-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03
	V-1-3)	(social wor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03

< >

V	V-2(2)	() ,	•		×	'03
V	V-3(1)		• ('06.9)- • • • 1 44		○	'03
	V-3(2)		• (44) • •		△	'03
	V-3(3)		• • () •		○	'03
V	V-4(1) 27 13) (3)	2 /	• ('07) -		△	'03

6. 기본적 보건과 복지 (협약 6조, 18조 3항, 23, 24, 26, 27조 1-3항)

< >

VI	VI-1-(1)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6 () • • 	△			'03
	VI-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03
	VI-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07) 	○			'03
	VI-1-(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03

1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가짐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기본 능력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아동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당사국은 국가의 관할권 내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가의 관할권 내의 범위에서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이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

VI	VI-2-(1)		• ('07) • ('07) • -	△		'03
	VI-2-(2)		• - • ()	○		'03
	VI-2-(3)		• • • •	△		'03

7. 교육 (협약 28조, 29조, 31조)

< >

VII	VII-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 • • • - • - 	△		'03
	VII-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03
	VII-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Affirmative action) 	○		'03
	VII-1-(4)	2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8. 특별보호 조치 (협약 22조, 38조, 39조, 40조, 37조(b)-(d), 32-36조)

< >

VIII	VIII-2-(1) 1996 2001 ' 1-2 1, 2 (1996 , 2001)		•	○	'03
	VIII-2-(2)		• • •	○	'03
	VIII-2-(3)		• • •	△	'03
	VIII-2-(4)		• • •	△	'03

< >

VIII	VIII-3-(1) 37 , 39 , 40 (), ((Riyadh)), 1995		• , , • , • ' ,	○	'03
	VIII-3-(2)	/	• - 17 2()	○	'03
	VIII-3-(4)) (• •	△	'03
VIII	VIII-4-(1)		• () • , • () • -	△	'03
	VIII-4-(2) (1990)	()	•	×	'03

[부록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6 요약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 제29조 1항의 중요성

- “아동권리협약” 제29조 1항은 매우 광범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당사국에 의해 합의된 바 있는 교육의 목적은 동 협약의 규범적인 가치인 모든 아동들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아동의 평등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려 한다. 이러한 목적들은 모두 아동의 특별한 발견의 필요와 발전해 나갈 다양한 잠재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시키도록 하는 접근적으로 관련된다. 동 목적들은 인간에 대한 존엄 및 발달된 주체성과 인지능력의 진전과 아동의 사회화와 타인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진전을 포함한 아동의 모든 잠재력의 전체적인 발전이다.
- 교육에 대한 권리에 아동 고유의 존엄성과 권리를 반영하는 양적인 자이를 단순히 부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 우호적이며 자격을 갖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동 조항이 선언하고 있는 원칙에 기초한 교육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단순한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다. 제29조 1항의 가치에 확고히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함유한 교육은 모든 아동들에게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세계화와 신기술 그리고 관련된 현상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에 접하게 될 도전들에 관한 균형 잡힌 인권 우호적인 대책을 얻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 모든 당사국은 교육의 규범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함께 동의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동 협약은 세계 각지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 국가, 문화적인 경계를 초월한다. 동 조항에서 언급된 다양한 가치들 중 일부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 간의 상호 존중, 우호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1항은 후자의 경우 아동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 가치, 아동이 출생하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민족적 가치, 아동

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정책들이
상 지동적 관점에서 동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 일부는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 필요한
록 하려는 것임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데 있다.

□ 제29조 1항의

○ 동 조항은 아동의 권리의 목록 또는 열거 이상의 의미를
를 지니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 첫째, 동 조항은 아동의 권리를 불가결하고 상호 연관적인 것으로

조하고 있다. 동 조항은 아동의 권리를 강화, 통합,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며, 규정이 아동의 권리를 적절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차이를 고려하여 협약의 전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광범위한

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동 조항은 아동의 권리를, 그들의

넓은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시회적 틀 내에서의 권리를 불

필요성 및 대부분의 아동의 권리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

체의 가치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둘째, 동 조항은 교육에 대한 권리의 증진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과정의 중

요성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다른 권리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 과정에서 전달된 가치에 의해 강화되어야

만 한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내용뿐 아니라 교육의 방법과

가정, 학교 혹은 기타 어떤 환경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포함된다.

— 셋째, 비록 제28조가 교육체제의 확립과 학교로의 접근보장에 대한 당사국

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제29조 1항은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대

한 개인적, 주관적 권리의 근거가 된다. 아동 이익의 최우선을 위한 행동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동 협약과 부합하기 위해, 동 조항은 모든

- 동이 특유의 성격과 관심, 능력과 학습능력에 따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 협약 제2조에 언급된 것은 그것의 주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의 기회를 통해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는 것인 상은 무관, 차별, 인종, 종교 등 차이에 따른 촉진 혹은 왜곡된 접근이 포함된다 그에 대해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일종의 접근을 위한 캠페인에서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 넷째, 교육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아동기와 일생이라는 시기의 측면에서 지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간에 적절한 균형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체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
 - 다섯째, 교육의 본 협약에 내재된 특정한 윤리적 가치의 범위를 증진시키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안되며,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가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에 의한 평화, 관용에 대한 교육 및 자연 환경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이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포함하는 것이다.
 - 여섯째, 동 조항은 모든 어린이, 청소년과 그들의 개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 기회부여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자유로운 사회 내에서 완전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아동의 능력은 교육에 대한 접근의 완전한 기부에 의해 손상되고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항에서 인정된 가치의 이해를 증진하지 못함으로써 손상되고 훼손될 수 있다.

□ 인권교육

- 제29조 1항은 1993년 유엔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요청되었으며 다른 국제기구들에 의해 촉진된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기구의 대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29조 1항에 내재된 가치들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 관련되어 있으나 동 가치들은 ~~분쟁과 폭력 등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이행, 감독 및 검토
 - 제29조 1항의 실효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는 교~~ 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과 ~~학교 정책 및 교과서 및 기타 교재, 교수법의 체계~~ 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깊이 있는 변화 없이~~는 ~~현기 체제의 동 조항 가치의~~ 목적의 단순한 첨가이상 ~~이 아닌 접근은~~ ~~불명확하다~~.
 - 더욱이 학교 환경은 ~~그라비아, 장애, 성 평등 및 모든 사람, 인종~~ 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토착민들 간의 우호를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괴롭힘이나 다른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이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학교가 있~~ 다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다.~~
 -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언론매체 또한 제29조 1항에 반영된 가치와 목적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행동이 그러한 목적을 증진시키려는 ~~타인의 노력을 훼손하~~ 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량을 수행해야만~~ 한다. 정부는 “대중매체가 이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항과~~ 정보를 보급하도록 장려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국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의 교육 및 제29조 1항에 관련되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데~~ ~~보다 나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아동은 ~~학습 과정, 학습량, 학습과정과 교재 및 학습결과~~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당사국들이 포괄적인 국가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제29조 1항 상에 열거된 목적의 실현을 증진시키고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러한 ~~계획이~~ ~~국가적 인권 행동 계획, 혹은 국가적 인권 정책의 보다 큰 맥락에서~~ 고안된 것이라면 정부는 제29조 1항에서 다루어진 모든 주체를 다루어야 하며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고안되도록 해야 한다.
 - 동 조항에 반영된 가치를 증진시킬 프로그램의 이행과 고안은 ~~인권이론과~~

형이 일어난 거의 모든 상황에 있는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표준적 반응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협약 상 인정된 권리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교육학적 기술들에 대한 연구와 이의 채택을 포함하는 적절한 부가 조치가 채택되어야만 한다.

- 포괄적인 국가적 행동계획의 이행은 기능권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일반논평 2: 아동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들에게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NHRIs)들은 협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며,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이행 보장을 위한 실행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며 아동의 권리의 보편적인 실현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가인권기구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많은 당사국에서 아동 권리의 증진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NHRIs)와 아동 옴부즈맨/아동 위원 및 이와 유사한 독립적 기구의 설립을 환영하는 바이다.
- 국가인권기구(NHRIs)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와 지위에 관련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하도록 설립되어야만 한다.
- 성인과 아동은 유사하게 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NHRIs)를 필요로 하지만, 아동의 인권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 대한 부가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이는 아동의 발달상태가 인권침해에 취약하고,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고려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아동은 투표권이 없고, 권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도 못하는 사실 등이 포함된다.
- 각 당사국의 아동을 위한 독립된 전문가 인권기구, 행정감찰관(옴부즈맨) 또는 아동권리를 위한 위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자원이 제한된 경우에 아동을 포함한 만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가용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을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기반의 국가인권기구(NHRIs)의 발달은 최선이다. 그러한 기관은 어떠한 형태나 단계에 독립적 또는 실효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감독하고, 보호하며 증진해야 한다.

□ 위임과 권한

- 국가인권기구(NHRIs)는 가능한 한, 헌법을 기반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적어도 입법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들에 대한 위임은 일관성 있고 증진하는데, “아동권리협약” 및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 그리고 관련 국제인권문서들을 수용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효적이어야만 하며, 특히 아동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포괄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NHRIs)는 그들의 권한 내에 포함되는 상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획득하고 모든 사람의 견해를 청문할 권한을 포함한 위임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설립절차

- 국가인권기구(NHRIs)의 설립 절차는 다 기관과 협력적이어야 하며, 포괄적이어야만 하고, 투명하며, 정부차원에서 제안되고, 지원을 받으며, 국가, 입법기관, 시민사회의 관련 구성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의 독립성과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인권기구(NHRIs)는 적절한 하부구조와 개정, 직원, 시설, 그들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

□ 자원

- 본 위원회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당사국들이 다양한 경제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기능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기구의 운영 및 작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다원적인 대표성

- 국가인권기구(NHRIs)는 그들의 구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의 다원적 대표성을 포함해야 하며, 인권, 차별 금지 및 아동의 권리, 비정부기구, 아동과 청소년 단체, 노동조합, 사회적, 전문적 단체(의사, 변호사, 언론인 등), 아동권리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과 전문가들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아동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제공

- 국가인권기구(NHRIs)는 국가인권기구(NHRIs)의 이름으로 아동의 문제에 관련된 사건을 제소할 권리와 그 사건에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하여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개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이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지지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접근가능성과 참여

- 국가인권기구(NHRIs)는 모든 아동 집단과 접촉할 수 있어야만 하며, 특히 취약계층이거나 구금되어 있는 아동, 소수 민족이나 토착민, 장애아동, 빈곤아동, 난민 혹은 이주 노동자, 취약계층이나 문화적, 언어, 건강 및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가장 취약하고 불이익을 받은 아동 집단에 접촉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도록 증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맞춤형 협의프로그램과 창의적 의사소통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아동이 인권기구와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의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의 상태에 관하여 국민 및 의회에 직접적, 독립적, 개별적으로 보고할 권리를 보유해야만 한다.

□ 권고되는 행위

- 아동권리의 이행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열거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 그들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위임범위 내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
- 아동권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청문하는 것
- 국가 당국의 요청 혹은 그들 스스로 발의에 의해 증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 권고와 보고를 하는 것
-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법과 관행의 적절성으로 검토하는 것
- 아동권리협약 등 협약의 선택 의정서 및 아동의 권리적 인권 문서와 국가 입법, 규제, 관행의 조화를 증진 및 적용에 있어 공적, 사적 기구에 조언을 제공하여 증진시키는 것
- 국가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국가 경제 및 발전 계획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
-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분류되고, 기타 정보가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아동권리의 상태를 감독하고 정부의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고
- 여하한 관련 국제 인권 문서의 비준이나 가입을 장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법률과 정책의 개발과 이행 그리고 그 이까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할 것
-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시안과 아동권리에 관한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가 표시되고 경청되도록 보장하는 것
-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한 국내적 입법과 국제적 문서의 개발에 있어서 아동 자신들이 참여하는 조직을 포함하여, 아동권리 비정부기구들의 유의미한 참여를 지지하고, 촉진하는 것
-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론 매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고 ~~원하는 것~~

-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아동과 성인에게 동 협약의 원칙과 규정이 널리 알려지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협약의~~ 내용을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당사국이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검토할 것
- 학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과 전문가 집단에서 아동권리를 가르치고 조사하고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식화 하도록 지원할 것
- 아동에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에 착수할 것
- 당사국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할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
-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적절한 경우 중재나 조정 절차를 마련할 것
- 법원에 법정조언자(참고인) 혹은 ~~개입자~~가 포함된 사건에서 법원에 아동권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할 것
- “아동에 대한 돌봄과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을 따를 것을 보장할 것”에 대한 협약내용에 따라 소년원이나 처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한 방문 및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할 것
- 상기에 부수적인 기타 행위들을 수행할 것

□ 아동권리위원회의 보고 및 국가인권기구(NHRIs)와 유엔기관, 인권 기구들과의 협력

- 국가인권기구(NHRIs)는 동 협약 및 기타 관련 국제 문서에 의한 보고 절차에 독립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회기 전 실무그룹에서 아동권리위원회 및 기타 관련 조약기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기구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의 성실성을 감독해야 한다.
- 국가가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국가인권기구(NHRIs)의 입법적 기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국가인권기구(NHRIs)의 활동과 관련된 권한과 원칙, 법률적 근거, 위임사항과 주요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 국가인권기구(NHRIs)는 국가 및 주제별 매커니즘(thematic mechanism) 및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특히, 아동의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자와 협력해야 한다.
 - 본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인권기구(NHRIs)의 설립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당시국이 제출한 모든 보고서를 여하한 유엔의 전문 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및 기타 관련 기구에 제공할 수 있다.
- 국가인권기구(NHRIs)와 당사국
- 국가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인권기구(NHRIs)의 역할은 아동권리를 국가적으로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진전사항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그들 자신의 의제를 설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 국가인권기구(NHRIs)와 비정부기구(NGOs)
- 비정부 기구는 인권 및 아동권리의 증진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적 근거와 특정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NHRIs)의 역할은 보완적이다. 국가인권기구가 비정부기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정부가 국가인권기구(NHRIs)와 비정부기구의 독립성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
- 지역적·국제적 협력
- 지역적·국제적 절차와 매커니즘은, 국가인권기구(NHRIs)가 각 국가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해서 국가인권기구(NHRIs)를 강화시키고 공고화시킬 수 있다.
 - 아동의 인권문제는 국제적·지역적 매커니즘과의 교류가 장려되는데 이는 그 매커니즘들이 국가인권기구와 상호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상호의 입장을 강화하고 국내와 지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기회를 국가인권기구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반논평 3: HIV/AIDS와 아동의 권리

□ 본 일반논평의 목적

- HIV/AIDS와 관련하여 아동의 모든 인권에 대한 확인 및 이해를 강화하는 것
- HIV/AIDS와 관련한 아동 인권의 실현을 증진시키는 것
- HIV/AIDS의 예방, 감염 아동 혹은 이 감염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동의 지원, 간호, 보호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바람직한 관행의 확인
-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HIV/AIDS의 확산을 방지하고 영향을 경감시키려는 아동 중심적인 행동 계획, 전략, 법률, 정책 및 계획을 증진하고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

□ HIV/AIDS에 관한 동 협약의 관점: 전체적 아동의 권리에 근거한 접근

- 모든 아동의 삶에 있어서 HIV/AIDS의 영향이 매우 크며, 그들의 모든 권리-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협약의 일반 원칙상의 권리들-비차별의 권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권리, 생명, 생존, 발달, 건강의 권리의 견해를 존중받을 권리는 예방, 진단, 치료, 지원의 모든 차원에 있어서 지도적 주제(guiding theme)가 되어야 한다.
- HIV/AIDS를 다루는 적절한 조치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하게 존중되는 경우에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가장 깊이 관련된 권리들은 상기에 언급된 일반원칙상의 네 가지 외에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 및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리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 예방적 건강관리, 성교육 및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생활의 권리 등이 있다. 아동들은 이 감염병으로부터 인해 상기에 언급한 권리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동 협약은 포괄적인 접근을 함께 특히 네 가지의 일반원칙에서 전염병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

프로그램의 개념화, 고안, 이행, 조정, 감독과 평가에 완전한 참여를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 장애물

- 많은 장애물 중 HIV/AIDS에 대한 공동체의 주도에 대한 지원과 간호 서비스 및 효과적인 예방의 전달을 방해한다는 것을 거론할 수 있었다. 이 장애물들은 주로 문화적 관행, 재정적인 것들이다. 문제의 존재 자체의 부정이나 금기와 낙인 등의 문화적 관행과 태도, 빈곤과 이동을 위하는 취하는 태도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치적, 개인적 참여에 대한 장애물 중 일부일 뿐이다.
- 재정적, 기술적, 인력 자원과 관련하여, 그러한 자원들의 이용이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자원의 제한은 국가에 의해 필요한 기술적 혹은 재정적 투입을 프로그램 혹은 충분히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이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예방, 간호, 치료 및 지원

○ HIV/AIDS 예방 및 인식고취에 대한 정보

- 아동들은 공식적 교육기관 수준을 통해 HIV/AIDS의 예방 및 간호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가는 아동의 이해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연령과 능력에 맞추어, 아동에 성(sexuality)에 부응하는 적절한 사회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공동체, 가족, 동료와의 대화 및 성과 건강한 생활에 관한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삶의 기술' 교육에 대한 제공은 HIV/AIDS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접근방법이다. 국가는 생활어 언어, 종교, 장애 혹은 기타 제한요소들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을지라도 적절한 예방 메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이 정보와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중매체 또는 구전전통의 역할이 필요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들에게 질병정보의 제공, HIV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공포를 다루는 것, 이에 대한 무지, 낙인과 차별을 감소시키며, HIV/AIDS

인식 캠페인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교육의 역할

- 교육은 아동에게 HIV/AIDS에 대한 적절하고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인식교양과 이 질병을 이해하며, HIV/AIDS 희생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방지에 보다 나은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교육은 아동들에게 HIV/AIDS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당사국들은 HIV/AIDS에 대해 영향을 받은 아동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하며, 감염된 교사들을 대체할 자격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아동의 계속적 등교가 영향 받지 않도록 하고,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모든 아동의 교육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학교가 아동에게 안전한 장소로써 안전을 제공하고, HIV/AIDS 감염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이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동 및 청소년 인지적 보건 서비스

- 본 위원회는 보건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여전히 18세 미만의 인구, 특히 청소년의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HIV/AIDS와 아동의 발달 역량을 고려하여 볼 때,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HIV/AIDS와 관련된 건강문제, 예를 들어 결핵과 기회감염되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하여, HIV/AIDS와 관련된 간호와 치료뿐 아니라 아동에게 HIV/AIDS와 관련된 정보, 자발적인 상담과 검사, HIV 감염상태에 대한 지식, 비공개적인 성적, 생식 관련 보건 서비스, 무료 혹은 저비용의 콘돔 임기구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차별적으로 아동의 사생활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전문 인력을 보건서비스에 고용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몇몇 국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우호적인 HIV/AIDS 관련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토착민 아동, 소수민족 아동, 지방에 거주하고 있

한 아동, 극빈층 아동, 다
에 대한 접근이 충분치 않
국경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 HIV/AIDS 상담과 검사

- 아동의 역량발달에 주의를
상담과 검사서비스의 접근
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HIV
동의 능력과 HIV/AIDS
위한 보다 나은 계획이
- 아동의 사생활권리의 보호
장해야만 한다.

○ 모자감염

- 모자감염(MTCT)은 영아
와 유아는 임신, 출산, 분
HIV/AIDS의 모자감염을
배우자에게 ‘항레트로 바이
출산 전, 출산 혹은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 높은 HIV/AIDS
HIV/AIDS에 감염되지 않은 여성
여성의 영아와 그들의 HIV/AIDS 상태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모유
수유가 최선의 양육 방법임을 알린다. HIV/AIDS에 양성인 어머니를 가진
영아의 경우 모유수유가 HIV/AIDS 전염 위험성을 10-20%정도 높일 위
험이 있으나, 모유수유가 부족할 경우 아동이 HIV/AIDS가 아닌 전염성
질병이나 영양실조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 유엔 전문기관은 대체
수유방법이 가능하고, 실행가능하며,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경우에 HIV/AIDS에
감염된 어머니로부터의 모유수유를 전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 치료와 간호
 - 아동이 필요한 HIV/AIDS 관련 약물,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총체적인 치료와 간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적 차원에서~~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필요한 약물을 생산하기 위해 제약업체와 협상을 해야 한다.
 - 이동관련연구
 - 국가는 HIV/AIDS 연구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예방 및 간호, 치료와 이동에의 영향의 감소를 위한 특별한 연구 과정에서, 충분한 실험이 실행되기 이전에 아동이 연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발달 역량에 따라 아동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며, 그 동의는 ~~필요한~~ 경우에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나 모든 경우에 동의는 ~~아동에~~ 대한 연구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완전한 설명에 근거해야 한다.
- 취약성 및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다른 요소들에 ~~기인한 HIV/AIDS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은 ~~감염의 결과로~~ 부적절한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HIV/AIDS에 감염된 경우 필요한 치료와 간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아동이 속한 가정 및 공동체에서 HIV/AIDS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향성을 결정한다. HIV/AIDS와 관련된 취약성의 감소에 있어 아동, 그들의 가족 및 공동체가 HIV/AIDS와 관련되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 관행, 정책에~~ 대한 고지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HIV/AIDS에 의해 영향을 받아 고아가 된 아동
 - AIDS에 의해 고아가 된 아동, HIV/AIDS의 영향을 받은 ~~가족에~~ 속한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HIV/AIDS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정의~~ 아동에게 있어 ~~경제적~~ ~~정신적~~ ~~교육적~~ ~~의료적~~ ~~문화적~~ ~~사회적~~ 고립은 ~~교육, 건강, 사회적 서비스로의~~ 접근의 상실이나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 ~~는~~ 특정한 차별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의 위반이나 무시~~에~~ 의해 더욱

를 부양하기 위해, 혹은 수업과 여가, 직업 서비스 또는 위험한 작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성적,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된다. HIV/AIDS에 감염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아동은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소외 및 그들 자신 혹은 그들의 HIV/AIDS 상태에 근거한 이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국가는 이동을 성적, 경제적 착취와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할 뚜렷한 행동을 취해야만 하며 그러한 대우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에게 지원과 보살핌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

- 아동은 HIV/AIDS에 감염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아동은 또한 HIV/AIDS에 영향을 받거나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난, 기타 형태의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은 가정, 학교, 그리고 교사나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 및 기타 장애관련 시설의 고용인 등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국가는 가정, 학교, 기타 기고나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이동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 약물남용

- 알코올 남용 및 마약을 포함한 약물의 사용은 성적 행위, 아동의 통제능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HIV/AIDS 감염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살균하지 않은 장비 사용과 같은 행위는 더 많은 HIV/AIDS 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국가는 아동이 약물 사용에 노출되게 하는 요소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과 약물남용 아동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 권고

○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본 위원회는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유엔인구기금, 에이즈에 관한 유엔활동계획 및 기타 관련국제 기구, 조직 및 기관에게 체계적으로 조력할 것과 각 국가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일 것과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본 위원회의 협력을 지속
해줄 것을 요청한다.

- 비정부기구, 집단 및 청년 단체, 종교 조직, 여성 조직, 종교적, 문화적 지도
자를 포함한 전통적인 지도자 등과 같은 기타 다양한 활동가들 모두가
HIV/AIDS에 대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는 다른 역할자들을 동
참시키고 조화시키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지원은 그들의 임무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일반논평 4: 「유엔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 기본적 원칙들과 당사국의 기타 의무

- 세계인권회권(1993)에 의해 인정되고 본 위원회에 의해 재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의 권리 역시 불가분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 제6조와 제24조 이외
에도 동 협약의 다른 규정과 원칙들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의 권리를 충분
히 누릴 것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 비차별의 권리

- 당사국들은 18세 미만 모든 사람이 동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인종, 국
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의 의견, 민족성, 인종적 혹은 국
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혹은 기타의 신분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
고 누릴 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대해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부터 특
별한 주의와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

○ 권리의 행사에 대한 적절한 지도

- 동 협약은 부모 혹은 아동의 발달에 필수 책임자의 책임과 권리 및 의무는
“아동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 본 위원회는 부모 혹은 기타의 자양부대인 법적 책임자는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할 권리와 책임을 신중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 아동의 견해의 존중

-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와 이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 받을 권리(제12조)는 또한 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근본적이다. 당사국들은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충분한 기회가 있으며, 이는 특히 가정, 학교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법적·사법적 조치와 절차

- 동 협약 제4조는 “당사국들은 이 협약에 관련된 권리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건강과 발달에 관한 청소년의 권리의 맥락에서, 당사국들은 부모의 권리와 이 성에 관한 합의, 결혼 및 의학적 기회의 가능성에 대한 최저 연령기준을 포함하여 국내법상 특별한 법적 규정들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동 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제13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리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당사국들은 건강 문제에 대한 조언과 상담(제16조)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사생활과 비밀의 권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장려된다.

○ 모든 형태의 학대, 무시,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 당사국들은 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유기와 착취(제19조,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제38조)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이러한 연령대의 집단에게 영향을 주는 학대, 유기, 폭력, 착취의 특정한 형태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사국은 조약의 관행 규범과 유기에 더욱 취약한 장애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정신적 온전함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자료수집

- 당사국들이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당사국들은 다양한 접근과 방법을 추적하기 위해, 성별, 연령, 출신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분류가 가능한 자료수집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자료는 인종 혹은 토착 주민, 유년 혹은 남편 청소년, 장애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특정한 집단의 상황에 대한 연구를 위해 수집되어야만 한다.

□ 안전하고 지원적 환경의 창출

-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 상당부분이 결정된다.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민교육, 문화, 언론, 국가적 및 국내적 정책과 입법에 의해 창조되는 광범위한 환경은 물론 가정, 학교, 작업장, 사회적 환경-가족, 동료, 학교와 서비스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것들을 의미한다. 당사국들은 일차적 예방 위한 노력을 취하고 정책의 형성이나 법안의 채택 및 특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행동을 고무하거나 규제해야 한다.
- 본 위원회는 확대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자(제5조, 제18조)를 포함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학교는 많은 청소년이 배우고 있어서 학습 발달과 사회화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29조 1항에서는 교육은 “이동의 자유, 계층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목표로 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들의 이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현재 및 미래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적절한 교육의 중

요청에 관해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동 협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양질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용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무료일 것을 보장하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모든 청년들에게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할 것을 보장하고, 식수와 위생 및 안전한 등교를 포함하여, 학생에게 건강상의 위협을 주지 않는 제대로 기능하는 학교와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학생들간 뿐만 아니라 학교에 고용된 사람에 의한 교내에서의 성적 학대, 체벌 및 기타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처우나 처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학대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학교 교과과정에서 적절한 주제를 포함하는 것을 통해 건강한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차, 태도 및 활동을 제안하고 지원할 것

- 청소년기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혹은 일급을 받기 위해 학교를 떠나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최악의 형태의 노동에서부터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고용최저 연령에 대한 국제 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근로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작업 환경과 조건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근로청소년들이 완전히 보호받고 법적 구제 매커니즘에 접근권을 갖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 본 위원회는 또한 동 협약 제23조 3항에 따라 장애 청소년의 특별한 권리가 고려되어야만 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력을 제공해야함을 강조한다.
- 본 위원회는 조혼과 임신이 HIV/AIDS를 포함한 성 및 생식과 관련된 건강 문제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결혼의 법적 최저연령과 실제 결혼연령 모두가 특히 소녀들에게 있어 몇몇 당사국에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몇몇 당사국에서는 결혼한 아동이 법적으로 성인으로 취급받게 되어 그들이 18세 이하라 할지라도 동 협약상 부여된 아동을 위한 모든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년, 소녀 모두에게 부모의 동의하에 혹은 부모의 동의가 없

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8세까지 높이도록 그들의 법률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 혹은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사망이나 영구 장애에 이르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주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예방에 대해 우려한다. 당사국은 청소년을 위한 안전교육 및 시험,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 안전벨트 착용과 헬멧 착용 및 보행자 구역 지정책임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해 도로를 안전하게 개선하는 법률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 본 위원회는 이 연령대의 매우 높은 자살을 우려하는 바이다. 자살은 정신적 혼란과 심리사회적 질병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적으로 흔하다. 당사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폭력은 개인, 가족, 공동체와 사회적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의 복합으로부터 기인한다. 가정이 없거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개도국에 있는 곳과 같이 취약한 청소년들은 기관화 된 후 개인간의 폭력 모두에 노출된다. 동 협약 제 9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적 시설과 시설과 관련된 훈련하고 감독하는 사람 혹은 경찰을 포함한 그들의 업무를 통해 아동과 접촉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입법, 행정 조치들을 포함해, 청소년시설에서의 폭력과 비폭력적인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육성하는 등 청소년간의 개인적인 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동 협약의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0조, 제11조와 3항의 건지에서 당사국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청소년의 생명권에 위협이 되는 모든 행동과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 본 위원회는 건강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한다. 당사국들은 알콜 및 담배와 같은 약물의 마케팅 및 정보를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한다.

□ 정보, 기술 개발, 상담 및 보건 서비스

- 청소년들은 그들의 건강과 발달 및 의미있는 사회 참여를 위한 그들의 능필수적인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학교, 지역사회, 그들이 그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달시키며, 어떻게 건강한 행동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러한 정보에 대해 제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정보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적절한 개인적인 습관과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할 것인지와 같은 기술을 포함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의사결정, 문제 해결 및 극복하는 것과 같은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당사국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단체와 언론을 통해 그 기술을 훈련할 기회를 고무하고 지원해야 한다.
- 동 협약 제3조, 제17조, 제24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청소년의 생식 건강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족계획, 조기 임신 위험, HIV/AIDS의 예방과 치료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청소년 그들의 혼인 여부 및 부모나 보호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 동 협약 제24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정신적 건강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해야 하며, 공동체가 이러한 상태의 심각성과 조기징증 증세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부적절한 압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 촉구된다.
- 소년, 소녀 모두는 HIV/AIDS를 포함하여 성병에 의해 인한 심각한 감염 위험이 있다. 당사국들은 HIV/AIDS를 포함한 성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재화, 서비스 및 정보가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기의 소녀들은 조산과 비임산부 조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하며, 임신한 소녀들은 그들의 건강 및 특정한 필요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당사국은 조산, 비임산부, 안전하지 않은 낙태 관행 등에 의해 초래되는 청소년기의 소녀들의 모성사망률과 질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청소년인 부모에 대한 지원

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만 한다.

-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이전에 청소년들은 그들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견해는 동 협약 제12조에 따라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사생활과 비밀유지 및 치료에의 고지된 동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당사국들은 청소년에게 치료와 관련된 비공개 조언이 제공되어, 청소년이 고지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하고, 보건 인력에게 사생활과 비밀유지 및 계획된 치료에 대해 고지하고, 치료에 대한 고지된 동의를 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취약성과 위험

- 건강과 발달에 대한 청소년 권리 존중 보장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개인적인 행동과 환경적 요소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 동 협약 제23조에 의해 당사국은 장애를 가진 이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들은 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와 모든 장애청소년들에게 이용가능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하며, 이러한 설비와 서비스가 그들의 자립과 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 당사국들은 비공개로 다루어지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가정이 없는 청소년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은 폭력, 학대에 의한 폭력, 학대와 성적 착취, 자기 파괴적 행동 등에 취약하다. 이에 당사국은 법집행관 등과 협력으로부터 그러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하며, 적절한 교육과 보건의료에의 접근, 생계 수단의 기술의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 전략 등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 성매매, 음란물을 비롯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HIV/AIDS, 원하지 않은 임신, 인신매매 등은 물론, 교통사고 등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착취

와 관련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인신매매
의 근절을 위해 타국에 있는 범죄자
가 아닌 피해자로써 지원을 제공
할 의무가 있다.

- 빈곤, 무력분쟁, 도박 등
과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의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할 수 있다.

□ 국가 의무의 성격

-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 생존기술을 배우고 상담을 받고 건강한
행동을 위한 결정-지원 등 지지적인 환경을 제
공해야 한다.”고 명

- 제24조 및 제39조는 당사국들이 모국에서
년도의 인권과 특정해당국에 제공해야만 하며, 다음과 같
은 특강에 주의를

- 이용가능성: 기성품에 민감한 서비스를 포함해야
만 하며, 성적, 장애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접근가능성: 보건 서비스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인지되어야 하
고,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수락가능성: 동시성 규정을 충분히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보
건 설비와 상품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만 하며, 성(gender)인지
적이고, 의료 윤리를 존중해야만 하며, 청소년과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와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 질: 보건 서비스와 상품은 과학적 근거를 적절해야만 하며, 이는 훈련
된 청소년 간호 인력과 적절한 설비 및 과학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을 필요

로 한다.

-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력 없이는 초과적일 수
프로그램과 기구, 국제
및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

일반논평 5: 아동권리협약 이

□ 제4조

- “당사국은 이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고,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통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기용하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

□ 유보의 검토

- 이행의 일반조치에 관한 유보의 경우, 본 위원회는 당사국의 유보를 유지하거나 혹은 이를 철회할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아동의 인권에 관한 유보에 대한 보고서는 본 위원회의 목적은 국가들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유보를 검토하고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검토 후에 국가가 유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 위원회는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요구한다.

□ 기타 핵심적인 국제 인권 문서의 비준

- 이행의 일반조치에 대한 고려의 일부로서, 그리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두 가지 선택의정서(‘무력분쟁에의 아동의 참여에 관한 의정서’,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하고, 기타 주요한 국제 인권 문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입법적 조치

-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국내법과 관련 행정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국가의 입법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 당사국은 모든 관련 법률들로 자국의 국내법 체제 내에서 동 협약의 규정이 법적 효력을 지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기집행”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 및 동 협약이 “헌법적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 혹은 국내법 체계가 없는 국가에서의 동 협약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본 위원회는 특히 동 협약에서 확인된 일반 원칙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원칙이 강조되는 통합된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의 발전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모든 관련분야별 법률이 동 협약의 원칙들과 기준들을 일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권리의 사법심사 가능성

- 권리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 위반을 시정하도록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동 협약과 아동권리 조약, 기타 6개의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국가들은 국제인권법과 아동에 민감한 절차가 아동 및 그들의 대표자에게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국내법이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조치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 충분히 세부적으로 법적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행정적 및 기타 조치

-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부, 정부의 각 차원 간, 정부와 시민사회,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을 포함한 시민사회 사이를 넘어서는 분명한 부문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 협약에 근거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의 개발

○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체계 내에서 이동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이나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전략을 개발하거나 검토할 때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본위원회의 권고들을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

○ 소외되고 불리한 이동 집단을 확인하고 우선권을 주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략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략이 그 권한 부여 기관의 최고위 정부 기관에 의해 승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국가개발 계획에 연계되고 국가 산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전략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만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국가전체의 이동권리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과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 국가 전략의 개발은 일회성이 아니다. 한 번 수립된 전략은 정부 관행을 통해서 이동을 포함한 공공에 광범위하게 보급될 필요가 있다. 전략은 감독과 지속적인 검토, 정기적인 개선과 의회 및 공공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위한 제도들을 포함해야 한다.

○ 이동권리 이행의 조정

-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회는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나은 정부 내부 조정, 중앙정부 부서간의 조정 그리고 다른 지방과 지역간의 조정, 중앙 및 다른 수준의 정부기관의 조정 및 정부가 시민사회간의 조정을 고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 본 위원회는 조약상 기구로서 당사국간의 매우 다른 정부체제에 적합한 제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정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효과적인 조정을 달성하는 데에는 수많은 공식적 정부부서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동을 위한 정부가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가 포함된다.

- 많은 당사국들이 정부 중심에 가까운 특정 국이나, 부서, 어떤 경우에는 이행과 이동정책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혹은 총리, 장관 내각을 가지고 있다. 한 부서가 모든 이동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 내부

서 아동의 문제가 더욱 소외되도록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 분권화

- 본 위원회는 권한 이양 및 정부의 위임을 통해 권력의 분권화는 국가 구조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국가관할권내에서의 모든 아동에 대한 의무를 당사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감소되지 않음을 당사국에게 강조한다.

○ 민영화

- 서비스의 민영화 과정은 아동권리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본 위원회는 민간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에게 동 협약상의 모든 권리의 완전한 인정과 실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음을 강조한다.

○ 이행감독, 아동영향 감정과 평가의 필요성

- 아동에 관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아동 이익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임을 보장하는 것과 동 협약의 모든 규정이 입법 및 정책 개발과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의 이행에서 존중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동영향 감정 과정과 그들의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안된 입법, 정책 또는 예산 배치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 및 아동 영향 평가(이행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의 지속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정책의 개발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설립되어야 한다.

○ 정보수집과 분석 및 지표의 개발

- 아동권리실현에 있어서 차별이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된 아동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타 예산에서 아동을 위한 자원의 확인과 분석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며, 사회
회 부문, 그 중에서도 아동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할당한 국가 및 지방
예산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이유로 동 협약 제4조에~~
서 요구하는 ~~비율~~ 같이 자국이 “가용자원의 ~최대한으로”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본 위원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계획, 의사결정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소외 집단의 아동이 경
제 정책 또는 재정적 침체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 훈련 및 역량의 배양

- 본 위원회는 ~~이행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및 사법
부의 구성원과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훈련과 역량 배양
을 발전시킬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비~~이다.
- 훈련이 동 협약 및 규정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동 협약이 아동에 의한 권
리의 향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태도~~와 관행을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 훈련의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 시민사회와의 협력

- 이행은 ~~당사국~~ 당사국에, 아동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전 부문의 참여가 필
요하다. 본 위원회는 ~~아동의~~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이 실질적으로 국가
와 국가가 통제하는 ~~서비스~~ 서비스 및 기관을 넘어서 아동, 부모, 가족, 기타 성인,
비국가 서비스와 조직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국제 협력

-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당사국에게 동 협약이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제적
개발원조에 대한 체계를 형성해야 하며, 기부 국가의 프로그램은 권리와
근거한 것이어야만 함을 조언한다.
- 본 위원회는 ~~개발도상국가와~~ 개발도상국가와 기부국가의 공동 책임으로서 지속적인 기반에

서 양질의 기초적 사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20/20 이니셔티브’의 목적에 찬성하는 바이다. 본 위원회는 정부, 기부자와 시민사회에게 빈곤감소전략(PRSP)의 개발에 있어 아동이 현저한 우선 순위가 되도록 보장할 것과 개발에 대한 광범위 영역접근법(SWAPs)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독립인권기구

-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일반조약 2(2002)에서,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아동권리의 보편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비준을 통해 한 약속의 범위에 기구의 설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에 주목한다. 독립인권기구는 아동을 위한 효율적 정부 조직에 대해 보충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독립성이다. 인권기구들이 그들 스스로의 의제를 설정하고, 그들 자신의 활동을 결정하는 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 제42조: 성인 및 아동에 대한 동 협약의 홍보

- 개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아동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동들은 권리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42조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본 위원회는 국가가 사회 전반에 동 협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이행 및 감독에 관련된 정부 및 독립적 기구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과 접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동 협약의 본문은 가능한 한 모든 언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위원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의한 동 협약의 공식적·비공식적 번역본의 수집을 추천한다. 이 기에는 문맹자를 위한 동 협약의 확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필요가 있으며, 본 위원회는 모든 단체에서의 학교 교과과정에 동 협약 및 일반적 인권에 대한 학습을 수용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 동 협약에 대한 학습은 아동은 물론,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 직

무 초기 및 직무 중의 훈련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

- 언론은 동 협약의 내용 및 인식과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의해 활발해질 수 있는 이 과정에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 제44조 6항: 동 협약의 보고서를 널리 이용 가능케 하는 것

- 동 협약하의 보고가 국내 차원에서의 이행 과정에 있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는 당사국 전체내의 성인과 아동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
-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국가가 건설적인 논의를 증진하고, 모든 차원의 이행 과정에 대해 알리도록 하기 위해 동 협약 하의 그들의 보고서에 대한 심의의 모든 기타 문서를 널리 이용가능토록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본 위원회의 최종권해는 이동을 포함한 공중에 널리 보급되어야만 하며, 의회에서 자서한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일반논평 6: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313

□ 일반논평의 목적

- 본 일반논평의 목적은 분리된 아동이 취약한 상황을 환기시키고, 그러한 아동이 그들의 권리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서 국가 및 기타 행위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특히 비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의 최우선 및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아동의 권리에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법적 체계에 근거하여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보호, 보살핌 및 적절한 대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일반논평의 구조와 범위

- 본 일반논평은 그들의 국외에 있는 혹은 무국적인 아동들의 상주국 외부에 있는 분리된 아동들에게 적용된다. 이 일반논평은 그들의 국외에

위와 해외에 있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분리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본 일반논평은 국경을 넘지 않은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의

- “동반되지 않은 아동”은 동 협약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부모와 다른 친척으로부터 분리되고 법이나 관습에 의해 그렇게 할 책임이 있는 성인으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으로 정의된다.
- “분리된 아동”은 동 협약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부모, 부모로부터 분리되었거나, 그들의 법적 혹은 관습적 양육자로부터 분리되었거나, 다른 친척들로부터 분리된 것은 아닌 아동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동반된 아동을 포함할 수 있다.
- “출신국”은 국적국 또는 국적 취득에 있어서 상주국을 의미한다.

□ 적용되는 원칙들

- 영토내의 모든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위한 당사국의 법적 의무와 이행을 위한 조치
 - 동 협약의 국가 의무는 국가 영역내에 있는 각각의 아동과 국가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동 협약의 국가의무는 국기영역내로 입국을 시도하는 동안 그 국가 관할권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며, 국경 내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동 협약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그들의 국적, 이민 지위 혹은 무국적 지위 등에 없이 비호 신청, 난민,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동 협약에서 도출되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의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국내적 입법, 행정적 구조 및 필요한 연구, 정보, 자료 수집과 그러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훈련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포함된다.
 -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당사국에 의한 유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당사국에 의
1993년 비
램에 의거하
회를 목적으

○ 비차별(제2조)

- 비차별의 원
한 모든 분
지위, 혹은
하고 있다

○ 장단기 해결책(제23조) 이동의 이
익(제3조)

- 무엇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
화적 및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부문
하고 포괄적 접근을 추구한다. 특히, 아동의 발달기술
을 훈련받으
행되어야만

- 자격 있는 전문가의 지정 등의 이 단계는 분리된 아동이익의 최우선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안전장치로서 알맞아야 한다.
- 최선의 이익에 대한 존중은 또한 건강 있는 아동의 “아동의 신체적, 정신
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
동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의 치료와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만 한다(동 협약 제25조).

○ 생명, 생존 및 발달에의 권리(제6조)

- 제6조 하의 당사국의 의무는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에 대한 권리를 위태
롭게 할 폭력과 착취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
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기살해당해온 걸까를 가져오는, 혹은 구단

적인 경우에 죽음을 가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위한 인신 매매나 또는 범죄활동에 동원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생명, 생존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협에 취약하다.

- 상기에 언급된 위협으로부터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의 피해 이동을 위한 우선적 절차, 6건의 즉각 지정, 이동에게 그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제12조)

- 동 협약 제12조에 따라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이동에 대하여 채택할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견해와 희망이 유도되고 고려되어야만 한다(제12조 1항).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자신의 견해와 희망을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 통신수단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분리된 가족 추적 및 출신국의 상황과 같은 관련 정보가 이동에게 제공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의 존중

-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이동에게 적절한 대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국제인권, 인도법 및 난민법에서 도출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완전히 준수해야만 한다.
- 적대행위예의 미성년자의 징집이나 참여는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동 협약 제38조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의 제3조 및 제4조와 함께 이 위험을 효과적으로 수반하며, 당사국은 전투수용에 관한 아니라 군인을 위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성년자가 징용의 실질적 위험 또는 전투요원 혹은 기타 군사 업무의 수행을 통해 적대행위예의 직·간접적 참여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국경으로 이동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 비밀유지

- 당사국들은 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제16조) 아동의 권리의 보호의무에 일관되도록,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의 비밀을

□ 일반

○

○ 견인

— 당사

록

이

로

— 동 협약 및

로 떠나기

— 분리된 아동

는 동 아동

동반하는

다.

— 의사결정과

하기 위한

되어야 한다.

○ 양육과 거주 배정(제20조 및 제22조)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그들의

박탈당한 아동으로서, 동 협약 제20조상의 국가 의무의 수혜자이며 관련

국가에 의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 동 협약 제22조에 따라 그러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대안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법상 설립된 시스템은 그들의 권리와 유대 있는 분리된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교육에의 완전한 접근(제28조, 제29조 1항, 제30조 및 제32조)

- 당사국은 이동 중이거나 난민에서 이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국가 내로 입국한 모든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그 지위와 상관없이 동 협약 제28조, 제29조 1항, 제30조 및 제32조와 본 위원회에 의해 발전된 일반 원칙들에 따라 교육에 완전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접근은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학교 당국에 등록되어야만 하며, 교육의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있어서 조력을 받아야 한다.

- 당사국은 특히 장기간의 봉쇄가 제한된 경우,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엔아동기금,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난민고동판무관실 및 기타 유엔 전문기구가 그들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조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에 기타 권한 있는 정부 간 기구나 비정부기구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 적절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제27조)

- 가장 높고, 적절하며, 도달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설비를 향유할 권리(제23조, 제24조 및 제29조)

- 동 협약 제24조에 따른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과 질병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향유할 권리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과 분리되지 않은 아동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 그들의 접근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국가는 그러한 아동의 특별한 어려운 입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다루어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과 함께

- 그들이
- 인신매매
 - 제35조 동 협약 제35조
 - 출신국에 대한 보호에 관한 동 협약에 처한다.
 - 동 협약 제35조는 이동을 인신매매, 성적 착취 또는 노예제도에 착취하기 위해 동 협약 제20조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 이미 동 협약 제35조에 따라 동행하거나 분리된 아동에게는 위협이 크다. 동 협약 제35조는 동행하며 그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릴 수 있다. 자로서

- 자유의 박탈
 - 동 협약 제35조는 동 협약의 최선의 이익 원칙의 적용에 있어 동행하지 않거나 동행하지 않은 일반적 원칙으로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구금은 단순히 동행하지 않았거나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구금이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는, 구금이 관련국의 법률에 부합할 것과 최선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될 것을 요구하는 동 협약 제37조(b)에 일치하도록 행해져야 한다.

□ 비호절치(asylum procedure), 법적보호, 비호권(rights in asylum)에 대한 접근

○ 일반

- 동 협약 제22조로부터 도출되는 아동의 동반여부에 상관없이 난민의 지위를 구하는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기능적인 비호제도(functioning system)를 구비하며,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다루는 법률 제정 및 동 협약과 그 국가가 당사국인 기타 국가가 당사국의 국제 인권, 난민 보호 등의 인도적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역량을

투입하는 책임을 진다.

- 추적의 항구적 해탈은 조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추적행위나 이 수행되는 방식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거나 추적 받은 이들의 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키우십시오~~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 가족 재결합

-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을 하도록 하고 있는 동 협약 제9조 이하의 국가 의무의 전적인 준수를 더 이상의 분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의 견해를 표시할 아동의 견해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그의 부모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제12조).

○ 출신국으로의 귀환

- 출신국으로의 귀환은 만약 귀환이 아동의 근본적 인권침해가 발생할 리는 “합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특히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적용 경우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출신국으로의 귀환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만 원칙적으로 예정되어야 한다.

- 모든 경우에 귀환조치는 아동에게 안전하며, 적절하고, 성(gender)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지역적 통합

- 지역적 통합은 법적, 행정적, 사회적 이유로 출신국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일단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공동체로 통합되기도 결정되면, 당국은 아동의 성공적 통합을 수행해야만 하며, 아동 및 아동의 조건과 협의하여 지역 공동체내에서의 적절한 장기적 배치와 그러한 통합을 촉진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 국가간 입양(제21조)

- 당사국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에 특히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입양은 일단 동등 입양권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비상사태로 인정할 수 없다.
- 모든 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적용가능한 국내법, 국제법 및 관습법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한다.
-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구해야 하며, 모든 입양절차에서 그 견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 거주국내외 친척에 의한 입양이 우선된다.
- 비호국내의 입양은 가까운 친척과 졸업성의 조건하에 자발적인 본국송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 제3국에서의 재정착
 - 제3국에의 재정착은 출신국에서 할 수 없거나 보호국에서 항구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게 해당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 재정착은 아동을 강제송환부터 막아 또는 케류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요청된다.

□ 훈련, 자료 및 통계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위한 인력의 훈련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그들의 사건을 다루는 공무원의 훈련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주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동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출신국에 대한 지식
 - 적절한 면담 기술
 - 아동 발달과 아동심리학
 - 문화적 민감성과 이문화 간 의사소통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자료와 통계
 - 아동권리의 이행을 위한 정책 개발의 선행조건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